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 3 輯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の 登録 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거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하고, 言論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 합니다.

발 간 사

신문과 TV매체로 대표되던 우리의 언론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문, CA-TV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언론의 세계화, 정보의 보편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본격적인 위성방송시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함께 멀티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갖게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권리와 이익관계가 공존하게 되고 그러한 권익관계가 때로는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조화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법의 지배도 필요하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와야 하지만 이는 국익, 사회적 이익, 개인적 법익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느정도의 법적 규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선도하여 국민이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큰 역할을 하는 언론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다른 법익과 상충될 때는 언론자유 본질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언론관계판례들은 언론자유와 여러 권익간의 조화의 단면들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규제의 긍정적 측면, 발전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관계 판례들이 계속 축적되면 이 판례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자유를 개인의 권익 및 공동체 제반권리와 조화시켜 갈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근거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바, 1996년은 언론중재의 기능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정간물법에 의한 언론중재의 기능은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조정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개정법에 의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사실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재결정은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만 행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 명칭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권리의 성격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였으며,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까지 언론중재의 기능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정정보도청구사례는 1992년~1994년 사이의 판결이므로, 개정법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사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개정 정간물법에 의해 언론중재의 기능이 새롭게 정비된 이 시점에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관계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기를 바라며, 그 보다는 언론 스스로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및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언론계, 학계 그리고 언론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의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발간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1996년 6월 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 두 현

차 례

I. 정정보도청구사례

1.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주)대양개발 對 경인일보사(수원지방법원 92가합9602) 13
2. 다른 신문의 기사를 검증도 없이 인용하여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오 對 우리신문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카합312)..... 17
3. 학생의 전학이유가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
서울신림국민학교 對 문화방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792) 24
4. 「현직 재단간사」를 「전 재단간사」로 단순 오보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對 김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4057) 33
5. 학사업무, 학생·교사징계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청인측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학)영석학원 對 문화방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6462) 36
6.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황 對 경향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3887) 48
7. 신청인의 진술서 요지를 보도하면서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제목 및 편집자주에 표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는 이유 있다	
이 對 동아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3254)	52
8. 횡령의혹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라	
황 對 조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3786,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기1557)	59
9.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범위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며, 방송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특정단체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사)한국화랑협회 對 문화방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1107)	67
10. 신청인의 아스콘공장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공장의 공해유발 요인도 과장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김 對 중앙환경신문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카기760)	76
11. 온천개발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고 투기사업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주)제주온천 對 제주신문사(제주지방법원 94카합27)	81
12.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을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내용도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對 서울방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카합337)	90
13. 탤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모 양이라고 보도한 것은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어 그 기사는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진	對 현대문화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기3509)	96
14.	일방적인 주장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천부교승리재단 광주삼천년성 對 한국방송공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카합1029)	102
15.	제보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한 후 기사화했는지라도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최 對 경기도민일보사(인천지방법원 94카합2152)	104
16.	아내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남편 일방만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기사로 인해 아내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송 對 한국방송공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카합1797)	108
17.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했더라도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으로서의 반박할 권리가 있다 최 對 동아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기4890)	111

II. 손해배상청구사례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권 對 파스퇴르유업(주)(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8193,
서울고등법원 93나6210)116
2.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원고의 실명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태 對 대한민국, 김 , 박 (서울고등법원 92나32878, 대법원 93다18389).....133
3. 제목만으로는 오인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면 단지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손 對 연합통신, 서울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8463, 서울고등법원 93나22236)	146
4.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정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권 , 권 , 이 對 대한민국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23099, 서울고등법원 93나32639)	154
5.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 중간에 삽입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 권 , 김 , 김 對 뉴스위크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57989,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31886)	177
6. 비록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 對 코리아헤럴드사 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2361, 서울고등법원 93나39814)	185
7. 보도자료에 더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보도하였고, 취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 최 對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8321, 서울고등법원 93나43059)	206
8. 인터뷰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허위보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최 對 토요신문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25344)	219
9. 작품소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원고의 이혼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하고 판결내용을 게재하라	

공 對 학원사, 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합3572)	227
10. 원고가 중앙정보부출신이라는 허위내용을 보도하여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하라 임 對 윤 , 윤 , 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합14585, 서울고등법원 94나35185)	233
11. 속칭 「오렌지족」의 생활양태를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사진을 승낙없이 게재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전 , 서 , 김 對 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36754)	239
12. 기계식 ABS의 성능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였고, 보도의 목적이 일반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對 한국방송공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21447)	244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1.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 모두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고단1325,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5394,
대법원 92도3160)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장 , 장 , 이 (인천지방법원 92고단1106, 인천지방법원 92노892, 대법원 93도1035)
3. 작중인물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성폭행사실을 흥미 위주로 묘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3622)	271
4. 비방할 목적으로 최 회장이 통일교와 관련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를 징역에 처한다. 조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1788,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6952)	274
5.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최 (춘천지방법원 90고단108, 춘천지방법원 93노225)	279
6.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상대 후보진영에서 제공한 선심관광을 다녀오는 버스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게재케 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해당 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고합364)	293
7. 「총학생회장의 의문사에 안기부 요원이 관련됐다」는 피고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은 데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이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4995,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8080)	297
8.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할 수 없다 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고단1, 광주지방법원 94노276, 대법원 94도2186)	312
9.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고단2396, 서울지방법원 94노6312, 대법원 95도1010)	318
10.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되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구성되지 않는다 김 , 홍 (대구지방법원 94고단1165)	323

I. 정정보도청구사례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수원지방법원 1993. 4. 20.자 판결(92가합9602)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93년 4월 20일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경인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경인일보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대양개발이 공원내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관할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양개발이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련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기사로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인일보 1992. 3. 31자 1면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대양개발이 사유지내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양공원내에 철조망 및 방화선을 설치하면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 산림을 훼손하였고, 관할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인 대양개발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92경기중재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추후에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는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기사이므로 현시점에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9602 정정보도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양개발(大洋開發)

인천 서구 가좌동 148의 2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하 민 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 영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성 근

변론종결 : 1993. 3. 23.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인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별지(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인일보 제1면 우측 상단에 10단 크기로 별지 제(2) 기재의 정정보도내용을 게재하라.

이 유 : 1. 피신청인 발행의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의 기사란 중 상단 부분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하에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1991. 10.경부터 인천 북구 계산동 산29의 2 일대 45만여평의 사유지내 산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조망 및 방화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등 계양산의 산림을 크게 훼손하였고, 산림훼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양개발 사유지 45만여평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철조망 안쪽으로 10~15미터, 밖으로 5~8미터 범위 안의 오리나무, 소나무 등과 잡목들이 잘려 있었으며, 대양개발측이 베어낸 나무들 가운데에는 10~15년생 소나무, 오리나무가 상당수에 달했고 철조망 주변에 잘려진 나무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으며, 대양개발측은 철조망을 본격적으로 설치한 1992. 1.말경 관할 북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7단 크기의 기사가 3단 13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신청인은 위 기사가 허위보도이므로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경인일보에 위 기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내용이 오히려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의 6 내지 32, 35, 소갑제4호증의 4, 6, 9 내지 15, 17, 소갑제5호증의 9 내지 153, 소갑제7호증, 소갑제8호증, 소갑제9호증의 1 내지 8, 소갑제10, 18, 20, 22호증의 각 1, 2, 소갑제11호증의 1 내지 5, 소갑제 12, 13, 14, 19호증의 각 1 내지 4, 소갑제15호증, 소갑제16, 21호증의 각 1, 2, 3, 소갑제 17호증, 소갑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 장의 각 증언(다만 증인 장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인천시가 지정 고시한 같은 시 서, 북구 일원에 위치한 계양공원 면적 5,308,869평방미터내 임야 38필지 1,509,74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는 1991. 3. 4. 위 공원용지에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입지 심의와 시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1991. 7. 16.에 건설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가 건설부 장관의 보완지시에 따라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던 중 사업승인권이 1992. 1. 1.자로 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도시공원법 소정의 입안 및 결정 고시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사실, (2) 위 공원용지내의 산림이 인근 사업자들의 불법 형질 변경, 토사채취, 오물투기, 임목의 도벌, 산불 등의 영향으로 훼손되자, 신청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1. 10. 5.경부터 1992. 1. 27.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공촌동 162의 1, 4, 164의 1, 북구 계산동 52의 8, 9, 10에 걸쳐 있는 계양산내 소유임야 중 32,000평방미터에서 무육간벌을 한다는 이유로 넝쿨류, 고사목과 불탄 나무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간벌 등 직경 10센티미터 이하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의 임목을 벌채하였고, 1992. 1. 28. 이를 관할구청인 서구청과 북구청에 신고한 사실, (3) 신청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계양산내 소유임야 중 217,771평방미터에서 경계를 표시하여 임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이 1.8미터에서 2.1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3.98킬로미터에 걸쳐 시설하여 공원시설인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2. 14.경 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북구청으로부터 각 사업중지 지시를 받고 같은 해 2. 19.경 공원점용허가신청을 한 채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철조망 설치작업을 계속한 사실, (4) 신청인은 1992. 3.경 무육간벌한 곳에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한 사실, (5) 그후 피신청인은 소외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로부터의 제보에 따라 위 작업 현장에서 불에 타 죽은 작은 소나무를 확대 촬영하여 위 인정과 같

은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보도내용 중 「신청인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어 산림을 훼손하였고, 베어낸 나무 가운데에는 10 내지 15년생 소나무, 오리나무가 상당수에 달했으며, 신청인의 사유지 45만여평의 경계 전체에 걸쳐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보도내용 중 앞서 인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기사로서,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위 기사의 공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한 신청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경인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의 크기로(신청인은 제1면 우측 상단에 10단의 크기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정정보도문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는 적절하지 않고,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그 문안의 활자 크기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20.

재판장 판사 이 우 근
판사 문 현 돈
판사 박 동 우

정정보도문 (1)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1992. 1.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시공원지역인 계양산내 소유임야에서 경계를 표시하여 임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이 2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3.98킬로미터에 걸쳐 시설하여 공원시설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같은 해 2.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중지 지시를 받아 뒤늦게 공원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1. 10.경부터 1992. 1.경 사이에 신고없이 소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를 벌채한 바는 있으나, 당국의 수사결과,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본지의 보도기사

및 사진과 같이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이 아니고, 넝쿨류, 고사목과 불탄 나무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간벌 등 직경 10센티미터 이하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395주의 임목을 무육간벌한 것으로서 1992년 1. 말경 당국에 사후신고하였으며, 3월에는 무육간벌한 곳에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보도내용(2)

1992. 3. 31.자 경인일보 제1면에 『계양산 산림 마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지는 위 기사에서 「주식회사 대양개발(대표이사)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등 계양산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자칭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가서 불에 타 죽은 작은 소나무를 확대 촬영하여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기사를 냈으나, 사실을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 대양개발은 산림을 마구 불법훼손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이 아니고, 관계구청에 구두신고와 공문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으며, 산림법, 공원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합당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무육간벌을 한 것이고, 1992년 3월에는 산벚나무 3,000주를 식재하여 산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다른 신문의 기사를 검증도 없이 인용하여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 7. 30.자 판결(93카합312)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993년 7월 30일 국회의

원인 오 의원이 우리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인 우리신문사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간 우리신문은 1993년 3월 29일자에 신청인인 오 의원이 재산공개시 재산평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연고지가 없는 제주, 전남 등지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한 K일간지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의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정확한 계산이고 무연고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의 취득경위, 자금출처를 설명하면서 정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야를 투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주간 우리신문에 『오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경기중재8).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312 정정보도

신 청 인 : 오 (吳)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의 436

대표이사 강 희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현 식

변론종결 : 1993. 7.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피신청인 발행의 주간 우리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2단 기사의 형태로 인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우리신문 1면 머릿기사에 8단 제목을 사용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의 신문보도

피신청인이 그 발행의 주간 우리신문 1993. 3. 29.자 제1면 머릿기사에 『오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란 제목하에 『무연고 제주, 전남 등에 임야 2만8천여평 보유, 재산평가 10분의 1로 축소 신고도』라는 등의 소제목 붙여, 「오 의원(60·국회문공위원장, 민자당 중원분당지구당 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개한 재산평가액이 최고 10분의 1까지 축소되거나 연고지가 없는 제주, 전남 등지에 부인 명의의 임야 2만8천여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철저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K일간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부인 명의로 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임야 4필지, 전 1필지 등 5필지 1만3천4백97m²(4천90평)는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90~1백만원으로 4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4억2천7백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0분의 1로 축소. 오 의원의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분당구 대장동 임야 1필지 6천57m²(1천8백35평)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1억6천5백만원인데, 이를 2천3백7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민자당 중앙당에는 이 임야가 가족묘지인 문중산으로 8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면에 임야 1만2천1백32m²(3천6백76평),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에 임야 8만2백50m²(2만4천3백18평) 등 9만2천3백82m²(2만7천9백94평)를 부인 명의로 취득했는데 제주도의 임야는 국회의원 재임중에, 전남 장흥군의 임야는 서해안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보도의 부분

소갑2, 4, 7호증의 각 1 내지 4, 소갑3호증, 소갑5호증의 1 내지 5, 소갑6호증의 1 내지 3, 소갑8, 12, 14, 15호증, 소갑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소갑11호증의 1, 2, 소을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권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 신청인은 그 소속 당으로 부터 재산공개에 관한 지침으로 소유부동산을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평

가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실, 신청인의 처 광 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전 1,554m², 같은 동 530의 1. 전 456m², 같은 동 530의 2. 전 4,056m² 및 같은 동 530의 3. 전 7,431m², 지적 합계 13,497m²(약 4,090평)를 소유하고 있는데, 1992. 1. 1. 기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이들 토지의 가격은 위 528.이 36,052,800원(1,554×23,200), 위 530의 1.이 15,139,000원(456×33,200), 위 530의 2.가 129,386,400원(4,056×31,900), 위 530의 3.이 246,709,200원(7,431×33,200)이어서 그 합계가 427,287,600원인 사실, 신청인은 이들 토지의 가액을 위 인정의 금액으로 각 신고 공개하였는데, 위 공시지가는 1993. 1. 1. m²당 위 528은 13,300원, 위 530의 1. 3은 각 금18,400원, 위 530의 2는 16,300원으로 각 하향 조정되어 평균 16,600원(평당 약54,780원)으로 하락한 사실, 한편 이들 토지의 실질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위 528.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526. 전 883m²와 같은 동 529 전 1,412m²가 1992. 5. 1. 한국도로공사에 m²당 40,500원(평당 133,650원)에 매수되었고, 역시 이에 인접한 같은 동 53의 1 전 570m²도 1993. 4.경 당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평당 금 145,000원에 경락되는 등으로 평당 140,000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신문사의 기자들이 현지 주민과 부동산소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여도 그 가격이 평당 10만여 원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30 내지 60만원정도 된다는 진술을 많이 받게 된 사실, 피신청인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경향신문에서 그 가액을 평당 80 내지 100만원으로 보도하였고 성남 시내에 있는 중개인사무소로부터 평당 100만원 상당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 (2) 신청인의 처 광 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 2915. 임야 12,132m²와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임야 86,250m²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광 는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하여 독립된 수입을 얻고 있는데, 1979년경 이웃에 사는 신청외 엄마에게 자신이 저축한 3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남제주군에 있는 위 임야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므로 부득이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고, 위 광 는 1980년경 신청인과 의논없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린빌딩 를 그 경영의 병원자리로 구입하였다가 성남시에서 계속 거주하자는 신청인의 요구로 위 빌딩 를 매각하였는데, 위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소개업자가 노후생활 대책을 위해 사농으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위 대금을 가지고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장흥군에 있는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 신청인으로서 위 광 의 위와 같은 임야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관계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알아보지도 않고서 단지 이들 임야가 위 광 의 소유명의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신청인이 처

명의로 위와 같은 임야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에 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그 밖의 주장

(1) 신청인은 운중동에 있는 위 임야 등은 그의 처가 위토로 구입한 것이고, 신청인의 명의로 있는 대장동 산 임야는 그의 형이 조상들의 산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신청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으로서 가족들 공동 소유의 문중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은 모두 이들 토지의 취득경위, 용도, 매수자, 매수자금 등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이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취급되지 아니한 사항이고, 나아가 위 청구부분을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게재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신청인이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위 보도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는 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또 대장동에 있는 위 임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지분은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8분의 1밖에 안되므로 민자당당직자 재산공개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그 가액의 8분의 1 가격을 신고한 것은 축소신고가 아니며 신청인이 고의로 그 가격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위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갑3호증, 소갑4, 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장동 산 임야 6천57m²(1천8백35평)는 공부상 신청인과 그의 형인 신청외 오 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1992. 1. 1.자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그 가격이 182,315,700원인데, 신청인은 당 당직자 재산공개시 위 임야가 가족묘지로서 8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가격을 2천3백7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는 바, 이 사건 기사 중 위 임야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나 설명의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신청인의 정정요구와 거의 차이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축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의 항변

피신청인은 운중동에 있는 위 토지가격의 축소신고에 관한 기사를 1993. 3. 25.자 경향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신문에 게재한 이상 그 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은 피신청인의 그것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정정보도문의 규격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제1면 머릿기사로 8단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라고만 청구하고 있고 그 밖의 규격에 관한 주장은 없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고,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또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 같은 제1목록 기재 부분으로 제한하고 그 말미의 명의인은 정정보도 신청인으로 표시하며, 위 정정보도문은 현재 가로쓰기로 조판하고 있는 주간 우리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2단 기사의 형태로 인쇄하여 게재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우리신문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정정보도문을 위 인정의 규격으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30.

재판장 판사 김 정 술
판사 한 양 석
판사 박 순 관

정정보도문

1993. 3. 29.자 본지 제1면에 『오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라는 제목과 『재산평가, 10분의 1로 축소신고도』라는 소제목 아래 신청인이 지난 3. 20.자 당 당직자 재산공개 시 처 명의로 된 분당구 운중동 일대 임야 등 토지 1만3천4백97m²(4천90평)를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90 내지 1백만원으로 40억원대에 이르고 있음에도 4억2천7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무려 10분의 1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에 임야 합계 9만2천82m²(2만7천9백94평)를 처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처 명의의 위 운중동 토지의 가격을 당의 방침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로 신고하였고, 그 실지 거래가격도 평당 14만여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토지의 가격을 10분의 1로 축소신고 했다는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처 명의의 남제주군과 장흥군에 있는 위 임야는 모두 처가 의사생활을 하여 얻은 자신의 소득으로 신청인과 상의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임야를 처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는 위 기사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오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3. 3. 29.자 우리신문 1면 『오 의원 땅 투기 의혹』 제하의 8단 기사에서 오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시 당 중앙당의 재산공개지침에 의거 자신과 가족소유의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공개함으로써 이를 축소하여 공개하거나, 오 의원이 자신이나 그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이 재산공개시 시가 40억원 상당의 성남시 운중동 소재의 땅을 10분의 1로, 성남시 대장동 임야 가족묘지를 8분의 1로 각 축소 신고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전남과 제주도에 오 의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 국회의원 6선과 정무장관직을 역임한 오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 의원 부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임야는 위토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시가는 평당 90만~1백만원이 아니라, 평당 금 130,000원이고, 공시지가는 금 100,000원으로 신고금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 4억2천7백만원임이 밝혀졌으므로 무려 10분의 1로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오 의원 명의의 위 같은 구 대장동 산
 임야는 오 의원의 3대 선조의 묘소가 있는 선산으로서, 오 의원의 형이 구입하여 오
 의원과 형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가족들 공동소유의 문중산으로 축소신고
 한 것이 아니며, 남제주군 성산면 임야는 오 의원 부인이 1979년도에 금 300만원을 남에게
 빌려 주었는데 차용인이 위 돈 대신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오 의원 부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며, 전남 장흥군 유치면 임야는 오 의원 부인이 20여년간 의사생활등을 하면서 신청인
 모르게 사둔 임야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신문사 발행인 이 형 하

□

학생의 전학이유가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자 판결(93카합79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동섭 부장판사)는 1993년 9월 6일 서
 울 신림국민학교가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 학교는 문
 제의 사실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
 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정정보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 1993년 4월 25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학교 돈봉투』란
 제목으로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
 울 S국민학교 2학년생인 김 군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
 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인 신림국민학교는 김

의 전학이유는 돈봉투 때문이 아니라 종교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93서울중재8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보도는 김 군의 어머니로부터 인터뷰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792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서울신림국민학교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8의 1

대표자 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8. 2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21:00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 데스크」의 끝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8, 소갑 제4호증, 기록에 첨부된 언론중재신청 사건 기록,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 남궁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보면,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의 713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418의 1에 있는 서울신림국민학교(이하 신청인 학교라 한다) 제1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신청외 김 이 1992.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2의 48에 있는 사립학교인 서울 삼육국민학교로 전학한 사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이 1993. 4. 25.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학교 돈봉

투』란 제하에, 학부모와 교사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 현상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울 S국민학교 2학년 김 군의 어머니 신청외 오 가 김 군의 담임선생님이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아이를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돈봉투를 요구한 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에서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요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면서, 김 군이 이른 아침에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 전학간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급한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여러명의 여성과 함께 교실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 불특정인 상호간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모습 등의 영상을 곁들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학교는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담임선생 및 학생만이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 학교는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 학교와 위 보도 내용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내용에는 신청인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어 이로 인해 신청인 학교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신청인 학교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 중에는 「서울 S국교 2학년 김 군」,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라는 표현과 함께 김 군과 그 어머니의 얼굴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및 사진과 김 군이 신림국민학교에서 회기동 사립학교(삼육국민학교)로 전학간 사실과 관련지어 보면, 위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가 신청인 학교를 가리키고 있음을 신청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등 신청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내용과 신청인 학교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 내용의 요지는 김 군의 담임선생님이 김 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여, 부득이 그 어머니가 돈봉투가 없는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 학교 역

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와 대비되어 「돈 봉투를 받는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 학교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신청인은 1993. 7. 19. 신청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를 당초의 서울신림국민학교에서 신청인 학교 교장인 신청의 김 과 서울신림국민학교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표시의 동일성을 그르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의 김 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김 군의 담임선생이 그 어머니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거나 돈봉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김 군의 전학 이유는 김 군 부모의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그러나, 이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문상의 용어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 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

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갑제2호증의 2와 소을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궁 의 증언에 의하면, 김 군의 어머니 오 가 김 군의 담임선생에게 1992년 스승의 날등에 화분이나 양산을 선물하거나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에 쓰라며 금 50,000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담임선생으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거나, 오직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 내용중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라는 표현은 취재기자가 학부모로부터 전학의 동기 및 이유를 듣고, 이를 요약한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 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 바, 「담임선생님이 돈봉투를 요구하였다」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은 또, 이 사건 보도 가운데 신청외 오 의 인터뷰 내용 중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라는 것은 김부름 군의 어머니가 평소 친한 사

이인 그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서,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여서 「김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으므로,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외 오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옆반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김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통상 누구를 거쳐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김 군의 담임선생님은 옆반 선생님에게 그같은 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정정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1993. 6. 27. 밤 같은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미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였고, 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들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 받고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율제8호증의 기재 및 소율검제1호증(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학교와 담임선생 및 교육관련 당국의 항의, 정정요구와 함께 양측의 대립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란이 일자, 1993. 6. 27. 밤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내용은 진실이며, 이 사건 보도후 신청인 학교등이 김 군의 부모에게 담임선생의 구명을 위해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써 줄 것을 간청하여 김 군의 부모가 해명서를 써 주었는데, 신청인 학교등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 비난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도한 1993. 5. 5.자 한국교육신문(소갑제8호증) 제1면의 「MBC 방영 김 군의 전학 진짜 이유는 돈봉투 아닌 종교」 제하의 기사 일부를 사진으로 보도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에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의 중재신청을 냈다는 등의 사태의 전말과 신청외 오 의 주장 및 피신청인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만화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반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그나마도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없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위 재보도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993. 6. 27.의 방송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이 피신청인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6.

재판장 판사 박 동 섭

판사 곽 상 현

판사 양 경 승

제1목록(원 보도 내용)

정 (앵커) : 요즘 터져나오는 교육계 비리는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계 비리는 원초적으로 국민학교의 돈봉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67%가 돈봉투에 대한 부담감으로 담임교사를 만나기 꺼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돈봉투의 실상을 국민학교 학생인 이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 봅니다. 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 (기자) : 돈봉투로 야기된 학교 교육의 굴절, 그 이지러진 모습을 우리는 9살난 국민학교 2학년 이의 새벽 등교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아직 곤한 잠에 빠져 있을 새벽 6시 반은 이가 이미 지하철 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오르는 시각입니다. 버스에서 지하철, 그리고 다시 버스로 이어지는 이의 새벽 장정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이 어머니가 내린 아픈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그러나, 자기의 키보다 높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도 왜 매일 4시간의 통학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가 서울 신림동의 동네 학교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간 것은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오 (김 군의 어머니) : 10월달 쯤 돈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제 아이를 저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송 : 돈봉투를 일러 고지서라고 부르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돈봉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 학교 앞 서점은 월간지나 시집, 성경책 속에 돈봉투를 끼워 가려는 학부모들로 붐빕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돈봉투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산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울강동 N서점 주인 : 그렇죠 뭐, 사실대로 얘기해 드리는 게 낫지요.

송 : 어떻게 압니까?

서점주인 : 정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눈치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이거 넣어 드려요.

송 : 액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서점주인 : 최하가 5만원, 보통 10만원 합니다.

송 : 이런 돈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Y고교 강모 교사 : 책을 주시는데, 단행본을 주시면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월간지로 주시면 다달이 주시는 거고, 계간지를 주시면은 계절마다 한번씩 찾아 오시는 그런 얘기를 선배 교사들한테 들었거든요.

송 : 일부 학부모들은 심지어 담임 후원회까지 만들어 달마다 일정액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서점주인 : 임원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백만원 맞춰 준다는 게 예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반에, 그래 갖고 대충 백만원을 맞춰준대요. 그래 갖고 하면서도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 : 어머니와 선생님 사이에 돈봉투가 오간다는 것이 몰라야 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S고교 학생 :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선생님은요, 면담을 할 때 학생들을 면담을 하죠. 부모님들한테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고 학생 : 상담하러 오시면, 괜히 선생님은 책상을 청소를 막 하세요. 책 좀 본다고

서랍도 열었다 닫았다 막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사이에 막 봉투를 넣어 주신대요.

송 :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이 취업할 때가 되면, 학교에서 써 주는 추천서 때문에 적지 않은 액수의 돈봉투가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J여상 학생 : 저희 같은 경우는요, 취업하려면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사례비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취업 선생님 좋은 데 추천 좀 해 달라고 드리고 ...

송 : 돈봉투가 오가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학부모와 학생들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설 땅을 잃고 사도가 붕괴되어 간다는 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는 교사들 자신입니다. 돈봉투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담임 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H고 교사 : 교장이 「너는 담임을 안 준다」 그것은 너한테는 이익이 없다. 담임 말음으로 인해서 얻은 물질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 안해 주겠다 이런 식이죠.

송 : 돈봉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 (경기대 교수) : 교장이 내 당대에서는 이걸 실천시켜야 한다, 특히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내 당대에 있으면서 이런 부정부패의 씨앗이 되고, 또 교육계를 망치는 일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윗분들에게 의지표명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 다행히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돈봉투 수수행위에 대해 파면등 중징계 방침을 일선 교육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박 (교육부 장학편수실장) : 극히 일부 선생님의 일이지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교직원토를 혼탁하게 한다든가 선생님 스스로의 도덕적인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직 사회에서 떠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 그러나 이러한 지시나 지침만으로 돈봉투 문제가 근절된다고 장담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 없이 새벽 등교길에 나섭니다. 이를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부패상을 보이고 있는 교육현실에서의 개혁...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MBC뉴스 송 :입니다.

제2목록(당원이 명하는 보도 내용)

제목 : 1993. 4. 25.자 본 방송 중『학교 돈봉투』제하의 보도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반론
본문 : 1993. 4. 25. 일요일 밤 본 뉴스 시간에 학내에서의 돈봉투 문제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내용 중에, 서울 신림동 S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던 김 군의 어머니 오씨가 김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인터뷰와 함께, 김군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김 군을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보도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인 서울신림국민학교(교장 김)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당시 김 군의 담임교사는 김 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거나 돈봉투를 받은 일이 없다. 김군이 사립학교로 전학한 것은 김군 부모의 종교 교리상의 이유로, 토요일 수업이 없는 같은 종교 계열의 사립학교로 옮기기 위한 때문으로 안다.」 □

「현직 재단간사」를 「전 재단간사」로 단순 오보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 8.자 판결(93카기405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9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9월 8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간사인 이. 씨가 순복음신문의 발행인인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단순오보에 대한 정정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어

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순복음신문은 1993년 4월 4일자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이사장과 교단의 재산 수호대책위원장이 마찰을 빚어오던 중 재단이사장이 재산수호대책위원장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끝머리에「전 재단간사인 이 목사도 불구속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 이 씨는 재단간사로 재임중이었음에도 전직으로 표기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현직 재단간사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청인이 재단간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내용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청인은 순복음 신문에『과연 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 전 재단간사도 명예훼손 혐의 기소돼』제하의 위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요하는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5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간사로 임명되었기에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4057(종전번호 93가합33284)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김

서울

변론종결 : 1993. 8. 25.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의 순복음신문 1면 1단에 12포인트 활자로 2회에 걸쳐「본지 지난 4. 4.자 11면에『과연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이라는 제목 아래 한편 전 재단간사 이 목사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이 목사는 현 재단간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정

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소갑제3호증(신문기사 사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1993. 4. 4.자 순복음신문 제11면에 『과연 진실(명예훼손), 과연 거짓?』 『전 재단간사도 명예훼손 혐의 기소돼』라는 제목하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 이사장이던 박 ○ ○ 목사와 교단차원 대책기구인 재산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 ○ ○ 목사)가 마찰을 빚어오던 중 위 박 ○ ○ 목사가 위 김 ○ ○ 목사에게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동 기사 끝머리에 「한편 전 재단 간사이: ○ ○ 목사도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기소됐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시 위 재단의 간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청인을 전 재단 간사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신청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재단 간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1호증(임명장), 소갑제2호증(재직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기사가 게재될 당시 위 재단의 간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사에서 위와 같이 신청인을 「전 재단 간사도」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신문의 독자들이 신청인이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재단 간사직에서 해임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사의 주된 취지는 재단 이사장인 위 박 ○ ○ 목사가 위 김 ○ ○ 목사에게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신청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 내용은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8.

□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권 오 창

판사 김 현 룡

학사업무, 학생·교사징계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청인측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0. 8.자 판결(92가합1646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1993년 10월 8일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강 교사의 해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프로그램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MBC-TV 1992년 9월 1일 22:00에 「PD수첩」 프로그램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 편에서, 「의정부 영석고등학교의 학사업무, 학생 징계, 교사 징계 등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단독적인 전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영석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2서울중재71).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측 주장을 다시 취재하여 방영토록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을 담당 PD가 현재 외국출장이어서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16462 정정보도

신 청 인 : 학교법인 영석(榮錫)학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

대표자 이사장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창 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9. 1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첫주에 방영되는 MBC-TV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되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화요일 21:00에 방영되는 MBC-TV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9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첫주에 방영되는 MBC-TV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별지 제2 정정요구문(이하 정정요구문이라 한다) 기재 내용을 방영하되 만일 이 판결선고일 현재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 화요일 21:00에 방영되는 MBC-TV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정정요구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관계

피신청인이 1992. 9. 1. 22:00 경부터 22:5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송

PD등이 취재하여 편집한 MBC-TV PD수첩 프로에서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3 방송내용문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박문인 정정보요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강 교사 해임부분, 학사업무 운영부분, 봉급인상분 지급부분, 교사의 수위실 근무부분, 교장의 가묘작업 학생동원부분, 학생 4명 자퇴부분, 비품구입부분, 수세식 화장실 사용부분, 소외 박 자퇴부분 등에 관하여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주장 중 첫째, 강 교사 해임부분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외 강 교사를 해임했다」는 부분, 둘째, 교사들의 수위실 근무부분에 관한 「교사들이 순번제로 수위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 하교 지도만을 하고 있다」는 부분, 셋째, 가묘작업 학생동원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보도내용 중 가묘라고 한 부분은 가묘가 아니라 전쟁등 유사시 학교의 관계기밀서류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신속히 숨기기 위한 장소이다」라는 부분, 넷째, 비품구입부분에 관한 「학기초에 각 반에 학급비품을 일괄하여 전 학년에 지급하고 있으며, 중간에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급에서 일부 보충한 것이며, 선풍기는 학부모가 기증한 것이다」라는 부분, 다섯째, 수세식 화장실 사용부분에 관한 「수세식 화장실은 교사들의 전용화장실로서 샤워실 및 세탁시설 등이 학생들의 장난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 여섯째, 소외 박 자퇴부분에 관한 「강제자퇴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학생 부모 승낙하에 본인이 스스로 자퇴한 것」이라는 부분 등은 모두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

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의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먼저 강 교사의 해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내지 6,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의 1내지 3, 을제14호증, 을제16호증, 을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을제22호증, 을제24호증의 1내지 27의 각 기재와 증인 손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강 교사의 해임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손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 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 해임처분 무

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991. 9.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신청인이 소외 강을 해임한 것은 징계사유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신청인의 학사, 징계업무 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부당하게 교장 선생님의 전횡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가치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또는 가치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보도한 표현인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를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전횡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보도내용 가운데 첫째, 학사운영문제에 관한 「신청인은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를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교장 선생님의 전횡으로 한다」는 보도부분은 그 보도내용의 초점이 학사운영이 교장 선생님의 전횡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으로서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와는 다른 문제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교장의 전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사업무, 교사징계, 학생징계는 학사업무협의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부분, 둘째, 봉급인상분 미지급부분에 관한 「신청인은 1990. 1. 및 2. 의 월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1991. 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교직수당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미지급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3.부터 월급이 인상된 것이고, 교직수당 인상분은 국고보조로 인하여 1992. 1.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분에 대하여도 국고보조가 되면 추가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그 미지급이유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 셋째, 학생 4명의 자퇴처리 부분에 관한 「학생시위주동자 14명 중 4명만

을 자퇴시켰다」는 보도부분은 피신청인도 그 자퇴의 사유를 학생시위주동으로 이미 밝히고 있으며, 이 부분 보도는 자퇴한 위 4명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 영석고등학교의 다른 부당한 사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자퇴처리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자퇴처리의 이유를 상세히 밝혀 신청인의 자퇴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퇴학생 4명은 불량씨클을 만들었으며 허위사실의 불량유인물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소요를 선동하였는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므로 자퇴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교사 및 학생의 징계 등 학사운영의 처리에 있어서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 1990. 1., 2.월분의 봉급인상분과 1991. 8.부터 12.까지의 교직수당 인상분의 미지급 사유가 국고보조관계 때문이라는 부분 및 학생 4명의 자퇴처리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은, 그 정정이 모두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로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주장 및 항변은 소외 강 교사의 해임부분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내인 정정보도문 기재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8.

재판장 판사 김 길 중
판사 한 주 한
판사 문 일 봉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목 : 1992. 9. 1.자 MBC-TV PD수첩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 제하의 보도에 대한 관련당사자의 반론

본문 : 1992. 9. 1. 22 : 00경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소재 영석고등학교의 교사, 학생에 대한 징계문제, 학사운영문제 등을 다룬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관련당사자인 학교법인 영석학원(이사장)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1. 영석고등학교 문리과 교사로 재직해오다가 1992년 8월에 해임된 손 교사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학사업무라든가, 학생 징계, 교사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거의 단독적으로 일이 시행이 되고 부당한 교육적인 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여러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해임, 자퇴를 당하거나 길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방영하였으나, 사실은 영석고등학교의 학사업무는 교장, 교감 이하 주임교사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사에 관한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 징계는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 영석고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손 전 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90년 1, 2월분 봉급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학교장이 착복하였고, 91년 8월 내지 12월분 교직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라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 영석고등학교에서는 1990년 1, 2월분 교사봉급인상분에 관하여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편성되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봉급도 3월부터 인상지급되었고, 1991년 8월에서 12월분의 교직수당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로 인하여 1월부터 인상지급하고 있었으며, 지난 분에 대하여도 추가 국고보조신청중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되면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3. 교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수위실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영에 대하여는 사실은 영석고등학교는 수위 권 씨와 이 씨가 수위로 상근하고 있었으며, 다만 교사들은 위 학교 앞 4차선 국도는 많은 차량들의 과속질주로 빈번히 사고가 발생되므로 등·하교시, 승·하차 보행질서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및 비담임교사로 구성하여 순번제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 영석고등학교 교장의 가묘 잠역에 교사,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를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위 내용 방영시 가묘라 지적하였던 부분은 위 학교가 전방지구에 위치한 점으로

인하여 일단 유사시 학교의 관계기밀서류 및 학생생활 기록부 등을 신속히 숨기기 위한 위장 장소였으며, 이른바 가묘의 봉분이란 것도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5. 영석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일로 4명의 학생을 자퇴시킨 내용을 방영한 점에 대하여 사실은 위 자퇴학생 4명은 「훈민정음」이라는 불량씨클을 만들어 그 씨클을 지휘하는 학생들로서 허위사실의 불량유인물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많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므로 그 당시 학생과장의 간곡한 설득과 지도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발하던 4명의 학생에 대하여는 부득이 징계위에 회부하였으나, 학생들을 위하여 자퇴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자퇴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6. 「영석고등학교 교실의 선풍기등 비품도 학생들이 돈을 몇천원씩 거두어서 샀다」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영석고등학교에서는 학기초에 각반에 학급비품을 일괄하여 전 학년에 지급하고 있으나, 중간에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학급에서 일부 보충 보완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학부모가 그 학급에 선풍기를 기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7.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여두고 학생들의 사용을 금지 시키고 외부에서 손님이 올때만 개방하는 전시용이라고 방영한 점에 대하여는 방영시 지적된 화장실은 교사들의 전용 화장실로서 샤워실과 세탁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의 장난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방지코자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8. 「졸업을 일주일 앞둔 학생을 자퇴시켰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문제의 박 학생은 영석고등학교에서 계약 추천으로 선발한 군(軍) 장학생이었는데 당시 동계방학 전에 군소집영장을 받아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학교를 결석하고 가출 방황하자 그 학생의 부모는 군입대를 꺼리는 아들의 행위로 3년간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형편에 이르러 법적,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학생의 자퇴를 용인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담임선생이가출 방황하고 등교치 아니하는 학생을 만나 졸업이 가까웠음을 강조하며 설득 지도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자퇴 고집을 꺾지 못하여 부득이 학생 부모의 승낙하에 학생지도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담임선생이 자퇴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읽어본 부모가 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여 학생 스스로 자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2목록 정정요구문

1. 학교법인 영석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 해임당한 강 교사의 「노래수업 시간과

관련해서 시말서를 받아 두었다가 소요와 관련해서 해임당했다]라고 하는 강 교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방영하여 마치 위 강 교사가 부당히 해임당한 것처럼 방영한 것에 대하여 사실은 위 강 교사는 1990년 5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교과서 이외의 노래인 「터」「상록수」 등 그 당시 대학가의 데모가로 불리워지는 의식가요를 1,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 의해 학부모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거센 항의를 해와서 비로소 학교에서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 학부형들이 자식들의 의식화를 우려하여 강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자 동 강 교사는 다시는 그와 같은 교과서 이외의 의식화 노래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학부형들에게 써주어 일단락 되었으나, 그후 영석고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을 주축으로 소요를 일으키려 한 것이 학생들을 통해 학부형들에게 발각되어 학부형 총회에서 분노한 학부형들이 밴드부 지도담당교사인 강 교사의 사퇴요구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르지 않는 강 교사의 해임을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영석고등학교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등을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2항 기재와 같다.
4.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3항 기재와 같다.
5.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4항 기재와 같다.
6.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5항 기재와 같다.
7.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6항 기재와 같다.
8.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7항 기재와 같다.
9.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제8항 기재와 같다.

제3목록 방송내용문

송 PD : 지난 28일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교문 앞에서는 이 학교에서 해직된 해직교사와 강제로 자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부모가 나와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 교사 : 학사업무라든가 학생징계, 교사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거의 단독적으로 일이 시행이 되고 부당한 교육적인 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선생님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이 자퇴를 당하거나 길거리로 내몰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형 : 교육자의 양심으로써 어느 정도 선처해 주면서 애들을 도닥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애들한테 그냥 자퇴원서를 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

송 PD : 영석고등학교에서 물리과 교사로 재직해 오다가 한달 전에 해임된 손 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손 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했었다는 일명 수첩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해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교사 : 제가 그날도 학력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 학력고사 시험지를 학생들 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추리러 인쇄실에 간 틈을 이용해서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은 교감선생님이 몰래 꺼내 갔습니다.

제 수첩을 꺼내서 복사했습니다. 저는 항의를 했죠. 왜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져서 그걸 복사를 하십니까? 했더니 오히려 교장선생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를 못해 오겠습니다. 제가 복사를 어떠한...

송 PD : 이 수첩은 사물이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이 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서 먼저 시달서를 써오라고 했고, 얼마후에는 교무회의에서도 쫓아내더니 결국은 해임을 시켰다는 것이 이 손 교사의 주장입니다. 이 수첩사건이 있는 지 한달반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학교측에서 왜 수첩을 꺼내 보았다는 것인지?

기 교사 :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부정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다음 홍난파의 가곡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아닌 것은 그런 말은 넣지 말라, 학생들한테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해서 그런 부정적인...

송 PD : 선생님들에 따르면 긍정형과 부정형의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로 부정문으로 된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러합니다.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였습니다.

송 PD : 명령불복죄란 뭐예요? 결재를 안받았다.

이 : 그렇죠.

송 PD : 근무태만이다 뭐 이런식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회자 :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안을 냈는데도 교장의 결재를 못받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직이 되고 파면을 당했다 이거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말이죠.

송 PD : 잘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90년에 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90년 10월에 학교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모의하다가 사전에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요와 관련해서 해임된 교사가 한명 있었는데요, 음악을 가르치는 강 교사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송 PD : 이 강 교사는 소위 노래수업 시간으로 해서 그해 5월에 시말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학생들의 소요가 발각되자 과거에 쓴 시말서와 관련해서 결국 해임까지 당하고 말았다는 주장입니다. 그후 경인일보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은 교장전횡 운운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문을 제소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 학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이 학교측에서 잘못 오보됐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가 판단할 때의 그 상황은 경인일보에 났던 상황은 다 옳은 것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열다섯분이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부터 학교에서는 계속 이 열다섯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오고 결국 이 순간까지 지금 여기 손 선생님이 그 사건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송 PD : 아 두분 다 거기 비서명 교사로 두 분다.

○ :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열다섯분 중 열한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의로 사표를 내거나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그런 수난까지 왔고 학교에 현재 네분이 계시는데 그 네분도 신분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송 PD : 문제의 영석학교는 설립자인 안 씨가 이사장 겸 교장으로 있습니다.

손 교사 : 89년 12월이 지난 90년 1, 2월이 되면 인상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이 학교 교장이 하는 말은 학교는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상된 월급은 3월달부터 주어야 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90년 1월 2월달 월급 인상분을 착복했고, 또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1년도 8월부터는 교직 수당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분도 지급을 안해주었습니다.

송 PD : 교직수당을 말이죠. 91년 8월에서 12월분까지를 안주었다면서요?

교감 :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입니다. 모든 급여는 다 주었습니다.

송 PD : 다 주었습니까.

사회자 : 그저 봉급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 PD : 그런데 이 명세표를 비교해 본 결과 90년 1, 2월분의 봉급은 인상되기전 금액을 받았고, 3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1년 8월에서 12월분의 교직 수당도 1인당 4만원씩 되는 인상분을 몇달씩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 PD : ...에 지금 여기는 학교의 뒷산입니다. 올라가보면 교사 뒤편으로 교장의 가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과 교사들을 동원해서 가묘를 조성하게 하고 묘 주변을 늘 손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본 것이 가묘였는데 풍수지리상으로 위쪽이 좋다 이래서 옮겼다는군요.

그 외에도 갖가지 잡역에 교사들이 동원되는 통에 수업준비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얘기였습니다.

송 PD : ...이 학교는 2년에 한번꼴로 학생소요가 일어날 만큼 학생들이 당하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학생들이 시위를 준비하다가 사전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시위주동자로 몰린 학생은 14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4명만이 강제로 자퇴를 당했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불만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퇴생 이 : 머리가 2부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렇게 잡아서 넘어가면 다 잘라 버리고.

송 PD : 그리고.

자퇴생 김 :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애들 너무 때리는 것 같고요.

자퇴생 이 : 운동장에서 비오는 날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 가지고 대가리 박아시키고, 구두발로 밟고, 또 선생님이 술먹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때리고, 육성회비, 학생회비, 그런거요, 전혀 저희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요. 또 환경미화한다 그러면은 페인트 칠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돈 거둬서 칠하고요, 또 뭐야 학교비품은 그것도 학생들이 학급비 거둬가지고 사놓고...

송 PD : 지금 보시는 이 교실에 있는 4대의 선풍기도 학생들이 돈을 몇천원씩 거둬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놔지만 평소에는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잠가두었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선도를 한 다기 보다는 대부분 강제자퇴를 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지난 2월에 졸업과정까지 다 마치고 졸업을 1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학생 하나가 3일간 결석을 했다고 그래서 강제자퇴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자퇴생 박 아버지 : 졸업하기 일주일전 3일 결석에 이걸 해버린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며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지시했을 때 안했을 때는 그 선생도 잘린다니 그러니까 선생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송 PD : 이 글씨는 누가 쓴거예요.

박 아버지 : 담임선생님이 써 왔죠.

송 PD : 담임선생님이 써준거예요?

박 아버지 : 써갖고 온 거예요.

사회자 : 담임선생님이 자퇴서에 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어서 강제자퇴를 시킨다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네.

송 PD : 네 어떻게 교육자로서 이런 처사를 할 수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사회자 : 네...

송 PD : 사학은 개인이 세운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교육의 뿌리로서 사학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운영하는 분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육영사업에 참뜻을 거듭 확인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자 : 어쨌든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분규가 생길 때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어른들이 정의와는 거리가 먼 짓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

.....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15.자 결정(93카기388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15일 황 교수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대학입시부정에 상명여대 교수인 신청인 황 씨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전문브로커로 활동해 거물급 4인방의 한 사람이라고 보도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찰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부정입학을 알선해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 상 이 사실도 정정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이 구하지도 않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3년 2월 9일자 사회면에 『不正입학 알선 「물밑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3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서울시 경찰청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기사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3카기3887 정정보도

신 청 인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종 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란 하단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위 제목의 옆 및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3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의 1992. 2. 9.자 사회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외 2인의 사진과 함께 『부정입학 알선 물밑커백션』이라는 제목과 『거물급 브로커 4인방에 수사초점』이라는 소제목 아래 「광운대 입시부정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대학과 대학, 대학과 고교를 연결해 사립대 부정입학의 비밀통로역할을 해 온 <거물급 4인방>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양대 방 사무부 처장, 상명여대 황 교수(49, 수배), 대일외국어고 김 교사, 강동고 전 재단이사 이 씨 등 4명은 광운대 뿐 아니라 상당수 사립대학들을 학부모들에게 연결시켜 온 전문브로커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강남일대의 부유한 학부모층을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은 5억원대, 중위권 대학은 2억~3억원대」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며 공공연하게 대학 고위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한편 대리시험에도 간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학부모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를 조 교무처장에게 알선해 준 황 교수는 지난 90년부터 2년 동안 상명여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역임하며 사립대학 교무처장협의회등을 통해 친분을 맺어둔 다른 대학 보직교수들에게 접근, 부정입학을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학부모 이씨가 경찰에서 딸의 가정교사를 하던 황 선생이라고 진술했던 황 교수는 상명여중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재단의 뒷받침으로 총장비서를 거쳐 지난 86년 영문과 교수로 임명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경향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향신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피신청인의 사회부 기자 4, 5명이 93학년도 대학 입

시 당시의 광운대 부정입학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수사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는 등으로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다음 게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사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한 학생을 광운대학교에 부정입학하도록 알선해 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정정보도문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율제1호증의 5,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 11(통보서), 14(판결), 소율제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증언을 종합하여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굳이 밝히고 싶다면 피신청인이 이를 정정보도가 아닌 기사로써 게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의 활자는 13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본문활자의 크기, 기사내용의 신청인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으로,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 본문 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크기와 활자를 신청 취지보다 작게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5.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정정보도문

경향신문은 1993. 2. 9.자 사회면에 『부정입학알선 물밑커넥션』이라는 제목과 『거물급브로커 4인방에 수사초점』이라는 소제목으로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상명여대 황 교수는 사립대 부정입학의 비밀통로 역할을 해온 거물급 브로커 4인방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수 사립대학들을 학부모에게 연결시켜 온 전문 브로커이고, 대리시험에도 간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 교수는 입시부정 전문브로커가 아니고 다른 입시부정 브로커들과도 연계된 사실이 없으며 대리시험방법에 의한 입시부정에 간여한 4인방의 한 사람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

신청인의 진술서 요지를 보도하면서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제목 및 편집자주에
표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는 이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6.자 판결(93카기325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6일 통일민주당지구당창당방해사건으로 수감중인 이 씨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인 동아일보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위 「창당방해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자신의 진술서 내용을 동아일보가 발췌·보도하면서 진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을 잘못 보도하였다 하여 동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문제의 기사 앞부분에 신청인이 자술서를 통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신청인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게 하였고, 진술서의 취지 및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발췌·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신청인이 진술서에서 안전기획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제3자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토록 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면서 「진술서의 요지를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가 1993년 6월 24일자 30면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 당부』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를 요약 게재하면서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보도하자,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서에는 「공작정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자신이 장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식사비조로 돈을 받아 그 자금을 폭력적인 방법의 방해활동에 사용토록 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48). 피신청인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신청인에 대한 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3254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李)

서울

현재 구치소 수감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안 봉 진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일자 전체의 동아일보 제30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9cm, 세로 4단의 크기로, 2단 중앙에는 2.5×2.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1993. 6. 24.자 동아일보 제30면에 실린 것과 동일한 것)을 싣고, 1단 중앙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4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 중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4cm, 세로 5단으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2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의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 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당부』라는 큰 제목하에, 기사 중간부분에 『장 씨, 만날 때마다 1억원씩 쥐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라는 작은 제목과 기사 우측 상단에 『「창당방해」 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작은 제목을 붙이고, 「이씨는 검찰수사와 법원재판과정에서 장문의 자술서를 제출,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에게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위에서 말하는 자술서는 신청인이 1993. 3. 2.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소갑제2호증의 1)와 같은 해 4. 18.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소갑제2호증의 2)를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갑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각 진술서에서 정치입문과정, 신한민주당의 창당 및 활동과정, 국가안전기획부장 장 4 만나게 된 경위 및 대화내용, 신한민주당의 분당과 통일민주당 창당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그에 대한 반대활동,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입장 등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단지 신한민주당의 주류측이 분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는 데에 분개하고 창당반대 취지의 현수막부착, 완장패용,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하려고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각 진술서의 요지를 발췌 보도하는 형식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기사 앞부분에서 신청인이 자술서를 통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위 각 진술서에서 신청인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었음을 자인하는 기재를 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각 진술서의 취지 및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발췌 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신청인이 위 각 진술서에서 위 이 와 함께 위 장 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가안전기획부가 의도하는 공작정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실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점과 위 이용구를 통하여 배후의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건네주어(기사내용 중에는 자금을 위 이 에게 주었다고만 표현했으나 기사 중간의 작은 제목을 『「분당반대자금」이 씨 통해 건네』라고 씀으로써 전체적인 취지가 신청인이 위 이 를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건네 준 것처럼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각 자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끔 만들었다 할 것이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각 진술서의 요지를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동아일보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별지 제1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첫째, 피신청인은 위 기사 중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부분은 기사의 표제에 해당하고,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는 부분과 괄호안에 넣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부분은 편집자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각 진술서의 내용 중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사성 및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고 각 진술서의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독자의 이해편의를 돕기 위한 표현방식일 뿐이며 특히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는 부분은 기사도입문구에 불과하여 사실주장도 아니므로 위 각 기사부분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작성한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상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로 이를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독자들로서는 마치 위 각 진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므로 이 부분도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신청인의 진술서를 공표한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소정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제삼은 기사부분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각 진술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위에서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넷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내용을 위 기사와 비교하여 보거나 신청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이를 게재할 경우 독자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고, 한편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분량적인 면에서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

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진술서의 요지라 하여 보도한 것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독자를 혼란케 한다고 할 수 없고(신청인에 대한 앞서 본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정보도를 구하는 각 부분이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피신청인이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은 현재 심리중인 창당 방해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씨의 변호 및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은 별지 제1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가로 14cm, 세로 5단의 크기로 게재하여 달라고 구하나,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9cm, 세로 4단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6.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1〉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전두환 씨 「안기부장과 협조」 당부』라는 큰 제목 아래 기사 중간부분에 『장 씨, 만날 때마다 1억 원씩 쥐 「분당반대자금」 이 씨 통해 건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 우측 상단에 『「창당

방해」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작은 제목을 붙이고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에게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말하는 자술서의 실제 명칭은 진술서로서 그 진술서에는 「5공말 공작정치」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고, 이 씨가 5공말 공작정치에 말려들었고 토심회라는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이 씨가 반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필요한 분당반대자금을 이 씨를 통해 타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돈이 20여개 통일민주당 지구당을 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동아일보는 1993. 6. 24.자 제30면 좌측 상단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창당방해」 이 씨 「5공말 공작정치」 자술서』라는 제목 아래, 「이씨는 5공말 자신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자술서의 요지」라 한 다음, 「장 부장이 준 돈은 <토심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고 이 의원과 반분하여 사용했다」, 「그밖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이 씨를 통해 건네 주었다(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과정에서 20여개 지구당이 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이 씨가 쓴 진술서에는 「5공말 공작정치」라는 문구가 없고,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 기사를 취소, 정정하며, 위 기사의 문맥전체를 볼 때 마치 이씨가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들어 20여 군데의 창당대회를 방해한 것을 스스로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본의 아닌 일이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은 현재 심리중인 창당방해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씨의 변호 및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

횡령의혹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1.자 결정(93카기378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4.자 결정(94타기155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11일 정립회관 관장 인 황 씨가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않았고, 기사 중에 신청인의 반박취지 일부가 실렸다고 하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측이 비록 신청인측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1993년 4월 16일자 1면과 3면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 『정립회관 사건 총체적 부정양상』 제하의 기사로 황 씨의 공금횡령 사실,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 등의 비리가 있다고 보도되자,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99).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을 근거로 한 기사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의 정정보도게재 결정후, 피신청인측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자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이 결정을 송

달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決 定 文

사 건 : 93카기3786 정정보도

신 청 인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피신청인 : 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기 섭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제1면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 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은 44급 고딕체 활자로 왼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그 여백에 가로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두고, 그 하단에 『황 관장 윤상 장학금 횡령의혹은 낭설』이라는 제목을 두며, 앞의 제목은 0호 활자로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의 크기로, 뒤의 제목은 특호 활자로 가로 30.4센티미터, 세로 4.3센티미터의 크기로 하고,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5호 활자로 하며, 정정보도내용에 윤상장학금 가운데 1차 기탁금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인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의 1993. 4. 16. 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 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

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같은 신문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 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정립회관 직원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던 정립회관 회계비리에 대한 사건은 윤상장학금 횡령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 막연한 추정이나 감정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라고 쓰고, 그 이하에서 『황 관장 장남의 부정입학에 관한 의혹』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의 장남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이 직원들에 의해 제기... 직원들은 그가... 실력으로 광운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황 관장의 장남은... 연합고사에 낙방한 이후 대원외국어고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부정입학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진과 정 씨 명의로 땅을 소유... 특히 정 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은 79년에 구입하고 91년에 명의 이전을 하기까지 정립회관 직원 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황 관장과 정 씨의 개인 명의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시가기준으로 환산하면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정립회관내 영수증 처리문제』라는 사이 제목 밑에 「황 관장과 정 씨의 회계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굴비를 샀다든가 아니면 간장을 구입한 경우까지 회관영수증으로 둔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그러나 이들의 가짜 전표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기자가 수사관이라며 반발』이라는 사이 제목 밑에 「한편 윤상장학금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던 황 관장은 지난 15일... ‘기자가 수사관이나. 자료는 지금 내 손에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자료를 넘겨 줄 의무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이사회에 사안을 넘기고 공개여부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해명을 포기. 그러나 취재결과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

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임이 정형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신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정립회관의 회계장부, 전표 등 서류를 조사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다음 게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을제3호증의 1내지 5(각 신문), 소을제4호증의 10(각 계산서), 소을제5호증(성적표), 소을제6호증의 2, 19(각 공소장), 5, 10, 12, 13, 16(각 진술조서), 8(확인서), 9, 11, 22(각 진술서), 14, 17(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피신청인은 위 기사 중 윤상장학금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해명하는 바를 같은 기사에 포함시켜 기사화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2호증의 1(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앞서 본 위 신문의 제1면 기사란 중『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에『「회관내 차입금형태 처리」 해명, 장부상 기록 전혀 맞지 않아』라는 부제목을 두고, 기사 본문 내용 가운데도「직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횡 관장은 윤상장학금의 기금은 1차분 1,500만원이 전부이며 직원들이 주장하는 2차분 1,000만원은 윤상 군의 부친이 정립회관에 기부금으로 회사한 것」이라고 밝히며,「윤상장학금 1,500만원은 87년도 정립회관의 운영이 어려울 때 차용해 회관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원상회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라고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기사의 부제목 자체에 신청인의 해명은 장부상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 1, 3면에는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무색하게 하는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 내용과「윤상장학금에 대한 협회자료에 의하면 1차분 1,500만원에 대한 장부는 있으나 이 기금을 차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정립회관의 회계자료에도 윤상장학기금이 유입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난 12일부터 기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회관의 총무과 직원들이 이틀동안 윤상장학기금의

유입흔적을 찾았으나 기금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등의 피신청인 측의 취재결과가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기사 중에 신청인의 반박취지가 일부 실렸다 하여 이로써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청인은 정정보도내용에 윤상장학금 가운데 1차 기탁금 15,132,707원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 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소율제6호증의 16(진술조서-이)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1차 기탁금을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 지원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기탁자인 신청외 이 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율제6호증의 14(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소율제6호증의 8(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바, 따라서 위 정정보도청구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낭설』이라는 제목을 두고, 앞의 제목은 0호 활자로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의 크기로, 뒤의 제목은 특호 활자로 가로 30.4센티미터, 세로 4.3센티미터의 크기로 하고,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5호 활자로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게재 면의 위치 및 부위, 제목 및 본문 활자의 크기, 전체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은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라고 하나로 붙이되 정정보도문 자체의 크기를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정하는 외에 제목 자체의 크기를 따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고,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의 활자는 44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11.

재판장 판사 안 성 회
판사 이 동 원
판사 손 지 호

〈별지〉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은 1993. 4. 16.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황 씨의 장남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와, 황 씨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갑북동 등지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땅을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 씨와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시가로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연대 씨와 그 남편이 개인적으로 굴비나 간장을 산 것도 정립회관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가 윤상장학금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다가 기자에게 수사관이냐고 따지면서 해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씨는 윤상장학금 중 1981. 12. 18.에 1차로 기탁된 금 15,132,707원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어렵게 장학사업을 꾸려나가다가 정립회관의 보조사업비 수행 지원비로 이를 전용한 후 결산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1986. 3. 24.에 2차로 기탁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1987. 3.부터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가수대체금으로 일시 지출하여 가수금으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며, 황 씨의 장남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고, 황

씨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4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립회관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에 대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기자에게 수사관이냐며 반발한 이유는 자료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립회관의 감사 등의 자문을 받아 통상적인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해 심사받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

정정보도신청인 황

決 定 文

사 건 : 94타기1557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황 (黃)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채 무 자 : 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간 한국장애인 복지신문 제1면 좌측상단부분에 가로 18.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은 44급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12급 명조체 활자로 그 여백에 가로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하루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3카기3876 정정보도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4.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이 동 원

판사 조 윤 신

〈별지〉

『정정보도문－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은 1993. 4. 16.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살해당한 이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정립회관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황 씨의 장남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와, 황 씨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땅을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 씨와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시가로 40여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와 그 남편이 개인적으로 굴비나 간장을 산 것도 정립회관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황 씨가 윤상장학금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다가 기자에게 수사관이냐고 따지면서 해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씨는 윤상장학금 중 1981. 12. 18.에 1차로 기탁된 금 15,132,707원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어렵게 장학사업을 꾸려나가다가 정립회관의 보조사업비 수행 지원비로 이를 전용한 후 결산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1986. 3. 24.에 2차로 기탁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1987. 3.부터 정립회관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가수대체금으로 일시 지출하여 가수금으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며, 황 씨의 장남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고, 황

씨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4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립회관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에 대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관련한 바가 없어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기자에게 수사관이냐며 반발한 이유는 자료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립회관의 감사 등의 자문을 받아 통상적인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해 심사받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

정정보도신청인 황

□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며, 방송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특정단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2. 20.자 판결(93카합110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0일 한국 화랑협회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내용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방송내용은 미술계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촉진제가 되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제작, 방송된 것이지 신청인 협회를 포함한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은 아닌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방송하여야 한다면 언론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나 존재의 바탕이 없어지게 된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 등 법익 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문화방송이 1993년 6월 15일 「집중조명 오늘」 프로그램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편에서 한국화랑협회의 감정 비공개주의에 대하여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자 신청인은 언

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4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협회의 비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해 가짜그림이 매매되는 미술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이어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 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합1107 정정보도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韓國畫廊協會)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2의 2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도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변론종결 : 1993. 11. 2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첫 부분에서,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화요일 22 : 55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영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최초 방영시에, 만일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별지 제2 정정요구문 기재 내용을, 제목은 이 사건 문제된 방송의 화면 중 「감정위원수」와 같은 크기, 모양 및 색깔의 문자로, 본문은 같은 방송의 「첫번째 답변」과 같은 크기, 모양 및 색깔의 문자로 한

화면을 15초씩 위 정정요구문 기재 내용이 끝날 때까지 방영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그 운영의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집중조명 오늘」에서 1993. 6. 15. 화요일 22 : 55부터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그 후반부에 이르러, 별지 제3 방송내용문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방송내용에 대한 별지 제2 정정요구문과 같은 반론 주장을 방송할 것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방송내용은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와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방송 내용 중 오류라거나 불완전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반박 또는 해명하는 내용의 반론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방송을 구하는 위 정정요구문은 신청인의 반론을 피신청인이 인정하여 정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신청인의 반론의 방송을 청구하는 부분은 일응 이유있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인정하여 정정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방송내용은 진실에 부합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위 주장을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도보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별지 제2 정정요구문과 같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을제2, 3호증(신문기사)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위 방송내용은 미술계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촉진제가 되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제작, 방송된 것이지 신청인 협회를 포함한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은 아닌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련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방송하여야 한다면 언론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나 존재의 바탕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등 법익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언론의 공개이익만을 내세우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다시, 위 방송에서 신청인의 주장도 충분히 함께 방영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인정의 방송내용과 정정보도내용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감정의 비공개주의에 대하여 비리에 관련이 있는 듯이 보도한 부분에서 신청인 협회 사무국장인 위 의 발언으로 「감정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감정위원과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 이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가 어디서 암흑가에 있는 분들이 가짜그림을 기업체에 강매했다. 그것을 자기가 기업체에 강매할 때는 진품이라고 해서 강매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몇 분 안되는 감정위원이 노출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는 부분을 방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는 감정의 비공개주의를 채택한 이유로서 감정위원에 대한 청탁예방과 감정위원의 신변보호를 들고 있는 신청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방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방송한 신청인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로 편집되어 신청인의 주장과 다른 취지로 보이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해명 기회를 구하고 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나아가,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는 방송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 중 「이중섭 씨의 유작」이라는 표현은 「이중섭 씨의 유작으로 추정되는 내지 주장되는 작품」의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어서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표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방송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에게 문제의 그림 2점이 이중섭 씨의 유작이라는 의미 내지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단순히 지엽발단적인 표현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다시 방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의 약속 파기로 무산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증인 허 정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협회 회장 위 김 은 1993. 7. 말경 피신청

인 회사의 제작국장 소외 하 을 만나 문제된 작품의 진위에 관하여 신청인 협회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하겠다는 위 하 의 제의를 받고 이를 일단 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방송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제의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결국 위 방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사실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론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게재 내지 방송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피신청인이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제작한 내용의 방송을 신청인이 거부하였음을 들어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방송할 정정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정정보도문의 방영이 원보도와 동등한 공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집중조명 오늘 첫 부분에서 만일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 현재 위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화요일 22:55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의 반박 및 해명 내용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0.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중
판사 송 영 철

〈별지 제1〉 정정보도문

제목 : 정정보도문

본문 : 1993. 6. 15. 22:55부터 집중조명 오늘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 아래 본사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의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관련당사자인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

1.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의뢰된 그림은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고 방송하였으나, 위 그림을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2. 「한국화랑협회가 가짜라고 판정한 그림을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방송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의 감정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매수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화랑협회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우리는 여기서 한국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 「한국화랑협회는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라면서 감정위원 수와 외부인사 위촉에 관하여 위 협회의 답변을 첫번째 답변, 두번째 답변으로 나누어 순차로 화면에 문자로 표시한 방송을 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는 감정위원의 정수와 감정기일에 출석한 감정위원수를 나누어 답변한 것이지 답변이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5. 「한국화랑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도 아닌 돈을 받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집니다. 싫으면 안오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없습니다」라면서 협회장이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을 방송하였으나, 협회장의 위 발언은 취재기자가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협회장이 반증자료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자 취재기자가 그래도 끝까지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답변한 것인데 앞부분을 삭제하여 전체 대화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준 것입니다.

〈별지 제2〉 정정보도문

제목 : 정정보도문

본문 : 1993. 6. 15. 22 : 55부터 집중조명 오늘 「미술계,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 아래 본사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의 미술품 감정과 관련하여,

1.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로 판정했다」고 방송하였으나 그 그림을 이중섭의 유작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화랑협회는 이중섭의 유작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을 의뢰받은 그림 두점을 가짜라고 판정했다 라고 정정합니다.

2.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가짜라고 판정한 그림을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아보니다」라는 부분은 그 근거가 없는 왜곡된 표현이므로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니다」라고 정정합니다.

3. 본사는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의뢰된 그림은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고 방송하였으나 위 그림을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그림이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정정합니다.

4. 본사는 「우리는 여기서 한국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5. 본사는 한국화랑협회가 「내부규약을 들어 감정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됩니다.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 화랑협회는 왜 이런 비밀주의를 택하고 있는가」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화랑협회는 이해관계자들이 감정위원회에 미리 청탁하는 것을 예방하고 감정위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감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감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의혹이 증폭된다.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은 시청자를 오도할 염려가 있는 절적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6. 본사는 「비공개를 규정하였다는 한국화랑협회의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라면서 감정위원 수와 외부인사 위촉에 관하여 위 협회의 답변을 첫번째 답변, 두번째 답변으로 나누어 순차로 화면에 문자로 표시한 방송을 하였으나 한국화랑협회의 답변은 감정위원의 정수와 감정기일에 출석한 감정위원 수를 나누어 답변한 것이고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졌다」는 본사의 방송은 잘못된 것이므로 「답변이 달라진 적은 없다」라고 정정합니다.

7. 본사는 「한국화랑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도 아닌 돈

을 받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집니다. 싫으면 안오면 될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없습니다」라면서 협회장이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의 위 발언은 본사 취재기자와의 많은 대담 내용을 본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뒤를 잘라버려서 전체 대화의 내용과 다르게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부분만 부각시켜 시청자에게 나쁜 인상을 준 것이며 본사가 이를 횡포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별지 제3〉 방송내용문

해설자 : 다음은 미술품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인 줄 알고 산 그림이 가짜로 드러나는 소동이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사건은 좀 해괴합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이중섭 씨의 유작 2점을 가짜라고 판정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 가짜를 3억원에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그림 파동, 그 뒤에는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자 : 한국현대미술의 유일한 감정기구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지난해 7. 16. 작품 2점을 의뢰받았습니다. 4호와 6호짜리 황소 그림으로 이중섭 씨 작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중섭 씨 작품은 시중에서 호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진품으로 판정받았다면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감정결과는 가짜,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6개월이 지난 올 2월 그 그림 2점을 3억원에 팔라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한푼 가치없는 가짜그림에 3억원을 주겠다고 그것도 우습고, 10억 한다는 그림을 3억원에 넘기자니 그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 결국 이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화랑협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랑협회의 가짜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기자 : 그러나 화랑협회는 감정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가짜라고 판정한 이유와 근거의 설명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됩니다. 감정을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를 규정했다는

내부규약이라는 것도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

(화면은 감정위원 첫번째 답변 9명 + α 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신청인 협회 사무국장) : 아홉 분의 감정위원이 계시고 또 특정한 작품을 감정할 때에는 특별히 그 작가의 작품을 잘 보시는 분을 특별감정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따로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죠.

허 : 9명이 정원이죠.

기자 : 정원이고.

(화면에 두번째 답변 9명의 과반수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이면 감정이 구성됩니다.

기자 : 그러면 다섯 명이면 항상 할 수 있습니까.

허 : 다섯 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화면에 외부인사위촉(공정성 보장조항) 첫번째 답변 외부) 내부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아홉 분 같으면 소위 과반수 다섯 분은 외부 분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하고 4명 이내는 화랑협회 회원으로 합니다.

기자 : 내부위원은 외부위원보다 적어야 된다는 이런 규약이 있는 거죠.

(화면에 두번째 답변 상황따라 외부<내부, 외부> 내부라고 쓴 것을 보이면서)

허 : 그것은 규약의 운영문제인데 정원을 만들 때, 처음에 감정위원을 위촉할 때 과반수, 다시 말하면 5명 이상이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4명 이하는 화랑협회 회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연락을 하면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안나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외부인사가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외부인사가 적을 때도 있죠.

기자 :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밀의 벽은 높아져 갑니다. 화랑협회는 왜 이런 비밀주의를 택하고 있는가.

허 : 감정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감정위원과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 이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선가 어디서 암흑가에 있는 분들이 가짜그림을 기업체에 강매했다. 그것을 자기가 기업체에 강매할 때는 진품이라고 해서 강매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몇 분 안되는 감정위원이 노출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 : 같은 이유라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판사와 검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판결이유 또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기자 : 아무리 화랑협회가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무료도 아닌 돈을 받고 하는 감정이라면 그 책임과 의무는 커집니다. 감정료는 작품 한 점당 350,000원입니다.

(신청인 협회 회장 김 이 말하는 장면을 소리가 전혀 안나는 화면으로 처리하여 보 이면서)

싫으면 안오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횡포임에 틀림 없습니다.

김 : 그 사람들이 화랑협회를 믿기 싫으면 안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

.....

신청인의 아스콘공장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공장의 공해유발 요인도 과장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12. 27.자 판결(93카기76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제4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7일 김 (부영아스콘 대표·부천시 오정구)씨가 (주)중앙환경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심판 소송에서 「아스콘공장의 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 위 공장의 공해유발 요인에 관한 부분도 일부 과장된 것이 명백하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중앙환경신문이 1993년 8월 2일자 제1면 『아스콘공장 설립 썬 민관 마찰』 등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단체들과 행정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공장설립허가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한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181). 중재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부천시사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로부터 적법한 절차 및 협의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을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이 사실에 근거한 기사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등의 위 아스콘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27조 단서 조항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며,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 사일로를 설치해 놓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성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3카기760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김

부천시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환경신문사(中央環境新聞社)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의 28

대표이사 유 정 환

변론종결 : 1993. 12. 6.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9일 이내에 주간 중앙환경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2단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각 인쇄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 중앙환경신문의 제1면 전면에 걸쳐 또는 5대 일간지의 제1면 광고란에 5단 전통 크기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의 보도

소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신청 외 우 과
 공동하여 1993. 4. 23. 부천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지상에 아스콘제조
 공장의 신설허가를 받고 위 공장의 신축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주
 간 중앙환경신문 1993. 8. 2.자 제1면에『아스콘공장설립 썬 민관마찰』,『부천, 먼지 다발지
 역으로 생활환경 크게 위협』이라는 제목하에, 위 아스콘 공장의 설립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단체들과 행정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주민단체들이 위 공장설립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4단기사를 게재하고, 그 관련기사로 제5
 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이라는 제목하에 그 중앙 하단에 부천시와 같은 「개발유도권
 역에서는 시장 등이 조성하는 공업단지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신설이 가능하나 공해공
 장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제6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부천시에 아스콘
 공장 웬말』,『주민 법규전면 손질촉구』,『조합 허가관련 <의혹> 제기』라는 제목하에,「아스
 콘공장이 이곳에 들어설 경우 쇄석, 모래, 필러 및 아스팔트 등을 가열, 혼합하는 제조과정
 의 특성상 골재 및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를 위한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분진, 매
 연은 물론 악취, 소음, 진동 등 과도한 공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곳 관계자
 들은 「이러한 공해는 인체에 유해함은 물론 인근공장의 조업능률 및 품질을 저해시키는
 등 생활환경을 무디게 한다」면서 「취락지역 및 공업지역 인근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위험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스콘공장은 비도시형 공해성
 공장으로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수도
 권내 개발유도권을 비롯한 5개권역에서 아스콘공장의 신, 증설이 일체 제한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8년과 89년에 시내에 소재하고 있던 서울시 직영 아스콘
 공장 등 4개 공장을 이전했으며 인천시에서는 가좌동 공업지역내 아스콘공장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아스콘공업협동) 조합측은 아스콘 사업 허가조건이 여타
 중소기업보다도 상당히 까다로운 점을 지적 이번의 아스콘 공장설립과 관련 의혹마저 제
 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마치 위 공장설립 허가가 관
 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나아가 제7면에서는『아스콘심층분석』,『제조과정서
 엄청난 공해유발』이라는 제목하에, 「아스콘 제조과정은 전체적으로 밀폐되지 않은 노천
 설비에서 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아
 스팔트 원료(핏치, 콜타르)와 혼합, 이를 ...열처리하여 포장제품을 만드는 순서로 이루어
 진다.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골재 등 원자재 투입, 플랜트에 운반투입, 제품출하등에 따르는

중기 및 대형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분진,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통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건식집진장치(백필터)는 습식에 비해 집진효과는 우수하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역시 거의 전면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신청인 등의 위 아스콘공장이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런데 부천시 삼정동에 설립되는 신청인 등의 위 아스콘 공장은 비록 위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제한정비권역에 해당하나 관련 타 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고, 또 아스콘 제조공정은 일부 밀폐되지 않은 노천설비에서 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제조하는 것이 보통공법이나 삼정동에 새로 설립되는 위 아스콘공장은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골재 사일로를 설치해 놓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상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기사 중 위 아스콘공장의 설립허가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 위 공장의 공해유발요인에 관한 부분도 일부 과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신청인은 위 아스콘공장의 설치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된 것이며, 아스콘 공장의 주요 생산기계를 선진 외국에서 도입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아스콘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포함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갑 3, 4, 5호증만으로는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 발행의 위 주간신문 제1면에 전면기사의 크기로 또는 5대 일간지의 제1면 광고란에 5단 전통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는 피신청인이 발행하지 아니 하는 다른 신문에 게재할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고, 그 크기도 정정보도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비추어 가로로 조판되는 피신청인의 신문에 2단 기사의 크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9일 이내에 주간 중앙환경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2단크기로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인쇄하여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7.

재판장 판사 김 정 술
판사 지 영 난
판사 이 규 철

제1 목록 정정보도문

본보 1993. 8. 2.자 제1면의 일부 및 제5, 6, 7면의 전면에 게재된 아스콘공장 설치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 아스콘 공장의 허가문제와 관련하여 삼정동에 설립되는 아스콘 공장허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에 해당하나 관련 타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다.

2. 아스콘공장시설 및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아스콘제조공정은 일부 밀폐되지 않은 노천에서 쇄석, 석분, 모래 등의 골재를 혼합, 분쇄, 건조하여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제조하는 것이 보통공법이나 부천시 삼정동에 새로 설립되는 아스콘공장은 부천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골재분쇄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공된 골재를 매입해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상 물질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청구인 김

□

온천개발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고 투기사업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주지방법원 1994. 6. 16.자 판결(94카합27)

事實概要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994년 6월 16일 (주)제주온천이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신문이 『의혹, 분출되는 현안(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진단)』이라는 제하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라고 단정짓고, 과업지시서 및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는 용역업체의 중간보고서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정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인 만큼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은 제주신문 1993년 12월 9일자, 10일자, 11일자 등의 기사 및 사설에 『투기위한 유령용역』, 『용역성과품 법규묵살』 등의 제하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제주중재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근거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27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주온천

제주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제주시 연동 2036

대표이사 김 대 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창 원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주신문 제1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딕 활자로 우측단 중앙에 세로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4호 고딕 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의 성명은 본문 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 활자 200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본문)의 기재와 같으나, 다만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소외 남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북제주군에 제출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 유 : 각 성립에 다름 없는 갑제 1, 2, 10호중의 각 1, 2 갑제8호중의 1내지 10, 갑제9호중의 1 내지 14, 갑제13호중의 12, 27, 28, 30, 31, 33, 34, 35, 36, 37 갑제14호중의 1 내지 39, 을제29 내지 32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8. 11. 1.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의 온천개발과 그에 부수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8. 9.경부터 위 세화리 및 송당리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 및 조사용역비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하여 오던 중 1989년 경 위 일대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조사를 거쳐 1990. 8.경 관찰청인 북제주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후, 현재 온천공 5개공과 지하수 3개공을 확보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입안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신청인이 개발한 세화(송당)온천지구가 신규관광지로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지방일간지인 제주신문의 제1면 또는 제2면의 우측 상단부에 가로 13내지 17cm, 세로 7~8단의 크기로 『의혹, 분출되는 현안(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진단)』이라는 제목 하에서 기획 시리즈를 이른바 박스기사로 연재하면서 1993. 12. 9.자에는 『투기위한 유명용역<1>』이라는 제하에 같은 달 10.에는 『용역성과품 법 규묵살<2>』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추진중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과 그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과 같은 달 11.자의 제3면 사설란에도 이에 관한 사설을 게재한 사실, 위 기사 및 사설(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은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93. 12. 10.자 1면 기사 하단), 위 온천개발사업이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私意)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93. 12. 9.자 1면 기사)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 12. 10.자 3면 사설)고 보도하면서 「카지노의 대부로 알려진 J씨 등 타지방 사람들이(위 개발지역 내의 토지들) 85. 4. 다 투기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사설)라는 등의 내용까지 덧붙여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임을 단정적으로 거론한 후에, 위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이 소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용역을 「투기위한 유명용역」(93. 12. 9.자 1면 기사 표제)으로 단정하면서 「군사독재정권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대규모 인허가 이권을 추구한 이들 정치, 경제적 강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공개발 계획에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공익을 가장하여 꾸며 낸 것

은 바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일부 기술용역업체였다」, 「신제주, 기성시가지와 거의 맞먹는 대규모 관광지계획을 도 당국은 제주대 용역단의 동의도 없이 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켰는데, 종합계획의 최대관광지구수립계획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私慾)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말인가!」(93. 12. 10.자 3면 사설)라는 등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당국과 용역업자의 배후에서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조정하여 꾸며낸 것처럼 표현하고, 세부적으로는 위 용역이 ① 과업지시서와 중간보고서도 없이－북제주군은 과업지시서 조차 용역업자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용역수행 중 중간보고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93. 12. 9.자 1면 기사), 문제의 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도 중간보고서도 없이 한날 「통과절차」로 작성되었다.(93. 12. 10.자 사설, 다만 같은 날짜의 기사 소제목 및 본문에는 당국이 과업지시서는 있었다고 밝혔음을 보도하고 있으나, 그 소제목의 활자 크기는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전날의 소제목보다 크기가 작다), ② 법절차를 무시하고－용역참가 기술진이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유령 용역보고서를 기본바탕으로(93. 12. 11.자 3면 사설)－행하여졌고, ③ 용역내용도 부실하다－범법부실보고서(같은 사설)－는 식으로 표현하여 용역수행과정이 불법이고, 그 성과품인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단정지은 후,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정집단,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사의(私意)에 의하여 계획되는」,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이 용역은 누가 어떤 경위로 추진했는가?」(93. 12. 9.자 1면 기사),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93. 12. 10.자 1면 기사), 「군사독재정권 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대관광지구 계획수립이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93. 12. 10.자 3면 사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위 기사와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 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12.자로 『온천법으로 종합계획<3>』이라는 제하에서 「특별법 배치된 추진 배경의문」이라는 기획 기사를 게재한 사실, 한편 신청인측이 위 12. 9.과 10.의 보도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를 받았고 중간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법규를 묵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해명광고를 같은 달 11.자로 제주지역의 다른 신문인 제민일보와 한라일보에 게재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14.자로 『왜곡석명 의혹증폭』이라는 제하에 엉뚱한 개발사업자가 해명을 하고 있으며, 당국의 용역업자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남광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에 엔지니어링기술진

홍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요구됨에도 그것이 없는 것은 유령용역, 법규위반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그 후에도 신청인은 위 기획시리즈를 연재하여 같은 달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온천개발사업과 그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위 조사용역에 대하여 위 같은 취지의 기사를 연재하고 사실을 게재하여 왔으며, 그 이외에도 같은 달 17.자에는 『세화, 송당온천특혜배제』, 『투기꾼과 관, 경 유착 의혹』이라는 제하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자에는 『『세화, 송당지구 온천개발』 부동산투기성 사업이다』라는 제하에서 그 지역의 개발반대주민 대표의 주장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제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법익에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위 기사 등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할 관청인, 북제주군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받은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그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성과품인 용역보고서를 북제주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용역의 발주, 수락, 납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신청인이 위 용역에 관한 기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기사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위 기사등에서 신청인을 명백히 거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등에서 위 온천지구의 개발사업자를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 온천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라고 단정한 후에, 북제주군이 위 남광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시행한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한낱 통과절차로 치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용역수행절차가 불법이고, 그 성과물인 용역보고서도 부실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특히 이러한 부실, 불법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기사와 사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발사업인 신청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온 이상, 1988. 9.부터 5년여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여온 위 온천개발의 성패에 사운을 걸어온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등으로 인하여 투기

자로 물리고 또한 온천개발에 관한 용역의 배후조종자로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가 추진 중인 온천개발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 법익도 침해 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다만 위 기사등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한 개발「투기」나 「배후」 의혹이라는 표현에는 평가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어 그러한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인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관용상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에 의하 지 아니하고 상당한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일정 규모나 횡수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말하고, 「배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뒤에서 무슨 일을 조종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막연 한 점은 있지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지구에 서 온천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온천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 비를 당국에 기부채납하였고, 게다가 신청인이 다른 지역신문에 위 용역의 절차 등에 관하 여 위와 같이 해명광고를 내었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바, 그 렇다면 위 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용역업자인 위 남광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인 신청인 측에서도 위 용역보고서에 관한 사실보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은 위 기사 등에 대하여 반론권의 행사로 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그가 게재한 위 기사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 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 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 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86. 1. 28. 선고 95다카1973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카 2546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인 한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신문결과는 입증자료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온천개발이 되는 경우에 이 지역의 지가상승을 노린 개발투기의 양상을 띠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거나 온천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지주들이 그 소유토지의 10~30%를 신청인에게 준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아직 보도되지는 아니하였다),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이 개발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반박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기사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반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함을 내세운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3. 12. 9.자 제주신문에 위 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인 「북제주군이 용역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취재원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이고, 당국의 해명에 따라 그 다음날로 「북제주군이 과업지시서가 있다고 밝혔다」고 즉각 수정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다음날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부분을 수정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활자 크기나 같은 날짜의 사설내용에 비추어 그 정정보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런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기사등에서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북제주군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문제삼아 그것이 형사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데 대하여 정정보도내용에 「용역성과품에 용역참가 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용역수행절차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의 실정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으나, 위 남광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만이 있고, 용역참가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기사작성자(또는 사설집필자)의 법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은 전문가나 법해석기관이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당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나 명예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문기재의 시기와 게재위치 및 크기로 정하여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기로 하되,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前註)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後註)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약 200자의 범위 내에서 위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16.

재판장 판사 김 대 회

판사 김 선 우

판사 이 규 진

〈정정보도문〉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

1. 주식회사 제주신문사는 1993. 12. 9.과 같은 해 12. 10. 각 제주신문 1면에서 『의혹... 분출되는 현안』이라는 제목과 『세화송당지구계획』이라는 소제목하에 신청인이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온천개발지역을 지목하여,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을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특정하였고(12. 10.자 제주신문 1면 기사 하단), 위 각 기사 및 같은 해 12. 10.과 12. 11. 각 제주신문 3면의 사설에서 신청인이 개발하여 온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따르면,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이 「특정집단, 특수관계인들의 사의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12. 9.자 1면 기사), 「특정이익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12. 10.자 3면 사설), 「카지노의 대부로 알려진 J씨 등 타지방 사람들이 85.4%나 투기매입한 것으로 나타난」(같은 사설) 등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임을 지적한 후,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이 의뢰하여 (주)남광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투기위한 유령용역』(12. 9.자 1면 기사표제)이라 하면서 「군사독재정권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토지투기 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대규모 인허가 이권을 추구한 이들 정치 경제적 강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공공개발 계획에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공익을 가장하여 꾸며 낸 것은 바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일부 기술용역업체이었기에」(12. 10.자 3면 사설)라는 등으로 마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용역업자의 배후에서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조종하여 꾸며 낸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화송당지구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관한 위 용역이 ① 과업지시서도 없이, 「북제주군은 과업지시서조차 용역업자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2. 9.자 1면 기사), ② 중간보고서도 없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같은 기사), ③ 법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참가 기술진이 밝혀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유령 용역보고서를 기본 바탕으로, ④ 용역내용 조차 부실하며 「범법 부실보고서」(12. 11.자 3면 사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용역보고서가 위법하고 부실한 것으로 단정지은 후, 특히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정집단, 특수관계인등의 사의에 의하여 계획되는」 「통상적이지 않는 <특수한> 이 용역은 누가 어떤 경위로 추진했는가?」(12. 9.자 1면 기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풀리고 있다.」(12. 10.자 1면 기사) 「개발계획의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 「특정이익 집단의 사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12. 10.자 3면 사설)는 등으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있어서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이 관여하여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히 위 용역에 배후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3. 그러나 세화송당지구는 신청인이 1988년 이래 독자적으로 온천을 발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추진하여 온 지역인데, 위 지구의 온천개발은 온천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천굴착허가를 받아 온천발견신고, 온천수질검사,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의 철저한 자원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므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사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개발이며,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토지투기를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의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는 북제주군이 기술용역업체인 (주)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것으로서 신청인이 (주)남광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 제출에 관여할 자격이 없으며, 위 용역보고서는 용역업체의 독자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개발사업자인 신청인은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위 온천의 발견자 및 개발자로서 온천법에 따른 개발에 이해관계가 있

는 당사자였기에, 위 용역의 소요예산만을 복제주군에 기부채납하였을 뿐이고, 위 용역에는 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마치 용역보고서 작성의 배후에 있는 듯이 표현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4. 더우기 위 용역에 관하여는 ① 그 절차상 과업지시서는 복제주군이 용역업체에게 교부한 바 있고, ② 용역계약이나 과업지시서에 중간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바 없으니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용역업체는 중간보고서를 복제주군에 제출한 바 있고, ③ 용역수행자 명부도 제출된 바 있으므로, 용역참가 기술진은 분명히 밝혀졌으며, ④ 특히 용역성과품이 부실하다거나 용역절차상 범법이라는 점은 관계전문가가 판단할 내용으로서, 그것이 확인된 바 없다.

5. 결국 위 온천지구 개발이 투기사업이고, 그 개발의 전제가 되는 위 용역보고서의 제출에 있어서 투기개발을 서두르려는 개발사업자가 그 배후에 있다는 듯이 표현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추진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신문의 의혹, 탈법, 투기, 유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한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당회사가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94카합27호로 받은 정정보도 게재의 판결에 의하여 반론의 제기를 허용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제주신문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바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주온천

□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을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내용도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6. 23.자 결정(94카합33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94년 6월 23일 산부인

과 전문의인 이 씨가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이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내용도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취재보도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침해방지를 위하여 보도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최대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은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그 과열 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청인으로서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한 「신청인과의 면담장소를 밝혀 그 병원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은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신청인 이 씨는 1993년 11월 21일 서울방송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 보고」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임신수술중 몰래 신장을 잘라내어 신장이식 수술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3서울중재234).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의 목적이 의료사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고, 의사가 신장을 절제했다고 판단할 시청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337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세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방송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60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제2 기재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함과 동시에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게 한다.

이 유 : 1.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방송(SBS) 텔레비전의 1993. 11. 21. 22 : 50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보고』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 및 그 가족과 진료담당의사 사이의 불신풍조를 취재 보도하면서, 그 실례의 하나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신청인이 1979. 7. 30. 원주기독병원 근무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신청외 김 의 자궁외 임신 진료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위 보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환자인 김 와 그 가족이 제기하는 의문, 즉「신청인이 당시 난관의 파열부위를 절제하여 출혈상태를 막아주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왼쪽 신장을 임의로 절제, 적출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그 근거로 (1) 환자에 대한 현혈 및 수혈이 진료일지에 기록된 수술종료시각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 1992년의 복부촬영 사진에 대한 방사선과 전문의의 최초의 의견도「신장이 절제되었다」는 것이었으며, (3) 위 수술 직전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여러차례의 촬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복부촬영필름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있기 수일 전 신청인에게 면담요청을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및 촬영기사를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보내어 김 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과 면담을 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촬영기사는 길이 6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카메라를 면담장소 바닥에 고정하여 두고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고지하거나 그의 승락을 받지 않은 채 면담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 면담 장면 일부를 영동세브란스 병원 건물 및 그 정면의 병원표지와 함께 방영하였다.

(라) 당시 신청인을 면담한 신청외 이 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김 의 주장을 알

려주고 신청인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 신장이 후복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궁외임신에 대한 개복수술시에 이를 절제, 적출하는 것은 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며, (2) 산부인과 전문의가 비뇨기과 담당부위인 신장을 절제할 필요도, 할 수도 없고, (3) 수혈은 수술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김 의 주장은 실제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에 첨가하여, (1) 1994. 4. 경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김 에 대한 신장혈관조형술의 시술결과 그녀의 왼쪽 신장이 인위적으로 절제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형성부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담당의사의 전문적 의견, 그리고 (2) 신청인과 함께 김 에 대한 위 시술에 참여한 바 있는 다른 의사의 「당시 원주기독병원의 의료수준이 (절제된) 신장의 이식을 시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 및 (3) 1992년의 복부촬영사진 판독 의사의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장 절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신장이 없다는 취지이지 신장이 인위적으로 절제되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진술 등을 김 의 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론으로 함께 보도하였다.

(마) 신청인이 1979. 7.경 김 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난관의 파열부위를 절제하여 출혈상태를 막아주는 수술이 아니라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좌측 난관말단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신청인은 위 프로그램에서 김 의 주장을 약 8분간에 걸쳐 집중보도하여 이를 부각시킨 반면, 십수년 전의 수술사실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검토등 아무런 사전 준비나 기억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줌이 없이 약 5분간에 걸쳐 의학상의 일반적 견해만을 개진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면담 장면 및 위 시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건물등을 비밀리에 촬영 보도하였고, 또한 위 사안은 장기절취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의료사고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위 보도 당시 김 의 선천적 신장부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의료사고의 한 사례로 보도하고 신장절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해 놓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장기절제 사실을 의심케 하는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면담 시 비록 김 에 대한 시술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가 개진한 의학상의 전문적 견해와 신장혈관조형술 시술결과의 소개 및 수술참여 의사의 의견 등 피신청인이 취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의 왼쪽 신장은 그 주장과 같이 인위적으로 절제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천적인 형성부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에 이해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 신청인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고, 신장절제 여부에 대한 결론은 피신청인이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보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이 유보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시청자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보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면담 장면의 촬영보도는 비록 이에 대한 사전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취재를 위한 면담의 성격과 위 프로그램의 의도, 면담의 내용, 면담 참여 인원 및 촬영기기의 형태와 위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촬영이 비밀촬영으로서 신청인이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 ○의 신장절제 여부에 관한 피신청인의 취재 보도내용 및 면담 장소의 촬영 등은 방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진실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보도를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는 언론의 대중적 영향력에 비추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언론의 취재보도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침해방지를 위하여 보도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최대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1) 신청인이 김 ○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난관을 절제하지 않고 그 파열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난관절제수술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시술 당시 신장은 물론 난관 기타 어떠한 장기도 이를 제거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으로서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정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신청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며, (2) 위 수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건물과 그 표지를 화면에 방영한 것은, 비록 신청인과의 면담장소를 밝히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주제로 하는 위 프로그램의 성격상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이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현재 위 병원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이 의사로서 입게 되는 피해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면담장소의 보도라는 방영 의도를 내세워 그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3.

재판장 판사 이 우 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홍 구

정정보도문 1

서울방송은 1993. 11. 21. 22 : 50 『그것이 알고 싶다－의료사고 실태보고』 프로그램에서, 1979. 7. 30. 자궁외임신에 대한 개복수술 당시 신장 한쪽이 몰래 절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김순자 씨의 경우를 소개하던 중, 당시 수술집도의사 이 씨가 시행한 수술이 난관 절제수술이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난관절제술이 아니라 좌측 난관 말단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집도의사 이 씨가 근무하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건물 및 병원표지를 화면에 방영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담당의사와의 면담장소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정정보도문 2

본 방송은 1993. 11. 21.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1979. 7. 30.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응급 개복수술시 콩팥 1개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당시 23세)의 경우를 「위험천만한 생명분쟁－의료사고 실태보고」의 한 예로 집중조명하면서 김씨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소개함으로써 마치 주치의가 환자 모르게 콩팥을 잘라내어 이식수술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선천적으로 한개의 콩팥밖에 없는 것으로 혈관조영 촬영결과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김씨에 대한 수술은 좌측 난관 말단 부위의 혈종과 임신내용물을 밀어내어 제거한 수술이었고 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본 방송은 진료기록의 분석 등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환자측의 주장에 편중된 보도를 함으로써 잘못이 없는 관련 의사와 병원에 누를 끼쳤으며 응급환자의 장기를 몰래 절제하여 이식하는 예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김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이 씨에게 면담목적을 고지함이 없이 면담하고, 승낙없이 그 면담장면을 녹화·방영하였으며, 수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사진을 방영하였으므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탈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모 양이라고 보도한 것은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어 그 기사는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7.자 결정(94카기350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27일 모델 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가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진모(26)양으로만 표현되었으나, 광고업계 및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탈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 모양’이라고 하면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므로 이 기사는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 진 씨는 1994년 6월 9일 문화일보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술집 등지에서 접대행위를 했다고 보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4서울중재16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민·형사 소송을 취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3509 정정보도

신 청 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달 룡, 강 항 순, 최 창 귀

피신청인 :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

서울 중구 무교동 96

대표이사 이 규 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목요일 발행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화일보 제23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10cm, 세로 3단의 크기로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평 3 견출 고딕체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 신청인 진」이라는 부분은 20급 평1 고딕체로 좌측 하단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11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체로 여백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크기를 가로 12cm, 세로 3단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80급 활자체로 3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5급 활자체로 하여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의 1994. 6. 9.(목요일) 제23면 좌측 상단부분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큰 제목하에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작은 제목과 『「대기업비서실」 사칭 사기수사 중 드러나』라는 작

은 제목을 붙여서 별지 제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9,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7, 19내지 22, 29 내지 41, 소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박은 자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신청외 이이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이지만 동인이 자신을 접대할 때 그 이름을 진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까닭에 신청외 이의 이름을 진으로 알고, 경찰 및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의 이름을 진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신청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신청인을 접대행위를 한 연예인으로 오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된 사실, 피신청인의 취재기자인 신청외 이은 위 박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을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으로 오해하고 신청인을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후 위 박을 접대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위 이임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결과 드러난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진모(26) 양으로만 표현되었으나 광고업계 및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탈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세의 진모 양」이라고 하면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신청인이 중견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문화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문화일보에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4. 9. 16. 문화일보 제23면의 좌측 상단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속보의 형식으로, 큰 제목을 『「윤락」 유명모델-마담 2명 입건』으로 하고, 작은 제목을 『대기업비서사칭 사기사건 문제의 모델 「진양」 실명은 이양』으로 하여 별지 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하였는데, 위 정정 기사는 이 사건 기사와 그 크기 및 게재부위가 같고 신청인이 위 박에 대한 접대 사건과 무관함을 밝힌 내용의 것이어서 신청인으로서 더 이상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을 제1호증(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4. 9. 16.에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속보 형식으로 별지 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 기사내

용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된 진모 양이 위 연예인 접대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명(實名)이 이양으로 드러났다는 것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시 위 1994. 9. 16.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과연 신청인이 위 연예인 접대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의 이름은 예명으로서 실제 성(姓)이 진씨가 아닌 이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1994. 9. 16.자 기사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 여전히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써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이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끝으로,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부위 등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은 가로 10cm, 세로 3단의 크기로 하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50급 평3 견출 고딕체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 신청인 진 」이라는 부분은 20급 평1 고딕체로 좌측 하단에 세로로 2단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11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여백에 세로로 게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7.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이 동 원
 판사 조 윤 신

제1. 정정보도문

1994. 6. 9. 본지 사회면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큰 제목과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작은 제목하에 진희경 양을 지칭하는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의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대기업 사장들을 빙자한 박기진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후 위 기사를 취재한 본사 기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진희경 양은 박기진 씨는 물론 룸살롱 주인이나 갈비집 주인등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기사내용 중 진희경 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신청인 진

제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1994. 6. 9. 본지 사회면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제목과 『거액받고 룸살롱-호텔출입』이라는 소제목하에 진희경을 지칭하는 중견모델 진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의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대기업 사장들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 바, 그후 위 기사를 취재한 본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진 양은 박 씨나 룸살롱주인이나 갈비집 주인 등과 만난 적도 없는 등 위 기사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TV광고 및 패션계에서 중견모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 양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

정정보도 신청인 진

제3. 문화일보 1994. 6. 9.자 제23면의 기사내용

탤런트등 유명 연예인 3명이 고급 룸살롱등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접대부 노릇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형사1부 양경석 검사가 9일 대기업 사장들을 빙자해 룸살롱 여주인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힌 박

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수사과정에서 유명탤런트 김모(23), 최모(23), 진모(26)양 등이 박씨에게 속은 룸살롱 여주인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호텔과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5일 J그룹 회장비서를 사칭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R룸

살롱 주인 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J그룹 회장 비서 ○○○인데 일본에서 손님이 와 접대를 해야한다. 예쁜 아가씨에게 8백만원을 주고 R호텔 커피숍으로 나와 돈을 건네 주고 접대를 하게 하면 곧 회장님이 갚아 줄 것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어 다음날 오후 2시 R호텔 커피숍에서 정씨가 보낸 탤런트 김 모양을 만나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탤런트 김양은 정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박씨와 함께 L백화점과 H호텔, 시내여관 등지로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양과 진양 등도 박씨에게 속은 강남구 역삼동 K룸살롱 주인과 C갈비집 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양은 현재 모방송의 아침 드라마에 출연중인 인기 탤런트이며 진모 양은 중견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4. 문화일보 1994. 9. 16.자 제23면의 기사내용

고급 음식점 여주인의 부탁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유명모델과 음식점 여주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16일 모 재벌기업 전속모델인 이모 양(26)이 재벌을 사칭하면서 룸살롱등 고급술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박 씨(38·구속중·본보 6월 9일자 23면 보도)를 만나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양과 이양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C갈비집 주인 김모 씨(여·38)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7일 모재벌 비서실 직원을 사칭한 박씨로부터 「급히 접대할 손님이 있으니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로 예쁜 아가씨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이양에게 현금 1백만원과 신용카드를 주고 접대를 시킨 혐의다. 또 모델 이양은 이에 따라 다음날 오후 서울 S호텔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P호텔과 S호텔, C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모델 이양은 검찰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박씨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박씨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박씨를 접대해온 것으로 보도된 「중견모델 진모 양(26)」의 실명은 이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양이 접대과정에서 자신의 예명을 모델 진○○양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박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담당검사는 연예인의 경우 예명을 사용하는 관례에 따라 공소장에 이양의 이름은 [진○○ 양]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일방적인 주장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0. 31.자 결정(94카합102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31일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측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KBS-2TV가 1994년 3월 27일 『추적 60분-어떤 믿음의 현장 그후 11년』 프로그램에서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운영하는 삼성교회 성주 이 이 사기꾼이며 유부녀를 희롱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소송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94서울중재70), 피신청인측이 사실보도이고 신청인의 주장도 같이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1029 정정보도

신 청 인 :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

광주 북구 중흥1동 696의 3(2층)

대표자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제2텔레비전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5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1994. 3. 27.자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정정보도하라.

이 유 : 이 사건 심문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31.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흥 구

정정보도문 1

한국방송공사는 1994. 3. 27. 21 : 00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 『추적 60분—어떤 믿음의 현장 그 후 11년』 프로그램에서,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이 운영하는 삼성교회의 성주인 이 이 사기꾼이며 유부녀를 희롱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광주직할시 우산동 제14통장인 최 와의 인터뷰 장면을 보도하였으나, 위 인터뷰 내용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밝히드리는 바입니다.

정정보도문 2

본 방송국 2TV가 1994. 3. 27. 21 : 00 추적 60분으로 방송한 내용 중 천부교 승리제단 광

주삼천년성과 교주 이 씨에 대한 방송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1. 이 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공개보도한 것은 초상권침해 보도이므로 사과와 함께 방송을 정정보도합니다.

2. 교회 커튼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두꺼운 커튼을 쳤다고 한 방송도 과장한 보도이므로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합니다.

3. 「주간경향」 잡지에 사과문의 내용은 적게 비치고 중상모략부분만 크게 비치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방송에 대하여도 천부교 승리제단 광주삼천년성 이 교주를 중상모략했던 자들의 사과문이 주요 기사였음을 밝혀드립니다.

4. 최 와 본 방송국 김 PD의 인터뷰 내용 방송도 최 가 사기를 당한 일도 없는 데 사기를 당했다는 말과 유부녀를 희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최 의 말만 듣고 한쪽 주장만 전달한 보도였으므로 사과와 아울러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정정보도합니다. □

제보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한 후 기사화했을 지라도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1994. 10. 31.자 판결(94카합2152)

事實概要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31일 최 씨가 경기도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신청인 최 씨의 주장을 인용, 피신청인 경기도민일보사에 정정보도 게재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경기도민일보가 1994년 5월 7일자 11면에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안산경찰서가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사실상의 피

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 이 씨의 주장을 인용보도했다. 「이 씨가 신청인을 찾아가 밀린 건물보수비를 요구하다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도 신청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담당형사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며 무조건 용서를 빌라는 등 경찰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최씨와 담당형사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을 제1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제보에 의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기사화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담당재판부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정정보도문을 제11면에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법원소송전 1994년 5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으나(94경기중재2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제보에 의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하여 불성립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2152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김철준, 김동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 경 한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기도민일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3의 13

대표이사 홍 성 훈

변론종결 : 1994. 10. 1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기도민일보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에 가로 7cm, 세로 4단 크기의 사각 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7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위 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9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기도민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별지 기재 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기도민일보의 1994. 5. 7.자 제11면 기사란 우측 상단부분에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이라는 제목과 『2차례 전화 받았다며 합의 강요』라는 소제목 아래 「안산경찰서가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정확히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6. 안산경찰서와 피해자 이 씨(45·)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 오전 11시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동성기업(주) 대표 최 씨(안산시 반월공단)를 찾아가 밀린 건물보수비 1천1백여만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2차례나 걸려 왔었다고 말해주면서 최씨가 진단이 더 많이 나왔으니 무조건 용서를 빌라는 등 친분관계를 들어 피해의 원인규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날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하직원에게 이모 담당형사를 불러오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씨와 이모 담당형사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평소에도 최씨가 청와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해 경찰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당초부터 정확한 피해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경기도민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경기도민일보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는 피신청인이 신청외 이 의 제보에 의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기사화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가 허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을 제2호증의 1(경찰관 징계의결이유 통보), 2(경찰관 징계의결서), 3(징계의결서), 4(징계의결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의 게재경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1면 좌측 상단에 4단 크기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기사내용의 신청인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에 가로 7cm, 세로 4단 크기의 사각 테두리 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7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의 크기로 위 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제11면 광고란 우측 하단으로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31.

재판장 판사 한 중 원
판사 강 기 중
판사 안 창 환

〈별지〉 정정보도문

경기도민일보 1994. 5. 17.자 제11면에 보도된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 『「2차례 전화 받았다」며 합의 강요』 제목하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위 기사에서 피해자로 표시된 이 씨는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피해자 최 씨와

의 계약에 따른 건물보수공사 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비 1천1백여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 이 씨」, 「밀린 건물 보수비 1천1백여만원」, 「사소한 말다툼」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 기사는 또 「이씨와 최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하직원에게 이모 형사를 불러 오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씨는 이모 담당형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평소에도 최씨가 청와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씨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씨에게 말한 바 없고 위 담당형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청와대에 압력을 넣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

그 후 신청인은 『폭행사건에 청와대 압력』등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인천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한 결과 94카합2152호 판결에 의하여 반론의 제기를 허용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아내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남편 일방만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기사로 인해 아내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29.자 결정(94카합179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29일 송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의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하고, 의부증 등으로 칼로 위협당하기

도 하는 등 폭행과 행패를 건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연애 결혼한 최모 씨> ‘결혼 16년째이며, 현재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는’ 등으로 표현하고 최모 씨의 부분적인 모습과 세탁소 화면 및 변조된 음성을 종합하여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취재 당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들은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KBS-2TV가 1994년 6월 2일 8시 뉴스『매 맞는 남편』 제하의 기사에서 「연애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초부터 폭언, 폭행 또는 흉기로 위협당하는 등 행패를 건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생활비 문제와 성격타으로 부부싸움은 자주하였으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4서울중재165).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취지 대로 반론을 게재할 용의가 있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합1797 정정보도

신 청 인 : 송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석 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KBS 제2텔레비전 8시 뉴스비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5초 동안 화면에 자막으로 1회 보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2 텔레비전 8시 뉴스비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보도하여야 한다.

이 유 : 1.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실도 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KBS 제2 텔레비전의 1994. 6. 2. 8시 뉴스비전 프로그램에서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아래 신청외 최모 씨가 부인(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하고, 의부증등으로 칼로 위협당하기도 하는 등 폭행과 행패를 건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신청외 최모 씨 및 그의 담당 변호사의 인터뷰형식으로 보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최모 씨라고만 표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화면에서 최모 씨를 식별할 수 없도록 뒤에서 얼굴 아래 부분만을 촬영하고, 그가 경영하는 세탁소의 상호등은 드러내지 않은 채 세탁소 내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만을 촬영한 후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연애 결혼한 최모 씨」 「결혼 16년째이며, 현재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는」등으로 표현하여 신청인 및 최모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위 보도내용과 최모 씨의 부분적인 모습과 세탁소 화면 및 변조된 음성을 종합하여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취재 당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들은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그 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29.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이 승 련

판사 이 홍 구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6월 2일 KBS 2TV 뉴스비전 시간에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하

에, 연애 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으로부터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폭언, 폭행 또는 흥기로 위협당하는 등 행패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위 내용은 최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으로서, 부인은 생활비 문제와 성격 탓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나, 자신이 남편에게 난폭하게 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과일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6월 2일 KBS 2TV 뉴스비전 시간에 『매맞는 남편』이라는 제목하에 연애 결혼한 최모 씨가 부인이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난폭하게 굴었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 흥기로 위협하였다는 내용 및 과일칼로 최모 씨 목에 들이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이유없는 폭력과 행패에 시달리다 못해 최씨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 아내 송모 씨는 생활비 문제와 성격 탓으로 잦은 부부싸움은 있었으나, 난폭하게 굴었다는 내용과 주먹을 휘두르고, 과일칼로 남편 최모 씨 목에 들이댔다는 내용, 아내의 이유없는 폭력과 행패에 시달리다 최씨는 결국 아버지 집에 피신해서 이혼소송을 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남편 최모 씨가 이혼소송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보도를 부탁한 것 같으며, 또한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보도했더라도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으로서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2. 27.자 결정(94카기4890)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4년 12월 27일 최 씨가 동

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이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동아일보 1994년 8월 5일자 22면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지검 형사 4부 김영중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무고혐의로 구속된 최 씨(38)가 조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검찰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전모 씨(74)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최씨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오히려 전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구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자신을 파렴치한 도주범죄자로 몰았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검사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정정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2),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4890 정정보도

신 청 인 : 최

서울

현재 구치소 수감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복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동아일보 22면의 기사란 중 7단 중앙부분에 가로 5cm, 세로 1단의 크기로, 오른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

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2면에 7단, 12cm 크기로, 오른쪽에는 7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영호 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일호 활자로, 위 소제목 왼쪽에 세로로 7단에 걸쳐 별지 2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의 1994. 8. 5.자 22면 7단 중앙부분에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라는 제목으로,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30대 여자 피의자가 조사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실이 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 4부 김영종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무고혐의로 구속된 최 씨(36·)가 조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며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검찰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전모 씨(74)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최씨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오히려 전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구속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기사실에서 검사들로부터 사건개요를 듣고 위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먼저, 신청인에 대하여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신청인이 도주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제1호증(공소장)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94. 3. 29.경 신청외 전 을 강간치상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7. 7.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김 으로부터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로서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 위 검찰청 제528호 검사실에서 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검찰청 정문을 통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이 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위 전 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을제1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위와 같이 위 전

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위 전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검사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신청인은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가로 12cm,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나,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5cm, 세로 1단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결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 론 문

본지는 1994. 8. 5.자 22면 7단 중앙부분에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조사중 도주』라는 제목 아래 「최씨는 집 주인 전모 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본지 1994. 8. 5.자 22면 『긴급구속 여 피의자 검찰 조사중 도주』라는 제목 아래, 「긴급구속장 발부된 무고죄 피의자 최모() 씨 조사 도중 감시소홀 틈 타

도주했다는...(이하 생략)」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고, 가해자 전모 씨로부터 심한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를 당한 자로서 김 검사의 법정절차 없는 강제납치 연행에 의해 1박 2일간의 불법 체포감금 당하여 조사를 마치고, 혐의점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귀가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편 최씨는 집 주인 전모 씨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히려 전모 씨가 자신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청구한 사실이 있기에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II. 손해배상청구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15.자 판결(91가합38193)
서울고등법원 1994. 1. 11.자 판결(93나621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등이 (주)파스퇴르유업(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5천만원, 원고 권 에게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여 발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등은 우유의 저온살균방법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제품간에 영양성 및 안정성에 대한 품질비교시험을 실시, 공표하라는 여론에 따라 저온살균법에 의한 파스퇴르 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한 3·4우유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 품질검사한 시험결과의 글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파스퇴르유업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먹

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전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자, 원고등은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주)파스퇴르유업은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7천만원, 원고 권 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쌍방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가합38193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한국소비자보호원(韓國消費者保護院)

서울

대표자 원장

2. 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달 수

피 고 : 파스퇴르유업(乳業)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4리 1334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

변론종결 : 1992. 11. 17.

- 주 문 :** 1.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1. 5. 30.부터 1992. 12. 15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에게 금 3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각 제1면 광고란에 별지 기재 활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제1호증의 1 내지 21, 갑제2호증의 5 내지 13, 갑제3호증의 5, 6, 7, 24 내지 34, 36 내지 41, 4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 9, 10,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제17호증의 3, 4, 갑제1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4 내지 12, 을제12호증의 5 내지 9, 12, 14, 15, 17, 18, 19, 3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호)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출연기금을 재원으로 1987. 7. 1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제17조에 의거,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1987. 정부에서 우유의 저온살균방법 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 제품간에 영양가 차이 분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우유의 영양성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공표하라는 여론이 일고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자 198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저온살균방법에 의하여 피고가 제조한 파스퇴르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3.4우유, 두산우유, 롯데우유 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 시험대상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저온살균 및 초고온 살균 제품별로 시장점유율이 크고 서울지역에서 구입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였고, 식품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식품학계 교수 3인, 영양학계 교수 1인, 식품연구기관 1인 총 5인)의 심의를 거쳐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선정한 후 식품공학을 전공한 기술요원인 원고 권 (당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식품연구실 주임연구원이었다)등으로 하여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동단백질분석기 등 18종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게 한 다음 시험결과에 대하여 다시 위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3)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험한 항목은 품질면에서는 정상, 산도, 비중, 무지고형분, 유지방분이고, 안전성면에서는 세균수, 대장균수, 항생물질, 포스파타아제, 유산균수이며, 영양성면에서는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환원가(이상은 일반성분임), 비타민 A, 비타민 B₂, 비타민 C(이상은 비타민류임), 칼슘, 인, 칼슘과 인의 비율(이상은 무기염류임), 단백질 등으로 총 21개 항목인데, 파스퇴르우유의 경우 단백질, 인, 무지고형분은 최고치, 비타민 B₂, 칼슘, 단백질은 2~3번째로 나타나 초고온살균 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고, 비타민 A는 5번째, 비타민 C, 카제인은 최저치를 나타내고, 세균수는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1ml당 3,800마리가 나오고, 유산균도 초고온살균 제품에서는 한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1ml당 550마리가 나왔으며 단백질환원가는 최저치를 나타냈다.

(4)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시험항목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러한 항목별 수치를 종합하여 시험대상 우유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종합적 평가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가). 유산균수에 대하여는 유산균 음료에서의 법정기준치가 1ml당 1천만마리 이상이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파스퇴르우유의 유산균은 만족한 수치로 볼 수 없고, (나). 단백질환원가에 대하여는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의 열처리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이는 고소한 맛과 관계가 있고 영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유의 단백질이나 칼슘 등 영양가치의 분석은 무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여서는 안되고 유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함에도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단백질 및 칼슘을 무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파스퇴르우유 속의 단백질이나 칼슘이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화학분석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시험한 결과이고,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이 열에 의하여 변성된 것으로 이는 단백질의 파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파스퇴르우유가 단백질환원가가 낮은 것은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단백질의 맛에 관련될 뿐이라고 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무지의 소치이며, 파스퇴르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다른 우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온 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유산균도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1ml당 2억 내지 10억마리 이상이 필요하나, 우유의 유산균은 천연 유산균이므로 힘이 강하며 1ml당 550마리만 들어있어도 우유의 부패를 억제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

는 것임에도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의 수가 너무 적어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한 것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다.

(가) 1989. 8. 22. 세계일보, 같은 달 23. 서울신문, 같은 달, 25. 동아일보

『세계적인 공인단체 I.D.F(국제유업연맹)에서는 금년도 결정판으로 「우유의 열에 의한 영향」에 관한 논문집이 나왔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에서 8월 18일 T.V. 저녁 9시 뉴스와 19일 중요 일간지에 발표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없다’는 해괴망측한 폭탄발표에 답변드립니다.(광고상의 활자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같이 표시한다.) U.N. 식량기구에서조차도 그 권위와 발표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를 응용하는 세계적인 공인단체 I.D.F(광고상의 활자가 고딕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같이 표시한다.)에서는 1989년 판으로 우유가 열에 의하여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70℃ 이상에서 일단 변화된 우유는 다시 온도가 내려진다 해도 가역반응(우유의 질이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변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우유에 관한 열의 영향에 대해 결정판을 냈습니다. 다음 신문광고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과 조그마한 소비자보호원 검사부와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학술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우유의 분석결과 즉 열에 의한 손실량이 15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초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I.D.F(국제유업연맹) <우유의 열에 의한 영향>에 관한 결정적인 논문집 I.D.F 238호 제3집 알부민단백질 제4장 카제인칼슘을 그대로 인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나) 1989. 8. 28. 동아일보, 같은 달 29. 세계일보, 같은 달 30. 조선일보, 같은 해 9. 7. 한국일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소비자보호원 분석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라는 제목 아래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 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그 대가를 어디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소비자보호원의 기존 우유와 파스퇴르우유의 분석결과를 보면 비타민 C가 고온 우유에는 1.6mg인데 비하여 저온우유에는 그것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0.3mg입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비타민 C가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비타민 C의 섭취를 위하여 주로 먹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류도 신선한 그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폭폭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5배 이상 늘어난

다는 것과 같은 당신의 결론입니다. 소비자보호원 권 씨!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학교 학생조차도 믿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아닙니까? 소비자보호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여도 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 국민이 있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모름지기 과학자는 신중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다음 광고에 당신의 말도 되지 않는 분석결과를 계속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고온살균 우유가 짧은 시간에 멸균되기 때문에 영양의 손실이 적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63℃ 30분과 동일한 우유의 화학적 변화를 135℃에 있어서는 0.01초입니다. 0.01초내에 4℃의 우유를 135℃로 올렸다가 다시 4℃로 내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다) 1989. 8. 30. 조선일보, 같은 해 9. 1. 한국일보, 같은 달 5. 동아일보, 같은 달 8. 국민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는 대학교 1학년 실습 학생입니까? 책임감 없는 자연과학자인가?』라는 제목 아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실습용으로 한 것입니까?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분석에 대한 취미를 돋우기 위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량을 분석하여 그 질소량의 수치를 기초로 단백질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학 초년생이 연습삼아 하는 것이요, 어디까지나 부정확하고 단백질 분석으로서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분석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등)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이런 물질이 얼마만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추정치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은 단백질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유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의 다과에 따라서 추정 숫자의 정확성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무기분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마치 인간사회에서 다 같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회 그 민족에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 내지 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백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를 나누어서 종류별로 함유량을 검사하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유기분석이 아니고서는 절대 무기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 씨!! 세균의 죽은 찌꺼기도 무기분석하면 단백질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세균의 죽은 찌꺼기도 무기분석에는 단백질로 나옵니다. 당신의 분석대로라면 세균의 죽은 찌꺼기가 많은 우유가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지니 결과적으로 세균의 죽은 찌꺼기가 많은 우유가 단백질이 많은 좋은 우유라는 결론이 됩니다. 권

태 씨!!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의 물음에 무기분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정확하고 아무런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건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야 되겠습니까? 권 씨!! 당신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어디서 받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라) 1989. 9. 1. 한국일보, 같은 달 5. 동아일보, 같은 달 8. 국민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단백질환원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기분석으로 영양가치를 판단하였더니 그 무지도 도(度)를 넘어섰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서야 어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할 짓이라 할겠습니까? 권 씨!! 단백질은 무슨 원소가 단백질이 됩니까? 탄소와 질소, 산소 그리고 수소 원자가 단백질이 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당신이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파스퇴르우유는 2.3이 환원되었고 고온살균우유는 11.7이 환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수치도 당신의 형편에 맞도록 만든 숫자이나 그것마저도 고온멸균우유가 저온살균우유에 비해서 5배나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은 기자에게 설명하기를 단백질환원가는 우유의 고소한 맛과 관계될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권 씨!! 단백질이 타서 그 고소한 맛을 내는 물질 그것이 즉, 변이원성 물질입니다. 이 변이원성 물질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발암 물질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본은 우유성분의 변화입니다. 단백질 환원도가 단백질의 파괴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인체에 필요한 알부민 단백질이 기존 우유가 파스퇴르우유에 비하여 15배나 파괴된다는 사실을 무기분석밖에 모르는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권 씨!! 당신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전에 해를 준다면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마) 1989. 9. 6. 동아일보, 같은 달 11. 경향신문, 같은 달 12.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기사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에게 한마디 물어봅니다』라는 제목 아래 「소비자보호원 김 실험실 부장!! 당신은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도리에 맞는 말씀을 하십시오. 본인은 8월 22일 귀 원에 찾아가 김 부장과 권 씨를 만나 첫째로 고온처리 우유공장도 여러군데이며, 저온처리 공장도 세군데나 되는데 고온

처리 우유는 고온우유라고만 표기하고 저온처리 우유는 유독 파스퇴르우유라고 상호까지 명기한 이유가 무엇이나? 이는 파스퇴르의 신용을 실추시키기 위한 계획된 장난이 아니냐?고 물었고, 둘째로 고온우유에 비타민 C가 많다는 발표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설마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발표를 했을까 혹은 기자들의 착각에 의한 것은 아닌가 싶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일이 이런 국면까지 되었는데 무슨 협상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 김 부장!! 기억을 똑똑히 더듬으십시오. 당신은 원유와 그 처리과정에서 단계적 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제품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라는 말을 쓰는 것은 허위라고 하였는데,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우유에 비타민 C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C가 많다는 말입니까? 또 국민학교 학생조차 믿지 않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C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했을 때 비타민 C가 많다는 것은 또 무슨 얘깁니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국민앞에 사과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광고

(바) 1989. 9. 11. 경향신문, 같은 달 13. 조선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왜 우유속에 있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하는가를 아십니까? 또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인공배양 유산균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천연유산균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 아래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하시는 권 씨!!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유속에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고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 많이 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권 씨!! 당신은 기자에게 말하기를(신문기사에 의하면) 타 우유에는 유산균이 없고 파스퇴르우유에는 1cc 500마리의 유산균이 있으나, 최소한도 1천만 이상이 있어야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500마리는 있으나마한 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권 씨!!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인공배양 유산균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천연 유산균은 그 유산균이 가지는 힘도 다르며 효력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유산균으로 평가하시는 권 씨!! 당신은 이에 필요한 유산균의 수를 1천만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법이 요구르트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최소요건으로 세계 학계에서는 1cc 1천만 마리보다 백배나 많은 2억 내지 10억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존재목적은 요구르트와는 달리 세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유속에 유산균이 있게 되면 몸에 해로운 균과 생존경쟁을 함으로써 몸에 해로운 균의 성장·번식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사멸까지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멸

균시켜 세균이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다는 기존우유가 살균시켜서 균이 다소 남아있는 우유보다 보존기간이 짧은 이유도 바로 유산균의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만약 터어키에 가서서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은 우유를 보고 왜 우유를 냉장고에다 넣지 않느냐고 물어 본다면 그곳 터어키 사람은 오히려 우유를 왜 냉장고에 넣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터어키 우유는 배달된 직후에는 우유로 마시고 시간이 경과된 우유는 상온에 그대로 놓아두어 그속에서 있던 유산균을 자연번식시켜서 천연 요구르트를 만들어 마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구르트 속에 2억 내지 10억이나 되는 많은 유산균이 필요한 것은 유산균이 식도와 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던 산으로 인해 많은 수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경우에는 우유와 같이 마시기 때문에 우유의 완충작용으로 중화되며 더군다나 힘이 강한 천연 유산균이기 때문에 500마리라는 적은 수의 유산균을 가지고도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르트와 우유에 있어서 같은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착각한 권 씨!! 우유의 영양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려면 우유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라면 모름지기 깊은 연구와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당신의 짧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사) 1989. 9. 13. 조선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칼슘의 열변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세계 학자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유 속에 칼슘이 존재할 때 칼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 씨!! 당신은 경제기획원 산하단체로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십시오.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칼슘이 파스퇴르우유에는 114mg, 고온살균우유에는 116mg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양가치적 측면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 1년생이 연습 삼아서 우유 속에 칼슘이라는 원소만을 추출하여 본 것입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반드시 타 원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되는 원소의 성격에 따라서 칼슘 자체의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아직껏 세계 우유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우유가 73℃에서 소화가 잘 되는 칼슘카제인네트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인산칼슘으로 변한다는 사실만을 발견하였을 뿐 그 변화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작업을 당신이 해냈다는 말입니까?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73℃미만인 63℃에서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칼슘카제인네트가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반해, 기타 기존우유는 135℃까지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인산칼슘으로 변성이 된 것입니다. 인산칼슘은 조개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부담만 줄 뿐 칼슘으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권 씨!! 우유를 왜 마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양질의 칼슘은 저온처리 우유와 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권 씨!! 당신의 장난 같은 무기분석 데이터는 우유의 성분만을 얘기했을 뿐 우유의 영양가치와 우유의 생명인 칼슘과 단백질의 영양적 평가면에서는 아주 무관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자칫 이를 믿고서 좋은 우유와 나쁜 우유의 선별을 그르친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아) 1989. 9. 15. 동아일보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질문계획을 바꾸면서』라는 제목 아래 「소비자보호원은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크린랩에 대하여 일탄을 쏘고 한 달만에 파스퇴르에 대해서 다시 또 2탄을 쏘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도 신묘하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처와 다투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차례로 얻어 맞았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힘을 빌어 악용한다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저는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그 엉터리 데이터를 열 번에 나누어 낱알이 국민 앞에 폭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스퇴르를 아껴주는 수많은 친지, 그리고 진정한 우리 소비자가족(소비자를 가장한 충고를 제외)들로부터 이제 국민들이 파스퇴르우유가 제일 좋다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으나, 또 이 정도만 되어도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실의 데이터가 엉망이라는 것은 다 알게 되지 않았느냐?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등 많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격려전화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은 근본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힘을 내어 분투하라는 전화였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 분석실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 좀 맥이 빠지는 감이 듭니다....아무쪼록 앞으로는 진리를 찾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6) 그런데 피고는 위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피고의 임원들을 통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 시험검사 결과발표에 관해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기분석에 의한 데이터나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와 다른 분석결과물을 제시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석결과를 반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7) 그러나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은 62℃~65℃에서 30분 정도 가열하여 저온장시간살균법(LTLT : Low Temperature Long Time pasteurization), 72℃에서 15초간 가열하는 고온살균법(HTST : High Temperature Short Time pasteurization), 135℃~150℃에서 2~3초간 가열하는 초고온살균법(UHT : Ultra High Temperature process) 등이 있는 바, 저온장시간살균처리법과 초고온살균처리법 사이에는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온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순간처리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초고온살균법에 의하여 비타민 C, 엽산(葉酸, folic acid) 및 비타민 B₁₂가 약간 열손실을 입고, 비타민 B₁의 20%와 유청단백질(whey protein) 특히 베타락토글로부린(β -lactoglobulin)의 70%가 열변성을 받는다], 그 영양분의 차이라는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것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비타민 C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많이 파괴된다는 것이 정설이나 비타민 C는 열 이외에도 태양광선이나 용존산소의 양, 원유에서의 함량차이 및 열처리 시설등에 함유된 금속이온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고,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거된 각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잘못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거된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을 측정한 결과 여타 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우유에 비타민 C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한 것일 뿐,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나) 식품의 성분분석방법은 대상성분에 따라 일반 성분분석과 미량 성분분석으로, 측정하는 수단에 따라 적정법, 비색법, 중량법, 기기분석법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유기분석, 무기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고 우유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 하여 그 분석이 연습삼아 재미삼아 한 것이라거나 그 분석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유청단백질의 변성이나 칼슘의 용존상태의 변화를 영양가의 파괴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보다 힘이 강하여 적은 수로도 장에 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거나 우유의 부패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주장이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하여 처리한 우유의 경우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변성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고온살균처리우유의 경우에는 살균율(99.999~100%)이 저온장시간살균법(97~99.9%)보다 높아 위생적 측면에서 안전하고, 보존기간이 길어지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점도 있어 영양가면에서는 저온장시간살

균법에 의한 우유가 나음이 사실이나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원고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먹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원고 권 가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가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 하여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일, 설립목적, 업무내용, 업무실적, 원고 권 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각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들의 신문발행부수, 위 각 광고의 내용과 크기, 그 게재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광고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광고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광고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 제19조가 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는 가해자에 대한 사죄광고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가 구하는 위 광고의 내용이 문언상은 사죄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명의로 위 내용의 광고게재를 명하는 것 역시, 피고가 양심상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

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손해배상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 5.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 1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15.

재판장 판사 황 인 행
 판사 김 용 빈
 판사 김 익 현

〈별지〉 게재문 내용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1989. 8. 23.부터 동년 9. 15.까지 주요 일간지 7개 신문에 한국 소비자보호원 및 동 직원 권 ○○를 상대로 동 소비자보호원에서 공표한 시중 우유제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를 비난한 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나 동 광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당사 사장 최 ○○는 명예훼손,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동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당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사실에 대한 경우를 광고로 게재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요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그 간의 사실경위를 알려드립니다.

1992. .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형사판결요지】

1.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사장)
2.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이하 생략)
3. 범죄사실 : 피고인(최)은 ... (1)항에서 (7)항 생략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19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 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 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9. 8. 29.자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 3면 하단에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또 다시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등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2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이를 전국에 배부케 하여...소비자보호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1991. 2. 26.

춘천지방법원 판사 지 대 운

【민사판결요지】

원 고 :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권

피 고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 최)

주 문 : 1.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30,000,000원 및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신문 전국판에 별지기재의 사실경위 광고를 별지 기재 조건으로 게재하라.

판결이유 : 피고회사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는 엉터리 분석을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단체로, 소속 직원인 원고 권 는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서 엉터리 분석을 하는 자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직원인 동 권 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치명적으로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 동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2審 判 決 文

사 건 : 93나6210 손해배상(기)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한국소비자보호원(韓國消費者保護院)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8층

대표자 원장

2. 권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달 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파스퇴르유업(乳業)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4리 1334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

변론종결 : 1993. 12. 14.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15. 선고, 91가합38193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에게 금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5. 30.부터 1994. 1. 11.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

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각 제1면 광고란에 별지 기재 활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다만, 광고명의인은 피고와 동일적)를 게재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 변경).

피고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인용증거에 「갑제20호증」을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판결’을 ‘관련’으로 원심판결 제20쪽 제2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일, 설립목적, 업무내용, 업무실적, 원고 권 ○○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각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들의 발행부수, 위 각 광고의 내용과 크기, 횟수, 그 게재경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에는 저온장기간살균법과 초고온살균법 등이 있는 바, 피고가 채택하고 있는 저온장기간살균법은 외국에서도 초고온살균법에 못지 않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피고가 그동안 저온장기간살균 제품인 파스퇴르우유를 개발하여 우유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위 각 광고의 게재 행위도 피고 제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위 각 광고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점등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광고 청구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광고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광고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고의 게재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과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4. 1. 선고 89헌마160) 취지를 참작할 때, 피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5. 30.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1.

□

재판장 판사 박 영 무
 판사 이 종 오
 판사 유 원 석

국가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원고의 실명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1993. 2. 25.자 판결(92나32878)

대법원 1993. 11. 26.자 판결(93다18389)

事實概要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993년 11월 26일 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언론에 이름을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 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발표당시 소유권 이전등기 지체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등 태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2월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인 강원 거진읍 거진리 일대 임야에 대해 태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매매해 놓고 이를 증여로 위장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뒤 원고인 태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審 判 決 文

사 건 : 92나3287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 윤 기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 정 우

2. 김

서울

3. 박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철, 최 석 봉

변론종결 : 1993. 2. 4.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 43911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6. 22.부터 1993. 2.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김 및 피고 박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김종창 및 피고 박남균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확장),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각 제1면에 2일간 계속하여 총 12cm, 횡 8cm 크기의 지면에 제5호 활자로서 별지와 같은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 1. 피고 김 피고 박 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가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행한 위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

배상등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공무원으로 직무상 행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의 당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서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참조), 결국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 당심 증인 황, 강 의 각 증언, 원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회사원인 원고(당시 36세)는 1989. 4. 9. 소외 황 의 중개로 소외 이 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산 21 307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같은 리 145 대 172평, 같은 리 146 전 62평 등 3필지의 부동산을 합계 금 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2필지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위 이 의 처 전 의 의붓아버지인 소외 망 박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는 상속등기절차를 밟은 뒤 1989.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89. 5. 11.까지 잔금을 완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2필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절차 역시 지연되자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는 그 이전등기절차를 위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였고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황에게 위임하여 두고 있던 중, 1989. 5. 4.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근 토지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위 이 는 상속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워서 1989. 11.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따라 자기 앞으로 1975.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미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실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는 등 매매일자에 관한 객관적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쉽게 되지 아니하자, 그와 같은 제한을 피하는 방편으로 위 황 의 제의에 따라 1990. 2. 9.경 1990.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1990. 3. 초순경 피고 국가 소속 중부지방국세청은 강원도 일대의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서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그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증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였으면서도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사례 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러한 위장증여자 40여명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였다.

(마) 원고 역시 위 위장증여자로서 확인조사대상이 되었고, 이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인 소외 김 등은 1990. 3. 2.경 중재인 황 를 소환, 조사하였고, 역시 같은 조사관인 피고 빅 은 1990. 3. 29. 원고를 소환, 조사하였던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야등 3필지를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진술하였고, 위 황 도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9. 2. 14.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부근 토지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전의 날짜인 1989. 4. 9. 위 이로부터 다른 2필지의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총대금 26,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중에 위 이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박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동인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출타중이어서 소환할 수 없게되자 동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이의 처는 소외 전이어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보면 먼저 위 박으로부터 위 이 앞으로의 등기는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고시된 후인 1989. 11. 4.자로, 다시 위 이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등기는 1990. 2. 9.자로 각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와 이간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등이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제1항, 제21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인 피고 김은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바)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1990. 4. 10.경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투기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장증여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명단공개에 관하여는 국세청 내부의 규정도 없다)「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82명의 명단 중에 원고를 포함시켜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을 접수한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 2. 7. 강원 거진읍 거진소재 위 황경영의 금강부동산에서 위 이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금 21,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같은 해 10. 30.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1. 4. 4.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이유

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국가 소속 중부국세청 공무원인 피고 김 박 의 위와 같은 원고등에 대한 조사, 고발 및 피고 국가 소속 국세청장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 자료제공으로 인하여 나타난 위 일간신문사의 기사내용 중에는 원고가 위장증여의 방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한 원고에게는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한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바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 피고 박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국가는 산하 공무원인 피고 김 박 및 국세청장이 직무집행상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및 그 조사관인 피고 박 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의 언론기관에 공개된 투기자명단 자체는 피고 박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이 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명단의 공개는 전적으로 국세청장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이나 그 조사관인 피고 박 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청장이 소속된 피고 국가만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언론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면책주장

(가) 먼저 피고 국가는, 산하 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국세청장이 언론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로서 그 목적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없으며,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세청장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국가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국가 소속 국세청장의 보도자료 제공에 의하여 게재된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도자료 및 기사의 내용이 공

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은 아니지만 위 국세청장이 이를 진실로 인정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흠결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광범위성과 그 전파속도의 신속성 및 일단 언론매체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후에는 그 실질적 회복이 지극히 곤란한 점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하여야 할 조사를 다한 후 합리적 의심이 불식될 정도의 단계에서 얻어진 믿음이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자료가 언론기관의 취재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이 이에 접근하더라도 언론의 전문성에 의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나름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의 보도자료와 같이 국세청장이라는 고위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그 대상 인원도 82명이나 되어 이를 입수한 언론기관이 일일이 그 진실성 여부를 더 이상 검증한 후 보도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기 위하여는 더욱 그 조사를 심도 있게 하여 그러한 믿음을 형성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국세청장이 언론에 대하여 원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공공성 및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건설부 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계약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참조), 국토가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국토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 시키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같은 법 제1조의 2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의 공표의 목적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그 범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는 측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모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공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 국가는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그 내용은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는 점을 적시한 것일 뿐이므로 결국 그 내용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피고들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국가에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제로는 1989. 4. 9. 이를 위 이상구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1990. 2. 7.자로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990. 2. 9.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은 1989. 5. 4.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국가의 주장과 같이 위 보도자료등이 전적으로 진실에 합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후인 1989. 11.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위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기하여 1990. 2. 9.에 같은 달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위 이 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소외 박 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는 동인의 처가 소외 전 으로 등재되어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만일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 지정일인 1989. 5. 4. 이전에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관할 속초군청에 가서 소지한 매매계약서에 확인을 받아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89. 4. 9.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선뜻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9. 5. 4. 이후에 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것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 2필지가 거래 대상에 포함된 1989. 4. 9.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2필지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일자인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이 사건 임야만 상속등의 문제로 등기 절차가 지연된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중개인인 소외 황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2필지의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절차가 경료되었는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임야만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매매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무엇보다도 매매계약의 다른 일방인 매도인인 소외 이가 출타중이라면 그가 돌아온 후 다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의 가족들로부터라도 가족관계나 매매일자 등을 조사하였더라면 소외 이의 처인 소외 전과 소외 망이가 의붓부녀관계인 점과 실제 매매일자 등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상적으로 하여야 할 조사를 다함이 없이 피고 박등이 위와 같은 의구심에 근거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등에 기하여 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언론기관에 제공할 보도자료등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관하여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위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위의 신문 등에 기사화하여 명단이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과실 있는 행위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국가 소속의 국세청장의 보도자료 제공에 의하여 게재된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가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고발에 관한 면책주장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고발은 수사의 단

서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아무런 여과과정이 없는 앞에서 본 언론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에 있어서와는 달리, 공무원에 의한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을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게 되고, 또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여 기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유죄여부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종의 여과과정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고발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고, 사후에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만일 사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고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는 단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 국가는 위장증여자 명단공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산하 공무원들의 위 고발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김 박 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는 피고 국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가는 금전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입은 피해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연령과 직업 및 위와 같이 피고 국가가 원고를 위장증여자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 오신하여 불법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도 이 사건 임야를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거래내용과 달리 등기한 잘못도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13,7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죄광고청구

원고는 피고 국가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 국가는 민법 제 764조 소정의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국가가 제공한 위 보도자료를 게재하였던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회복을 위한 민법 제 764조 소정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 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위의 「적당한 처분」에는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가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가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6.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3.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국가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부분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박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 국가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김 박 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 제 95조, 제 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25.

재판장 판사 이 보 현

판사 강 용 현

판사 김 상 호

〈별지〉

1990. 4. 11.자 동아일보(또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지상에 귀하를 증여위장 땅투기사건의 용의자로 오판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장된 허위사실을 선전케 하여 귀하의 명예를 실추케한 데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오늘까지도 귀하와 친지, 동창, 우인, 회사동료, 거래선의 고객 등에 다대한 괴로움을 주고도 아무런 위로를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죄합니다.

년 월 일

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

위 동청 조사관 박

태 귀하 끝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다1838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 윤 기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92나3287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實名)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것인 바, 한편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82명의 명단을 담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판시 각 언론사에 공표함에 의하여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할 죄를 구성할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1989. 5. 4.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1990. 2. 9. 소외 이 로부터 같은 달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의 토지를 1989. 4. 9. 매수하고서도 임야에 관하여는 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던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따름이므로 위 공표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된 후, 위장증여사실의 여부를 조사한 판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야와 함께 매수한 다른 토지는 잔금을 지급한 1989. 5. 11. 이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위장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매매의 중개인인 소외 황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매도인인 이 나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제의 매매일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다른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가 출타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상구와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일자가 모두 위 1989. 5. 4.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에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망 박 의 사위라고 기재된 이 의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사유가 남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어서,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실명공표가 오로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6.

□

재판장 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김 상 원
주 심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만 호

제목만으로는 오인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면 단지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6.자 판결(92가합48463)

서울고등법원 1994. 1. 21.자 판결(93나2223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21일 지난 1992년 5월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소취하로 풀려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2년 6월 2일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제목하에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고가 석방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지 5월호에 게재되었던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 제하의 기사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기사를 기초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신문사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문제의 신문기사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며 소송을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48463 손해배상(기)

원 고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덕 우, 천 정 배, 임 종 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해 철

피 고 : 1. 주식회사 연합통신(聯合通信)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현 소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오 용 석, 이 재 식, 김 성 진, 강 종 구, 오 양 호,

최 우 석, 김 종 길, 김 인 만, 이 정 한, 이 후 동, 정 의 종, 한 이 봉

2.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경 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용 근

변론종결 : 1993. 3. 23.

-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1993. 3.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각 신문기사), 을 제1호증(통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피고 연합통신이라 한다.)은 1992. 5. 7.『월간「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구속』 제하로 원고는 「지난 88년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한 후 최 회장에게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었다」라는 기사를 부산일보등 각 일간 신문사에 송고하여 위 각 일간 신문사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 위

내용을 보도하게 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문제된 이는 원고가 아닌 LA 데일리 타임즈 발행인인 소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뉴스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각 일간 신문사에 송고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 내용과 크기 및 그후 정정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의 발행인으로 1992. 4.경 위 잡지에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 바, 위 글의 내용은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를 기초로 하여 원고측이 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위 잡지에 게재한 것임에도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서울신문사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 또, 자신이 발행하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서울신문사의 면책주장

이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위 1992. 6. 2.자 서울신문 중 문제의 기사내용을 보면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원고가 소외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전말을 아무런 논평없이 사실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제목이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고 된 것은 「민자대표 기사 날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기사의 요지에서 기사내용을 압축하여 제목화하다 보니 괄호부분이 지면관계상 내지 편집기술상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위 기사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써 같은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당원의 판단

갑 제2호증(신문기사), 갑 제4호증의 2(공소장), 5(고소취하서), 7(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국 LA 매일신문 발행인으로 있는 소외 연 으로부터 송부받은 1992. 2. 20.자 LA 매일신문 기사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토대로 1992. 4. 하순 경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소외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숨겨놓은 사생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편집한 후 이를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1992. 5월호에 게재, 같은 책자 25,000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2. 5. 7. 구속되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 같은 법원은 1992. 6. 1. 위 김영삼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원고를 석방한 사실, 피고 서울신문사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형사지법 ×××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51)에 대해 김 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위 1992. 6. 2.자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소외 김영삼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위 「인사이드 월드」를 시중에 배포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위 신문기사 중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에 있어서의 「날조」의 사전적 의미는 「무실(無實)한 일을 사실처럼 꾸밈」이라는 것이므로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의 의미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기사화 한 혐의」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보다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공판진행 중 위 김영삼의 고소취소로 말미암아 법원이 원고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위 기사내용 중 제목인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는 이 기사내용을 압축한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신문사가 게재한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같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92. 5. 8.부터 위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 3.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6.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허 용 석
 판사 강 선 명

2審 判 決 文

사 건 : 93나222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덕 우, 노 무 현, 천 정 배, 전 해 철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한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경 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용 근

변론종결 : 1993. 12. 17.

제1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6. 선고, 92가합48463 판결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6.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의 발행인으로서 1992. 4.경 위 잡지에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 내용은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를 기초로 하여 원고측이 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 잡지에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신문기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원고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수사기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위 사건에 관한 공판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미국 LA 매일신문 발행인으로 있는 소외

으로부터 송부받은 1992. 2. 20.과 21.자 LA 매일신문의 기사내용(갑 제3호증의 9, 10)을 토대로 하여 1992. 4. 하순 경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소외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숨겨놓은 사생아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1992년 5월호에 게재하고, 같은 책자 25,000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김영삼이 1992. 5. 1.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서울지방법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1992. 5.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같은 법원이 1992. 6. 1. 위 김영삼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원고가 석방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2. 6. 2. 발행의 서울신문에 1단 기사로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제하에 『피해자측 소취하』라는 부제를 달고 「서울형사지법 주경진 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51)에 대해 김 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활자로 작성된 대중매체인 신문이 그 기사에 의하여 보도하는 내용은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적 평균인인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피고가 발행한 1992. 6. 2.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기사날조』라고만 제목에 표시함으로써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기사의 본문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실은 잡지를 시중에 배포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공판진행중 위 김영삼의 고소취소에 의하여 법원이 원고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의 제목인 『민자대표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는 위 기사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비록 피고가 발행한 위 신문의 기사의 제목에 「혐의」라는 말을 생략하였으며, 본문에도 「허위사실 게재의 혐의」라거나 「명예훼손의 혐의」라고 무색투명하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날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날조」(捏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실(無實)한 일을 사실처럼 꾸밈」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라는 것이므로 위 기사의 본문 중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의 의미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기사화한 혐의」라고 해석되는 바, 이러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그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일응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격의 존엄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다른 권리나 제도, 즉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공개 원칙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21.

□

재판장 판사 김 선 석

판사 김 대 휘

판사 임 호 영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정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자 판결(92가합23099)

서울고등법원 1994. 5. 17.자 판결(93나3263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17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가정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칼로 찌른 뒤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권모 군과 그 가족들이 피의사실 등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정도 없고 진실

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자백은 믿을 수 없는 허위 자백이기는 하지만 피고들이 위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행·협박·기망·신체의 불법구금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거나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권관과 가족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인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을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자 피고측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합23099 손해배상(기)

원 고 : 1. 권

2. 권

3. 이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권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주 수 창, 김 동 우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두 희

소송수행자 옥 영 정, 천 진 우, 최 록 규, 정 주 건, 이 무 상

2. 김

서울

3. 정

서울

4. 진

서울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피고 2, 3,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대 성

변론종결 : 1993. 6. 11.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권 이 에
게는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5. 9.부터 1993. 7. 2.까지
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93, 94, 98의 각 기재, 증인 고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서울 마포구 ○ 원고들의 집 방안에서 전선에 목이 감긴 채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된 소외 ○ 경(○)의 친오빠이고, 원고 영, 숙은 위 권 ○ 경의 부모이다.

나. 피고 김 ○는 그 당시 망 ○ 경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던 마포 경찰서의 서장이고, 피고 정 ○은 위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책임자였던 위 경찰서 형사과장이며, 피고 진 ○은 위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 주임으로서, 위 피고들은 그 부하직원들인 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범죄의 수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이다.

다. 피고 김 ○, 정 ○, 진 ○은 1991. 9. 3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변사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다음, 원고 권 ○이 위 ○ 경을 살해한 후 방화한 것으로 단정하고, 같은 해 10. 6.경 「원고 권 ○은 1991. 9. 30. 오후 학교(염리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락실에 들어서 놀다가 같은 날 16 : 40경 위 원고의 집으로 들어가자, 집을 보고 있던 위 ○ 경이 ‘오빠, 아까 왜 안 들어왔어’라고 말하면서 위 원고를 밀었고, 위 원고는 성이 나서 위 ○ 경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다가, 위 ○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자, 위 원고는 위 ○ 경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달려들었으며, 위

○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도망다니는 위 ○ 경의 복부를 찔러서 살해하였고, 같은 날 17 : 10경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곳에 있던 전기줄로 위 ○ 경의 목을 감고 그 위에 방안에 있던 이불로 덮은 다음, 가방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 방화하여 이불등을 소훼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이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가 소훼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아무런 소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가재도구 및 주택 1채 등을 소훼시키고, 위 ○ 경의 사체를 소훼시키는 등 방화를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형사과장이던 피고 정 ○은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문일답을 통하여 「범인인 원고 권 ○의 부모가 생업에 쫓들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매우 부실하였고, 원고 권 ○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였다. 위 원고는 폭력물 비디오를 보거나 파괴적인 전자오락게임을 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있었으며, 전자오락게임에서 만점을 얻어 동네 오

락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금으로 폭력비디오를 빌려보는 일까지 있는 등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는 단골로 통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도 위 원고가 폭력비디오에 심취한 결과 저지르게 된 모방범죄의 일종이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가정환경등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원고 권 이 위 경을 살해한 다음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아울러 위 원고의 가정환경에 대한 정황기사등이 함께 게재되었다.

2.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권 의 위 사건 당일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14 : 00경 동급생인 소외 노 , 정 과 함께 학교 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위 원고는 위 노 과 함께 위 노 근의 집을 들렀다가 위 원고의 집으로 갔다. 위 노 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숙에게 전화한 다음, 집안에 있던 돈 1,600원 중 위 경이 800원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갔고, 그후 원고 권 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 노 과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집앞에 「예원빵집」의 벽시계를 보니 16 : 45경이었다.

나. 원고 권 과 위 노 이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현관에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었는데, 평소 위 원고의 누나인 소외 권 를 무서워하던 위 노 은 위 권 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에게 「너희 누나가 집에 있는 것 같으니깐 나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겠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기로 약속한 자전거 스티커를 갖다 달라.」고 말하였고, 위 원고는 손님(위 가죽신발의 주인)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다. 원고 권 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장농앞에는 위 경이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 입과 성기 주변에서는 피가 나 있었으며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라. 이에 원고 권 은 이상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 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부엌쪽에서 우체부와 비슷한 차림을 한 20대 정도의 남자가 나오길래 「누구나」고 물어보았으나 위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위 원고가 다시 「 경이 왜 이래요」라고 물어보자 위 남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숙에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위 원고의 뒤에 있던 위 남자는 전화기 뒷부분에 연결된 가느다란 전선으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서 이를 잡아당겼고, 위 원고는 숨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대문밖에 있던 위 노 이 몇차례 「

아』라고 하며 위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곧 정신을 잃었다.

마. 얼마후에 원고 권 ○은 머리가 뜨겁다고 느끼면서 일어나보니 방안에는 연기가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위 원고는 목에 감긴 전선을 푼 다음 현관쪽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대문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으며, 위 원고는 위 남자가 아직 대문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겁이 나서 옆집 담을 넘어 어머니인 원고 ○숙의 가게 (철쭉시장)쪽으로 달려갔다.

3. 원고들은, 피고 김 ○, 정 ○, 진 ○을 비롯한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권 ○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위 원고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 권 ○이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위 피고들의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포괄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위와 같은 수사발표 당시 원고 권 ○이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은 수사결과와 공표 및 그에 기한 보도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나, 한편 각종 범죄사건의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수사기관이 그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들의 수사결과 공표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결국 위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등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수사발표 당시에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들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수사발표 당시에 원고 권 ○을 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위 사건의 수사과정 및 증거관계

위 피고들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발표를 한 1991. 10. 6.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주

요 증거는, 원고 권 ○의 1991. 10. 5.자 자백(갑 제3호증의 83, 88), 위 노 ○의 진술(갑 제3호증의 76, 77, 90), 위 사건 당일 위 원고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바지, 운동화(갑 제3호증의 38)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98 참조), 이를 중심으로 하여 위 피고들의 수사과정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본다.

가. 원고 권 ○의 자백

(1) 위 피고들은, 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원고 권 ○을 1991. 10. 1.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1991. 9. 30.자 목격자 진술조서를 포함하면 5차례이다.) 조사하였는 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허위인 점이 인정되어 그 모순점을 계속 추궁한 결과, 1991. 10. 5. 오전 경찰 제5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원고가 순순히 위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의 83), 그 진술의 임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날 19 : 00경 위 원고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데리고 갔고, 담당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원고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한 바도 있으며(같은 호증의 88),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에 위 원고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하였고, 갑 제3호증의 16, 30, 53, 54, 55, 70, 71. 72, 83, 88,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 권 ○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91. 9. 30. 위 사건의 현장에서 머리, 눈, 손등, 귀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목둘레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졸린 듯한 색흔이 남아 있었으며, 위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 검은 가래를 토할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 위와 같은 상처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는 사건당일 한마음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 4. 9 : 00경까지 약 5일간 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한마음병원의 의사는 1991. 9. 30. 위 원고의 입원직후에 진찰을 하여 본 결과, 심한 목졸림으로 인한 뇌의 산소부족현상이 염려되어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위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주었고, 그 당시 위 원고는 몹시 흥분되어 떨고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사당시 위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가) 한편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1991. 10. 1. 위 한마음병원 중환자실에서 원고 권 ○을 처음 조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30), 그 당시 위 원고는 「위 살인사건 당일 16 : 50경 안방에서 위 ○경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

다가 40대 우편배달부가 들어와서 범행을 하였으며, 그 당시 화장대 위에 있던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방과후에 동네 오락실을 간 사실을 부모가 알면 혼이 날까봐 이를 감추기 위하여 동네 오락실에 간 사실이 없이 집에서 비디오투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위 원고의 친구인 노 〇의 경우도 처음에는 오락실에 간 일이 없는 것처럼 진술했었다. 갑 제3호증의 76 참조), 한편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형사들은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자, 위 원고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달 4. 9 : 00경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던 위 원고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지난번 진술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바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사실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70).

(다) 그런데 위 형사들은 위와 같은 위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위 원고를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추궁하자, 위 원고는 누나인 소외 권 〇가 위 〇경을 죽인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71), 이는 위 원고가 자발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다는 위 형사들의 계속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형사들은 그당시 위 권 〇에 대하여 혐의점을 두고 같은 달 3. 부터 같은 달 4.까지 이틀동안에 위 권 〇를 상대로 무려 5차례에 걸쳐 위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집중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갑 제3호증의 64, 65, 67, 68, 69 참조), 그 후 갑자기 위 권 〇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위 권 〇의 담임교사인 소외 김 〇와 친구인 소외 최 〇이 같은 달 4.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 권 〇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갑 제3호증의 74, 75 참조).

(라) 그러자 위 형사들은 같은 달 4. 밤까지도 원고 권 〇을 계속 추궁하였는데, 위 원고는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에 누나인 권 〇가 위 〇경을 죽이고 집에 불을 놓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갑 제3호증의 72).

(마) 다시 위 형사들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아침에 원고 권 〇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때에 위 원고는 위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갑 제3호증의 83), 같은 날 19 : 00경에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하

였으나(같은 호증의 88), 위와 같은 자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① 사망의 원인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을 감았다는 취지인데, 갑 제3호 증의 101, 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의 사인은 질식사이고, 위 사체의 복부가 갈라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나, 그 내부장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칼에 깊이 찔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백내용은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형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외견상 위 경의 복부가 갈라진 사실을 확인한 다음, 동생의 사망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계속된 신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위 원고에게 강압적인 추궁을 함과 동시에 유도심문을 하여 위 원고가 칼로 위 경의 복부를 찔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후에, 다시, 위와 같이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던 상황에 맞추어서 위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을 감았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②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살인사건은 남매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외부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위 원고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현관에는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다는 것이고, 위 노 도 계속하여 위 신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바(다만, 1991. 11. 13. 일시적으로 위 신발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있으나, 같은 달 17. 이후 원래의 진술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위 사건 당시에 외부인이 침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권 의 상처경위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친구인 노 이 대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경이 자신을 밀자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였고, 위 경은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었으며, 위 원고가 경을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이불을 덮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예상보다 빨리 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머리와 손등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인데, 우선 친구가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동생을 찔러 죽일 정도로 격렬한

싸움을 하였다는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목이 심하게 졸려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될 정도였는데, 9세에 불과한 위 경이 가느다란 선으로 목을 감아서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갑 제3호증의 53, 54, 55, 121의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원고의 목둘레에 발생한 색흔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한마음병원 의사의 같은 해 9. 30. 산고공급조치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 3. 11 : 30경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소견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고가 스스로 불을 놓았다고 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머리, 눈, 손등, 귀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고 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를 그토록 많이 들이마시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④ 수사의 전개과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권은 위 형사들의 유도심문에 따라 객관적인 정황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자백을 하였고, 위 형사들은 그 임의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위 원고를 검찰로 데리고 가서 같은 취지의 자백을 반복하게 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이 정식으로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1991. 10. 21.이다.), 위 원고를 검사에게 데려가서 자백진술을 받게 한 것은 오히려 위 피고들이 위 원고에 대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여 자백을 받아냈기는 하였으나 그 임의성 문제가 스스로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노 의 진술

(1) 위 노 의 1991. 10. 4.자 진술(갑 제3호증의 76, 77)의 요지는, 1991. 9. 30. 14 : 00경 원고 권, 정 과 함께 학교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그는 위 원고와 함께 위 원고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경이 돈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갔고, 그후 원고 권 이 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다시 위 원고의 집으로 갔는데, 그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에게 「너희 누나가 집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대문밖에서 기다리겠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기로 약속한 자전거 스티커를 갖다 달라.」고 말하였고, 그후 위 원고가 나오지 않아 위 원고의 이름을 몇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그대로 귀가하던 중 위 정 을 다시 만나 함께 집으로 와 비디오를 함께 보다가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 화재소식

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사실과 어긋나지 아니한다(다만, 위 노 이 오락실을 갔었다는 사실을 잠시 숨기려 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위 형사들이 원고 권 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후 같은 달 6. 위 노 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90), 위 노 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위 사건 이전에 위 원고가 성냥을 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를 추가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 노 의 대체적인 진술내용은, 위 피고들의 수사발표내용보다는 오히려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가까운 증거자료라 할 것이고, 특히 원고 권 이 자백한 이후에도 일관되었던 위 갈색 가죽신발에 관한 진술부분은 위 사건 현장에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2) (가) 한편 위 형사들은 위 수사발표 이후인 1991. 11. 13. 위 노 을 다시 소환하여 추궁한 결과,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위 권 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서 원고 권 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위 갈색 가죽신발을 목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3호증의 107), 다시 위 형사들이 1991. 11. 17. 위 노 을 소환하여 추궁하자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위 갈색 가죽신발을 분명히 목격하였고, 다만 그 이전까지 위 원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집안으로 들어간 위 원고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방안에서는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틈으로 보니, 위 권 은 코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고 위 원고가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다음, 그 후 같은 해 12. 26. 검찰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3호증의 128).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노 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2, 3, 4, 5, 갑 제3호증의 100,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우선 위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는 위 노 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다가, 위 수사발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언론기관들이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던 중, 위 사건 발생이후 40여일이 경과한 1991. 11. 13. 에 이르러 갑자기 위 가죽신발문제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진실이 1차 번복되었고, 다시 같은 달 17. 이후에 이와 같이 번복한 위 신발문제는 다시 번복되는 한편 그 당시 위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등 위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점등은, 통상 목격자들의 증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된 번복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로 인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평소 위 권 를 무서워하여 친구의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위 노 이 집안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듣고서 바로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1991. 11. 17. 이후, 위 노 은 위 사건의 현장에 있던 원고 권 이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 당일 위 노 은 길에서 만난 소외 정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노 의 모습에 이상한 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비디오를 보던 중 위 노 의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에 화재소식을 듣고 서로 정말 불이 났을까 하는 말들을 주고 받으면서 위 원고의 집으로 갔다는 것인 바(갑 제3호증의 87, 116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노 의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증거관계 및 수사과정등

(1) 위에서 본 원고 권 , 노 의 진술이외에 위 피고들이 위 수사발표 당시에 부합 증거라고 거시하고 있었던 위 원고의 티셔츠, 바지, 운동화 등에 관하여 보전대, 갑 제3호증의 38, 9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91. 10. 12.경 위 물건들에서 특이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회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건들은 위 원고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1991. 10. 3. 원고 권 이 위 경의 복부를 찌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부엌칼을 압수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51, 52), 그후 전개된 수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혈흔감정등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더욱이 위 피고들은 위 경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1. 10. 6. 원고 권 이 위 경을 찔러 살해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언론기관에 발표하였고, 같은 날 21:00 수사본부전담반까지 해체하였는 바, 갑 제3호증의 101의 기재에서 보면 같은 달 15.경에 이르러서야 위 부검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부검결과 나타난 위 경의 사인은 위 피고들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질식사로서, 위 피고들은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기관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수사본부전담을 해체하였다.

(4) 또한 원고 권 의 처음 진술에 따르면 위 경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 그후 위 원고의 1991. 10. 5.자 자백에 의하면 위 경은 옷을 입은 상태에

서 불에 탔다는 취지인 바, 위 피고들은 1991. 10. 2, 위 경의 사체에 대하여 1차로 감정을 의뢰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 감정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갑 제3호증의 122 참조).

(5) 그리고 원고 영, 숙은 마포구 에 살면서 약 7년전부터 경기 고양군 신도읍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콩나물재배, 두부제조 등을 하여 이를 도매상에 넘기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생업으로 인하여 새벽에 일찍 집을 나와서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큰딸인 위 권 (중학교 2학년)가 아침마다 동생인 원고 권 과 위 경을 깨워서 세수시키고 도시락까지 싸서 등교시키는 등 동생들을 잘 돌보아 왔고, 비록 위 원고의 학급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성품이 착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또한 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 원고의 집에 있던 비디오 기계가 고장나서 약 6개월동안이나 비디오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그 후 위 비디오 기계를 수리한 다음 위 원고는 1991. 9.경부터 위 사건 이전까지 6차례에 걸쳐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본 일은 있으나, 그때마다 누나인 위 권 와 동행하여 아동용 비디오테이프만을 빌렸던 것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위 원고가 폭력물 비디오등에 심취하였다거나, 혹은 원고들의 가정교육이 특별히 잘못되어 위 원고에게 난폭성, 폭력성등의 심각한 성격적인 결함이 생겼다고 보이는 자료는 없다(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2, 67, 124참조).

5. 배상책임

가. 그렇다면, 위 피고들과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원고 권 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하여 1991. 10. 5. 위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하여 위와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원고 영, 숙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 은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하여,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위 피고들 및 위 형사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의 위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서 그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발표의 내용은 원고 권 이 친동생

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다는 충격적인 것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항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 대하여 금 40,000,000 원, 원고 영, 숙에 대하여 각 금 2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영, 숙에게는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 5.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7. 2.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

재판장 판사 이 창 구
판사 김 시 철
판사 전 명 호

2審 判 決 文

사 건 : 93나3263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권

2. 영

3. 숙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권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주 수 창, 김 동 우

피고, 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두 희

소송수행자 홍 용 재, 신 낙 준, 하 명 수, 옥 영 정, 조 해 구

2. 김

서울

3. 정

서울

4. 진

서울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대 성

변론종결 : 1994. 4. 26.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 선고, 92가합2309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영, 원고 숙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5. 9.부터 1994.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4, 93, 94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1. 9. 30.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들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된 후 안방에서 소위 경이 전선에 목이 감긴 채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위 경은 1982. 8. 20.생의 국민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 원고 권 은 1981. 5. 21.생의 국민학교 4학년 남학생으로서 위 경의 친오빠이며, 원고 영, 숙은 위 권 , 경의 부모이다.

(나) 피고 김 는 위 경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던 위 사건 당시 마포경찰서의 서장이고, 피고 정 은 위 경찰서의 형사과장이며, 피고 진 은 위 경찰서의 형사와 강력1반 주임으로서, 위 피고들은 사건 직후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속 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1. 10. 5. 원고 권 으로부터 자기가 위 경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였다 라는 내용의 자백을 받자 위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를 위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입건한 후 다음날은 10. 6. 마포경찰서에서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원고 권 은 1991. 9. 30. 오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오락실에 들어서 놀다가 같은 날 16 : 40경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집을 보고 있던 여동생인 경이 위 원고를 밀므로 위 원고는 화가 나서 위 경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다가, 위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도망다니는 위 경의 복부를 찔러서 살해하고, 같은 날 17 : 1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책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이불에 불을 붙여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에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고 정 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하여 위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관하여 위 사건은 폭력 비디오에 빠져있는 위 원고가 폭력 비디오를 모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다음날인 10. 7.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위 원고가 여동생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 김 정 진 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지휘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권 에 대하여 강제연행,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의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위 원고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고, 위와 같이 불법수사에 의하여 얻어진 허위자백에 기하여 함부로 원고 권 을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언론기관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 정 진 이 원고 권 에 대하여 강제연행, 자백강요, 증거조작과 같은 불법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강제 3호증의 16, 30, 70, 71, 72, 83, 88, 129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부모인 원고 영이나 원고 숙의 승락하에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원고 권 을 경찰서로 연행하였거나 또는 소환의 방법으로 임의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피고들이 위 원고를 강제연행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권 의 위 자백은 믿을 수 없는 허위자백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이 위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위 원고에게 폭행, 협박, 기망, 신체의 불법구금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거나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나 또는 증명 없이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호 판결 참조), 우선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나 또는 증거를 살펴보고, 만약 증명 없이도 보는 경우에는 다시 위 피고들이 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공표된 사실의 진실 여부

위 공표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원고 권 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1991. 10. 5.자 각 자백(갑제3호증의 83, 88)과 소외 노 의 경찰에서의 1991. 11. 17.자, 검찰에서의 같은 해 12. 26.자 각 진술(갑제3호증의 112, 128), 및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원고 권 의 자백

(1) 자백의 내용

갑제3호증의 83, 8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자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14 : 00경 동급생인 소외 노 , 정 과 함께 학교 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위 원고는 위 노 과 함께 위 노 의 집에 들른 후 함께 위 원고의 집으로 가 위 노 이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이 에게 전화한 다음, 집안에 있던 돈 1,600원 중 위 권 이 800원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가자 원고 권 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 노 과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30분 정도 놀다가 위 노 과 함께 집으로 왔다.

(나)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집을 보고 있던 여동생인 경이「왜 같이 안 놀아주고 늦게 왔느냐」고 하면서 위 원고를 밀어부치므로 위 원고는 화가 나서 위 경 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싸울 때 위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졸르므로 위 원고는 경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전기장판의 전기 줄로 경의 목을 감았으며 이에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도망다니는 위 경의 복부를 찌르자 경은 뒤로 넘어졌으며 경의 코와 배, 성기에서 피가 나므로 죽었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7 : 1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책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이불에 불을 붙여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에 방화하였다.

(2) 자백에 이르는 경위

갑 제3호증의 16, 30, 70, 71, 72, 82, 83, 8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백을 하기에 까지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원고는 1991. 9. 30. 사건 당일 마포경찰서와, 다음날인 10 .1. 한마음병원 중환자실에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로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서 원고 권 은「위 사건 당일 5교시 수업을 마치고 오후 2 : 30경 집에 도착하여 먼저 집에 와 있는 위 경 과 함께 안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오후 4 : 50경 40대 우편배달부가 들어와서 먼저 원고 권 의 목을 전화줄로 졸라 기절을 하였는데 뜨거운 불에 깨어보니 경이 살해되어 있어 놀라 집을 뛰쳐 나왔으며, 당시 화장대위에 있던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경찰에서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진술에 나오는 귀가 시간과 비디오를 보는 시간, 범행시간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범행상황에도 납득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같은 달 4. 09 : 00경 병원에서 퇴원하는 위 원고에 대하여 다시 제2회 진술조서를 받았는 바, 위 조사에서 위 원고는 위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위 사건 당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노 과 함께 오락실에서 놀다가 노 과 함께 집에 도착하니 경이 먼저 집에 와 있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과자를 사먹어도 좋다는 승락을 받고 경이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가자 원고 권 도 뒤따라 나가 노 과 또 오락실에서 놀다가 오후 4 : 50경 다시 집에 들어 와 보니 안방에서 경이 입과 엉덩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옆방에서 우체부가 있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위 우체부가 전화선으로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 원고는 당일 계속하여 제3회 진술조서를 받게 되자 위 조사에서는「위 원고는 사건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여 경과 싸웠는데 누나인 소외 권 가 이를 보고 위 경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위 권 가 위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위 번복된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여지자 당일 계속하여 받게된 제4차 진술조서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부연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2회 진술조서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경찰은 위 원고의 진술이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자 위 원고를 일단 귀가시킨 후 다음날인 같은 달 5. 아침에 원고 권 을 다시 경찰서로 소환하여 제5회 진술조서를 받았는 바, 위 조사에서 위 원고는 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같은 날 19 : 00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하였다.(다만, 위 경의 목에 감겨져 있는 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을 살해한 후 목에 줄을 감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경과 싸우는 과정에서 경의 목에 줄을 감았다고 진술한다).

(마) 위 원고는 1991 .12. 28.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에는 다시 위 자백을 번복하여 경찰에서의 위 제2회, 제4회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2) 위 자백의 신빙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자백에 이르기까지 수차 진술을 번복한 끝에 위 자백을 하게되었고, 위 자백 이후에도 다시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진술 중 자백만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가) 사망의 원인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경의 목에 감긴 전선은 싸우는 과정에서 일시 감겼거나(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사망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감았던 것(경찰에서의 진술)이므로 경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인데, 강제3호증의 101, 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의 사인은 질식사이고 질식사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목졸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며, 위 경의 사체는 복부가 갈라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원인이 칼에 찔려서 된 것인지 또는 불에 타서 파열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내부장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칼에 찔렸다고 하더라도 깊이 찔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자백내용은 경의 사체부검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현관에는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살인 사건을 남매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외부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어 위 낫선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점에 비추어서도 위 자백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 권의 상처경위

강제3호증의 16, 30, 53, 54, 55, 70, 71, 72, 83, 88, 강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 권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사건 후 신체검사를 받아 본 결과 머리, 양쪽 눈부위, 좌측 귀부위, 우측 손등에 화상이 있었고, 목둘레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목을 졸리운 색흔이 있었으며, 허 중앙 우측부위에는 자신의 이빨로 난 상처로 보이는 일혈반이 있고, 좌측 얼굴과 복부에는 수개의 표피박탈 상처가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위 화재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 검은 가래를 토할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색흔과 표피박탈은 위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어 생겼다는 것이나 친구인 노 이 대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원고와 경이 위와 같은 색흔과 상처를 낼 만큼 격렬하게 싸웠을 것이라거나 또는 9세의 여자 아이인 경이 목을 졸라 위와 같은 색흔이 생겼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을 지른 후 불이 예상보다 빨리 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연기도 다량 흡입하게 되었으며 허의 상처도 불이 나 밖으로 나오다가 마당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는 취지인데, 위와 같은 화상의 정도나 흡입한 연기의 양,

혀의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자백은 믿을 수 없다.

나. 노 의 진술

(1) 다음 위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소위 노 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 은 1991. 11. 17. 경찰조사에서,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을 때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만 집에 들어 가게 하고 노 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집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틈으로 보니 위 경은 코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고 위 원고가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2. 26. 검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와 비슷한 취지이다.

위 1991. 11. 17.자 경찰에서의 진술 이전에는 일관되게 「위 사건 당일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을 때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만 집에 들어 가게 하고 노 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원고가 나오지 않아 위 원고의 이름을 몇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집안에 들어가 보았다는 위 진술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었는데, 통상 목격자들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하여 진다는 점 및 갑 제3호증의 87, 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다가 귀가하는 위 노 을 소위 정 이 길에서 만났는데 위 노 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었고, 노 과 함께 노 의 집에서 비디오를 보았는데 위 노 의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서로 정말 불이 났을까 하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위 원고의 집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노 이 원고 권 의 집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에서 본 원고 권 , 노 의 진술 이외에 원고 권 의 바지에서 나온 인혈반응이라거나 위 원고가 경을 찔렀다고 하는 압수된 부엌칼도 위 진술들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원고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표된 피의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4.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김 , 정

, 진 이 위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수사기관이 범인을 단정하거나 피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순한 주관적인 혐의만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던 당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권 의 위 10. 5.자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증거와 위 원고가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부엌칼 뿐이다(위 공표 당시에는 위에서 본 노 의 1991. 11. 17.자 이후의 진술도 없었다).

그러나, 위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용자체가 통상의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보면 선뜻 믿을 수 없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위 부엌칼은 위 원고의 자백에 따라 수색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부엌칼 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표 당시 위와 같은 자백과 부엌칼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더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까지 위 원고와 노 은 사건 당시 현관에는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위 갈색신발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는 원고 권 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색신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살인 피의자의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위하여는 적어도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피살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자백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위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둔 위 경에 대한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원고의 자백을 가볍게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피고들이 위 피의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5. 배상책임

(가)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김 , 정 , 진 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권 의 명예가 훼손되어 위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영과 숙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서 그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사발표는 원고 권 이 친동생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원고의 명예에 대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가하는 것인 점,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과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권 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유일한 현장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락실에 갔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사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게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원고에게도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은 원고 권 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영, 숙에게는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 5. 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17.

□

재판장 판사 박 영 무
판사 유 원 석
판사 여 상 훈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 중간에 삽입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자 판결(92가단5798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자 판결(93나31886)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994년 4월 30일 권 외 2명이 미국 시사주간지 「Newsweek」를 발행하는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 뉴스위크사는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뉴스위크측이 6쪽에 걸쳐 한국의 과소비 실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뉴스위크가 1991년 11월 11자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인의 과소비 실태를 다루면서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설명과 함께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자 1992년 6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26단독 박시환 판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얼굴사진을 찍어 게재 배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원고들이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단57989 손해배상

원 고 : 권 외 2인

피 고 : 뉴스위크사

변론종결 : 1993. 5. 27.

- 주 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천만원씩 및 이에 대한 1991년 11월 12일부터 1993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억원씩 및 이에 대한 1991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이 법원의 문화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원고 김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뉴스위크(Newsweek)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회사인데, 1991년 11월 11일자로 발행된 뉴스위크 잡지(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11면 내지 16면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가운데 윗부분에 제1별지와 같은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1.5센티미터 크기의 천 연색 사진을 삽입하였고, 그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사진 안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

나. 위 사진에 나와 있는 5명의 사람 중 왼쪽에서 3번째가 원고 권 , 2번째가 원고 김 , 4번째가 원고 김 이며, 원고 권 은 얼굴 앞 모습이 정면으로 찍혀있고, 원고 김 , 김 는 오른쪽 얼굴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옆얼굴 모습이 찍히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다.

다. 원고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 1992년 2월에 있게될 졸업을 앞두고 1991년 10월 22일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정장차림을 하고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위 사

진을 찍히게 되었고, 위 사진이 위 기사 중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알거나 승낙한 바가 없다.

라. 위 기사의 내용은 제2별지 기재와 같은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던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사치성 고급물건의 소비가 늘고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반면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려는 의식보다는 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 중에는 「한 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후보들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는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전망의 대상이 되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고 통탄해 마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가 발행하는 뉴스위크 잡지는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이 있는데 위 사진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가 되었으며, 사진 밑에 적힌 부제는 영어판에만 적혀 있다. 그리고 뉴스위크 영어판은 판매지역에 따라 대서양지역판, 태평양지역판, 중남미지역판이 있으며 위 사진과 부제는 위 세가지 지역판에 모두 게재되었고, 그 배포 부수는 대서양지역판 32만3천9백58부, 태평양지역판 22만1천9백3부, 중남미지역판 6만3천99부이고, 한국에는 영어판 5만5천부가 수입되어 배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치와 과소비 또는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중간에 위 사진을 삽입하면서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놓아,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 또는 위 부제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는 위에서 살펴 본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별로 각 돈 3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천만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8.

판사 박 시 환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3188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권

서울

2. 김

서울

3. 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항소인 : 뉴스위크사(Newsweek, Inc.)

미합중국 10022 뉴욕주 매디슨가 444

(444 Madis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U.S.A.)

대표자 사장 리차드 엠 스미스(Richard M. Smith)

부사장 티나 에이 래비츠(Tina A. Ravitz)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용

변 론 종 결 : 1994. 3. 9.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주 문 : 1. 원판결 중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1. 12.부터 1994. 3.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2호증(뉴스위크 잡지 표지 및 내용), 강제3호증의 1내지 3(각 선서진술서), 강제4호증의 1(조선일보), 2(한겨레신문)의 각 기재, 강제5호증(사진)의 영상, 이 법원의 문화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김현주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뉴스위크(Newsweek)라는 이름으로 주간시사잡지를 발행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미국회사인데, 1991. 11. 11.자로 발행한 뉴스위크 잡지 (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12면 내지 16면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윗부분 한가운데에 별지 제1과 같이 가로 5cm, 세로 11.5cm 크기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을 한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나. 위 사진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자들 중 왼쪽으로부터 세번째가 원고 권 , 두번째가 원고 김 , 네번째가 원고 김 인데, 원고 권 은 얼굴 앞모습이 찍혀있고, 원고 김 , 원고 김 는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옆얼굴 모습이 찍혀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원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던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사치성 고급물건의 소비가 늘고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반면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려는 의식보다는 투기나 탈세등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위 기사 중에는 「한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 같은 기숙사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

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후보들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는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통탄해 마지않는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찍힌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다.

라. 피고가 발행하는 뉴스위크 잡지는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이 있는데 위 사진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되었으며, 사진밑에 적힌 부제는 영어판에만 있는 바, 뉴스위크 영어판은 판매지역에 따라 대서양지역판, 태평양지역판, 중남미지역판이 있으며 위 사진과 부제는 위 세가지 지역판에 모두 게재되었고, 그 배포부수는 대서양지역판 323,958부, 태평양지역판 221,903부, 중남미지역판 63,099부이며, 한국에는 영어판 55,000부가 수입되어 배포되었다.

마. 한편 1992. 10. 22. 위 사진이 촬영될 당시 원고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서 이듬해 2.에 있게 될 졸업을 앞두고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정장을 입고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위 사진을 찍히게 되었고, 위 사진이 위 기사 중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거나 승낙한 바가 전혀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받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를 편의상 「초상권」이라고 한다.)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이용한 치부, 호화사치풍조와 과

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사, 특히 「대학생들이 비싼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과시적으로 고급 옷을 즐겨 입는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젊은 신부들은 그들을 낚기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및 「젊은이들이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어느 대졸여성의 신문칼럼등을 인용하여 배금주의 풍조를 비판한 내용등이 실린 기사의 중간에 마침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정장차림을 한 원고들의 사진을 넣고 그 밑에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놓았는 바, 이 사건 잡지의 「통상적인」 독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옷을 입고, 결혼에 있어서도 돈을 중요시하는 젊은 여대생들 중 하나이거나(이 사건 기사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어 위 사진으로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생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 사진과 이 사건 기사를 연결시키려 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진의 게재와 그에 붙인 부제에 의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초상이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획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초상권은 그 자신의 용모, 자태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또 널리 공표됨으로써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표된 초상이 반드시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획득될 것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은거에의 침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획득한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며, 다만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점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이상적인 독자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검토하여 가장 최선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사가 학술논문등 깊이있는 연구의 결과라거나 그 의미에 대한 음미를 요구하는 글이라기 보다는 「주간지사잡지」에 실린 비평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잡지의 통상적인 독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독자가 이 사건 기사를 일독하여 전체 문맥에서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 중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여성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게재된 위 사진과 이 사건 기사를 연결시켜서 갖게 될, 그 사진에 실린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그리고 객관적 명예와 명예감정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료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및 신분, 사진촬영 경위, 기사 내용, 이 사건 잡지의 배포부수와 배포지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별로 각 금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일 다음날인 199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1991. 1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레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동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30.

□

재판장 판사 이 재 곤
 판사 이 진 만
 판사 강 을 환

비록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자 판결(93가합2361)

서울고등법원 1994. 5. 26.자 판결(93나39814)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26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씨가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및 주식회사 인천일보 등 5개 지방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재행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 기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공인 또는 유명인이며,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자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1심 법원이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재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361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 고 : 1.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2

대표이사 김 명 곁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환, 신 영 무, 심 재 두, 오 종 한, 박 교 선, 장 응 수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 4가 2

대표이사 문 병 하

3.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4.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毎日新聞)

부산 동래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김 인 수

5.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동구 범일동 252의 127

대표이사 이 광 우

6.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대표이사 송 정 제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이 후 동, 이 재 식, 전 병 하, 김 성 진, 최 병 호, 강 종 구,

유 욱, 오 양 호, 박 형 연, 김 인 만, 양 시 경, 김 종 길, 도 건 철, 이 정 한, 표 재

진

변론종결 : 1993. 6. 24.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 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잡제3 내지 8호중(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이하, 피고 코리아헤럴드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 유 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 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tin)』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으로,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농장에서 말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 인 최 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 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 씨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이사인 호 는 어제 경찰에 의해 구속 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를 허위 토플성적표를 발급 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플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 3월 부당한 방 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플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천 100만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된 사실, (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 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 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p executive of the agency, Yu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ho, a -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 S. high school stayed in a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2) 피고 인천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인천일보에 『서울시경』이라는 소제목 옆에 『최 씨등 6명 적발』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관광비자로 유학알선』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3) 피고 경인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경인일보에 『유학사기 25억 챙겨』라는 제목과 『중고생 토플성적 위조 미, 호주 등 보내』, 『4명 영장 배우 최 씨 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4) 피고 부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매일신문에 『중고 250명 사기유학』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25억여원 챙겨』, 『알선업자 4명 영장 여배우 최 씨 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5) 피고 국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국제신문에 『여배우 최 씨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중고생 2백50명 불법알선 25억 챙겨』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6) 피고 부산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일보에 『25억대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성적위조 미국보내 농장일』, 『여배우 최 씨 등 8명 적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91. 4.경 서울시 경찰국이 해외유학알선업체들 가운데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대표 김)에 대하여는 토플성적표위조등의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대표 오)에 대하여는 위조토플성적표행사등의 혐의로,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에 대하여는 여권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유 상무등 4인을 구속하고 원고등 수명을 불구속 입건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위조와는 무관한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통신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연합통신의 통신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그대로 전재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11호증(각 판결), 갑 제12, 13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4호증(불기소장), 갑 제15호증, 을 제27호증(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광고), 을 제7호증(의견서), 을 제8호증(범죄정보보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0, 15, 16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진술조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각 수사보고), 을 제12, 25호증(수사지휘품신), 을 제17호증(진술서), 을 제19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살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1981.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온 사실, 소외 호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코리아 아카데미 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의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 2. 경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위 호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 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이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

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그후 위 호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팜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사실, 한편,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 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 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하여 수사에 들어가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로 위 호, 유 , 원고(나중에 위 코리아 아카데미 회장인 소외 훈도 함께 입건되었다)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외 김 를 학부모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폴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 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외 오 을 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김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폴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한 사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코리아 아카데미 운영관계자로 위 호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위 유 에 대하여는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의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가 이미 도주한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18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호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위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했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는 사실, 서울시 경찰국은 1991. 4. 11. 09 : 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불법해외유학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 가 정 , 모 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폴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호,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호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 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 경찰국 담당직원은 「원고가 소위 호 등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한 사실, 라디오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사건의 주모자이고 이로 인하여 도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제목아래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2개 해외유학알선업체 대표,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 등 2명은 수배됐다. (중략)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이하 중, 고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주겠다며 2백50여명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을 받은 (주)코리아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대표 유 등 2명을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수배하고 상무 호 씨 를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이모 양(16, 중3) 등 부유층자녀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정규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 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50여명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영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백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하 행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에서 운영하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수신료를 지불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지인 관계로 서울에서 발생한 국내 시사사건은 거의 위 연합통신의 통신문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연합통신은 같은 날 오후 피고들에게 『학생 250여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교생들을 토폴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서울 13)등 해외유학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 모 씨(45, 주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배우 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한 사실, 피고 코리아헤럴드 소속 기자들은 위 방송을 들은 사회부장인 소외 김 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에 가서 당시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던 보도자료를 위 김 에게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는 한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 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그래서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통신과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1991. 4.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호, 유 , 훈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한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그러나 검찰에서는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 유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 결정

(위 호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그후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 코리아헤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인정한 소위 호등의 해외유학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들의 내용은 그중 원고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달아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나(그 이외에 원고소외 회사 이사장으로 내세워졌고 월급을 받으면서 유학희망자의 모집과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된다)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 내용은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가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 코리아헤럴드에 대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위 피고가 토플성적위조에도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

은 인정되나, 한편 그 당시 위 피고로서는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었던 관계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가 위 기사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재행위에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그 범위를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2.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종
판사 송 영 철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3981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2

대표이사 박 정 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환, 신 영 무, 심 재 두, 오 종 한, 박 교 선, 장 응 수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 4가 2

대표이사 문 병 하

3.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제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4.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每日新聞)

부산 동래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김 인 수

5.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동구 범일동 252의 127

대표이사 남 정 식

6.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대표이사 송 정 제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유 욱, 이 재 식, 박 형 연, 김 인 만, 양 시 경, 서 동 우,
도 건 철, 강 종 구, 표 재 진, 김 종 길, 이 후 동, 이 정 한, 전 병 하, 한 이 봉, 최
병 호, 정 의 종

변론종결 : 1994. 4. 21.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 선고, 93가합2361 판결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갑제3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이하, 피고 코리아헤럴드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여배우 불법 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 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 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tin)』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으로,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후 학교부설농장에서 말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인 최 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 씨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이사인 호 는 어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를 허위 토폴성적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폴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 3월 부당한 방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폴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1,000,000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 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 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p executive of the agency, Yu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ho, a -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 S. high school stayed in a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나. 피고 인천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인천일보에 『서울시경』이라는 소제목 옆에 『최 씨등 6명 적발』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관광비자로 유학알선』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 우)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경인일보에 『유학사기 25억 챙겨』라는 제목과 『중고생 토플성적 위조 미, 호주 등 보내』, 『4명 영장 배우 최 씨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매일신문에

『중고 250명 사기유학』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25억여원 챙겨』, 『알선업자 4명 영장 여배우 최 씨 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국제신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국제신문에 『여배우 최 씨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중고생 2백50명 불법알선 25억 챙겨』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바.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일보에 『25억대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성적위조 미국보내 농장일』, 『여배우 최 씨 등 8명 적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1991. 4.경 서울지방경찰청(당시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해외유학알선업체들 가운데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대표 김)에 대하여는 토플성적표 위조 등의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대표 오)에 대하여는 위조토플성적표행사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여행사(이하 코리아 아카데미라고 한다)에 대하여 여권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코리아 아카데미의 호 상무등 4인을 구속하고 원고등 수명을 불구속 입건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위조와는 무관한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통신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연합통신의 통신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그대로 전재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보전대,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3, 7, 8, 10, 12, 14 내지 17, 19, 21 내지 25, 2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 20,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위 호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이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2) 한편, 원고는 세살경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 10.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오다 1989. 2. 경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위 호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이 회사의 본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3) 원고가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그후 위 호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 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

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팝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였다.

(4) 한편,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 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 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 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하여 수사에 들어가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로 위 호, 소외 유 , 원고(나중에 위 코리아 아카데미 회장인 소외 혼도 함께 입건되었다)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외 김 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플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 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외 오 을 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김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플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하였다.

(5) 그러나 경찰에서는 코리아 아카데미 운영관계자로 위 유 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위 유 에 대하여는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가 이미 도주한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18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 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위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차례에 일본에 다녀왔으나 위와 같이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달아난 사실은 없었다.

(6)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1991. 4. 11. 09 : 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서울 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불법해외유학사건을 수사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 가 소외 정 , 모 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플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호, 익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호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은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토폴성적위조와 사기 부분은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특별시 경찰국 담당직원은 「원고가 위 호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하였다.

(7) 이에 따라,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재목아래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2개 해외유학알선업체 대표,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 등 2명은 수배됐다. (중략)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이하 중, 고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 주겠다고 2백50여명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을 받은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대표 유 등 2명을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수배하고 상무 호 씨 를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이모 양(16, 중3) 등 부유층자녀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정규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 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50여명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 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백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다.

(8) 한편,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뉴스로부터 수신료를 지불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지인 관계로 서울에서 발생한 국내 시사사건은 거의 위 연합뉴스의 통신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같은 날 오후 피고들에게 『학

생 250여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서울 13)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45, 주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하였다.

(9) 피고 코리아헤럴드 소속 기자들은 위 방송을 들은 사회부장인 소외 김 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가서 당시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던 보도자료를 위 김 에게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는 한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 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뉴스와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뉴스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10)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1991. 4.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호, 유 , 훈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한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같은 해 5. 18. 원고 및 소외 호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위 유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 결정(위 유호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그후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유호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코리아헤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위 유호등의 해외유학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들의 내용 중 위 코리아 아카데미 및 원고가 토플성적위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한 부분과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내용은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코리아헤럴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나(원고는, 위 피고가 토플성적위조에도 코리아 아카데미 관련되었다고 허위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는 토플성적위조에는 다른 유학알선업체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대표 김 가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당시 위 피고로서는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었던 관계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재행위에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6.

□

재판장 판사 이 강 국
 판사 최 병 철
 판사 김 형 진

보도자료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보도하였고, 취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2.자 판결(92가합18321)

서울고등법원 1994. 4. 14.자 판결(93나4305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4년 4월 14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는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게 보도하였고, 취재과정에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인 최씨는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각 3천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원고에게 진위 여부 확인등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며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자 한국방송공사가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합18321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2.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8. 12.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련되었다는 위 피고의 1991. 4. 11.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1992. 7. 23. 언론중재위원회에 92서울중재147호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협 의 사실등을 방송하도록 중재하여 달라고 언론중재신청을 하여 위 피고가 원고와 절충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면 원고는 위 언론중재신청을 취하하고 금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위 피고가 1992. 8. 5.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위 언론중재신청을 취하하였던 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부제소합 의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사실을 방송하였으며 원고가 언론중재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판결), 갑 제4, 5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 제1호증(언론중재신청서), 을 제3호증(사건송치), 을 제9호증(외국유학알선업자 수사결과보고,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13 내지 15호증(각 피의자 신문조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뉴스데스크 속기록), 을 제5호증(보도본문)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 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위 증인, 증인 박 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역배우로 연예활동을 시작한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1989. 2.경 소외 호가 경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 여행사(이하 코리아 아카데미라 한다)와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유학 경험과 대학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여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일주일에 한두번 약 1시간씩 위 코리아 아카데미에 출근하여 유학 상담을 하였는데 그 후 위 호는 원고를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광고한 사실,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 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 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가 늘어나자 1991. 3.경 서울 시경철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은 수사사실을 취재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각 TV방송의 경우 원고의 사진을 부각시킨 화면과 함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제1 KBS 보도 내용과 같은 내용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별지 제2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내용을, 1991. 4. 11. 각 TV의 경우 밤 7시, 9시, 마감뉴스에, 각 라디오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매 시간 뉴스를 통하여 방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 및 청취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일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소위 호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폴성적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수십억 내지 1백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막대한 수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방영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이 사건 보도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작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룬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

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보도 내용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았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1992. 6. 26.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 , 박 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경영 및 유학알선 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고, 위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보도는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도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으로 행세하다가 그 후 소외 호가 원고를 그 이사장으로 하여 광고를 내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 오다가 위 피고에게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을 탓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 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라는 적합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들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자할 원고의 정신상 고통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보도자

료)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위자료 액수의 결정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보도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점, 피고들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사실을 보도한 점, 원고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모델을 하였으며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내지 이사장 직함 사용을 묵인한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들이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2.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중
판사 송 영 철

제1 KBS 보도 내용

제목 : 유학사기

내용 : 영화배우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주선해서 해외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막상 현지에서는 막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진정이 잇달아서 경찰이

최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한 브로커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유학사기 사건의 수법을 알아봅니다. 영화배우 최 씨가 경영하는 유학알선업체 코리아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 250여명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등지에 불법유학을 시켜주고 수십억원 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역탤런트로 데뷔한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신문광고까지 내며 유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학원을 통해 유학을 간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열악한 기숙사에 수용되어 말사육등 목장일 사역까지 하는 등 미국 내에서 조차 인권유린시비를 일으켜 이 학원에 대해 수사를 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최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학원 상무 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 MBC 보도 내용

제목 : 유학알선사기

내용 :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등학생 250여명을 불법으로 외국에 보내온 유학알선업체 대표와 영화배우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경찰국은 오늘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 씨를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행방을 감춘 이 회사 이사장 최 씨 등을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토폴영어시험 성적표를 위조해 한장에 이삼천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이화텍사스 주립유학원장 김 씨와 태평양유학진흥원 상담실장 오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영화배우 최 씨를 내세워 일간지에 조기유학 모집광고를 낸 다음 유학이 불가능한 18살 이하의 부유층 자녀 250여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천만원씩을 받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반 여권으로 미국등지에 보내는 불법송출로 지금까지 100억원을 알선비로 챙긴 혐의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쫓기다시피 유학간 부유층 자녀들은 집단수용시설에 살면서 대부분이 어학능력부족으로 학교에 정식 입학 못한 채 1년 짜리 관광비자가 다 돼서 귀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목장에서 잡역부로 일하거나 수퍼마켓 배달원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물복용으로 정신병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재미동포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4305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최

충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고, 항소인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변론종결 : 1994. 3. 1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2. 선고, 92가합18321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 6, 9, 10, 11(갑 제3호증과 같다),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원심 증인이 ○○○○, 박 ○○○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아역배우로 연예활동을 시작한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 미 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89. 2.경 소외 ○○○○호가 경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 여행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

면서, 또한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여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일주일에 한두번 약 1시간씩 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유학 상담을 하였고, 위 호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이사장이라고 광고하였다.

(나)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업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학교에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91. 3.경 서울시 경찰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수사사실을 취재하면서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92. 4. 11. 별지 기재 보도내용을 티브이(TV) 방송의 경우 원고의 사진을 부각시킨 화면과 함께 밤 7시, 9시, 마감뉴스에 라디오 방송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매 시간 뉴스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2)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 및 청취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은 일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소외 호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플성적 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수십억 내지 1백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 보도내용이 막대한 수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

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도내용을 방영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보도내용을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위 보도내용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작하여 위 보도내용을 작성, 방송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보도내용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이며, 위 보도내용이 불법유희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과연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호등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고,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소개 및 현지 적응 등의 상담을 하였을 뿐 그 유학 절차 및 경영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소속 기자들이 1991. 4. 11. 위와 같은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찰국을 방문하자, 그 담당직원인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호,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관광목적등으로 허위기재하여 불법유학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여권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위 호에 대하여는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만 원고는 현재 소재불명(당시 원고는 1991. 4. 4.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9. 입국하여 국내에 있었다)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등에 대한 사기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유학알선을 의뢰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공받았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는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 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을 처분을 하였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을 한 후, 1992. 6. 26.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련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유학알선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보도내용은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도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자할 원고의 정신상 고통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일부(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 처분 사실을 피고를 포함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되어 정신상의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 액)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보도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점, 피고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사실을 보도한 점,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 모델을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장 내지 이사장 직함 사용을 묵인한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할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4.

재판장 판사 이 용 웅
 판사 강 현
 판사 박 동 영

보도내용

제목 : 유학사기

내용 : 영화배우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주선해서 해외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막상 현지에서는 막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진정이 잇달아서 경찰이 최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한 브로커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유학사기 사건의 수법을 알아봅니다. 영화배우 최 씨가 경영하는 유학알선업체 코리아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 250여명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등지에 불법유학을 시켜주고 수십억원 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역 텔런트로 데뷔한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외국 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신문광고까지 내며 유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학원을 통해 유학을 간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열악한 기숙사에 수용되어 말사육등 목장일 사역까지 하는 등 미국 내에서 조차 인권유린시비를 일으켜 이 학원에 대해 수사를 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최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학원 상무 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허위보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자 판결(93가합2534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재판장 오윤덕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7일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바 있는 전병민 씨의 전 부인인 최 씨가 토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요신문사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요신문사가 지난 3월 13일자 신문에서 최씨와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등을 속속들이 밝힌 것처럼 허위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 최씨는 토요신문이 1993년 3월 13일자에 『전병민의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과 직접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취재한 것인 양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 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냈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5344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피 고 : 1.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서울 중구 다동 35

대표이사 홍 성 목

2. 구

서울

3. 한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유 주

변론종결 : 1993. 11. 1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3.부터 1993. 12.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는 주간지 토요신문의 제3면에 제목은 100호 견고덕 장4체 활자로, 내용은 14호 신문명조 평1체 활자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구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지 「토요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 120호 견고덕 평4채 활자로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관련기사, 최씨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제3면에 제목은 100호 견고덕 장4채 활자로, 내용은 14호 신문명조 평1채 활자로 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라.

이 유 : 1.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갑 제1호증의 1, 2(각 신문), 갑 제2호증(사과문, 갑 제3호증의 8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공소장), 5(고소장), 6, 14(각 진술조서), 7(답변요구서), 11, 13, 15, 1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11, 13, 14, 15, 1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주간지인 「토요신문」등 정기간행물의 출판업 등을 경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유기고가로 종사하던 피고 한 은 피고 회사 정치부장인 소외 이 의 지시에 따라 1993. 2. 25.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소외 전병민이 그 장인 한 의 전력등이 문제되어 내정이 취소됨에 따라 동인의 결혼생활 등 사생활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자, 마침 언론 출판계에 2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위 전병민의 전처였던 사실을 알아내고 원고를 상대로 위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 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대하여 기획취재를 하기로 마음먹고, 1993. 3. 4. 당시 세계일보사에서 발행사는 월간잡지 「세계여성」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던 43세의 이혼녀인 원고를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에게 취재목적을 설명하고 회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

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약 3 내지 5분간에 걸쳐 이어지는 상식적인 차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극적으로 이미 이 사건은 기사 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며, 위 전병민과 일본에서 알게 되었다고 현 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한 바도 없었고, 위 전병민의 성격에 대하여는 부부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의 성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위 전병민이 지금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위 피고의 말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질문을 받은 적도 답변을 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하여 당시 일반 독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이른 바 기사거리가 되게 할 욕심에서, 그 시경 서울

소재 위 피고의 자택 등지에서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경 위 기사가 위 피고가 직접 원고를 회전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인 양 피고 회사에 송고하여 피고 회사의 정치부장인 위 이 로 하여금 같은 날짜 발행 「토요신문」 지상 제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전병민의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이라는 제목 아래 120호 견고덕 평4채 활자로 『나와 전병민의 과거 밝힌다』라는 설명을 달고, 제3면 중안 부분에 『본지 단독 고백, 전병민 전처 최모 씨 전남편과 이혼 사유를 밝힌다』라는 제목 아래 100호 견고덕 장4채 활자로 『개인적 상처일 뿐...이젠 담담해요』라는 요약을 달아, 14호 신문명조 평1채 활자로 하여 원고를 최모 씨(43세)라는 표현 아래 원고가 위 전병민과의 이혼과정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일설이라는 전제로 이를 인용하여 「일본에서 한 씨와 밀애를 나누던 전씨가 귀국 후 최씨에게 이혼을 강요했다고 한다.」, 케이(K)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일본에서 연구목적으로 가끔 만나는 현 부인과의 관계를 최씨가 지나치게 상상하여 의심했던 것이 불화의 시작이었다.」, 위 전병민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가 「위낙 소설 같은 사람이라 5~6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에는 남다른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지는 않을 것이다.」, 「전씨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공직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의 밀실정치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편집 게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9(93. 4. 23.자 토요신문기사), 10(93. 4. 24.자 토요신문기사), 12(진술서)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1, 13, 14, 15, 17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기사에 43세의 최씨 성을 가진 이혼녀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언론계에 종사하는 43세의 직장여성으로서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하는 43세의 최 모씨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전병민과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자들과의 관계나 의심하는 의부증(疑夫症)이 있는 여자이고, 남편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그 정도로 소원한 관계에 있다가 위 전병민과 현처와의 관계에 밀려서 이혼까지 강요당한 무능력한 여자로서 위 전병민과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위 전병민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세인의 관심이 쏠리자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에 전 남편의 행태를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내용의 심경 고백이나 즐기는 경솔한 여자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수많은 독자에게 넓게 보도·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신문의 사명에 비추어 적법히 허용된 범위 내에서 게재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9 내지 15,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5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로부터 그 기사화를 승낙받아 위 토요일신문에 게재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9 내지 1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자체

를 거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 한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되게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위 피고 및 위 피고에게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편집한 위 이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피고 및 위 이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내용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언론 출판계에 20년 가까이 일 해오면서 그 업무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 모씨라고 표시하여 기사를 게재한 점 및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6, 11, 13의 각 기재 및 증인 〇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위 전병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키우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주위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원고의 나이와 직위, 피고 회사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그 게재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토요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 목록기재 정정보도문을 위 「토요신문」에 이 사건 기사에 준하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한에 대하여도 위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위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토요신문」에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피고 회사의 기자에 불과하여 위 「토요신문」의 기사 작성권 이외에 기사의 편집 및 발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해 위 정정보도를 명함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피고 구봉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구는 피고 한과 공모하여 1993. 2. 25.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소외 전병민이 그 장인 한의 전력등이 문제되어 내정이 취소됨에 따라 동인의 결혼 생활등 사생활에 세인의 이

목이 집중되자, 원고가 위 전병민의 전처였던 사실을 알아내고 일반 독자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위 「토요신문」의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대하여 기획 취재함으로써 그 사생활을 파헤쳐 주간지인 위 「토요신문」에 기사화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 한정곤이 작성한 신문 기사를 편집하여 위 제1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1993. 3. 13.자 「토요신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구 가 위 「토요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피고가 피고 한 과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실제로 편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2,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 는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운영자금의 조달, 수입 및 지출의 결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뿐 실제로 위 토요신문 기사의 편집 및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토요신문」의 발행 및 편집은 피고 회사 편집국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 이 사건 신문 기사에 대한 발행 및 편집은 피고 회사 편집국장이 공식적인 관계로 피고 회사 정치부장인 소외 이 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구 가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실제로 편집,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한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된 1993. 3.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 12. 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토요신문」의 제3면에 별지목록기재 제1정정보도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구 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사 및 피고 한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7.

재판장 판사 오 윤 덕

판사 김 기 정

판사 이 선 희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전남편과 이혼사유를 밝힌다는 기사에 관하여 최씨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본지에 손해배상판결

나. 내용

본지 1993. 3. 13.자에 게재된 『전병민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 관련 기사는 최씨가 회견을 거절하였음에도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가 임의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

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관련기사」, 최씨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

나. 내용

본지 1993. 3. 13.자에 게재된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고백』 기사는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뷰도 거치지 않은 채, 기자가 자의로 추측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기사는 마치 최씨가 본

지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여 전병민씨와의 이혼사유를 스스로 밝혔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적당한 시기에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씨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기사화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불법적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작품소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원고의 이혼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하고 판결내용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 12.자 판결(93가합357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12일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작가인 공 씨가 「주부생활」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학원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기사가 원고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기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 공씨는 1993년 1월에 출간한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작품소재, 배경, 작품세계 등을 기사화하기로 하고 인터뷰에 응했으나, 「주부생활」이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만을 보면 자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이해될 수 있게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판결전문을 게재하라는 소송을 냈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3572 손해배상등(기)

원 고 : 공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피 고 : 1.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2. 김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철 민

변론종결 : 1993. 12. 1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 1994. 1. 12.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의 표지란과 목차란에 『본지 93. 3.호 기사, 소설가 공지영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배상판결』이라는 제목을, 내용란에 이 사건 판결 전문을 각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장편소설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등을 저술한 소설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이하 피고 학원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월간잡지인 「주부생활」등을 발행, 판매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김 ○○은 피고 학원사의 직원으로서 위 「주부생활」 1993년 3월호에 이 사건 기사내용을 게재한 기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불법행위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1 내지 3, 갑 제 3호증, 갑 제 4호증, 갑제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김 ○○은 1993. 2. 18. 피고 학원사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주부생활」에 원고가 같은 해 1. 16.경 출간한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작품소재, 배경, 작품세계 등을 기사화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다른 잡지에 자신의 사생활이 기사화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터라 피고 김 ○○에게 위 소설의 소개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자신의 사생활을 기사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위 취재에 응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2. 19. 16 : 00 경 서울 동숭동 소재 카페 「37도 2부」에서 위 피고를 만나 잡지에 게재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하면서 상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으나,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자신의 이혼경력등의 사생활을 위 장편소설의 소개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기사화 하도록 재차 당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김 ○○은 위 취재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학원사가 발행하여 1993. 3. 1.경 배포한 1993년 3월호 「주부생활」 잡지에 위 장편소설을 소개하면서 표지에 『소설가 공 ○○ 바람피지도 않은 남편,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나는 왜 혼자가 되었나』, 목차란에 『이 여자의 자기선언 소설가 공 ○○, 나는 왜 바람피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혼자가 되었나』, 내용란의 첫면에 『이 여자의 인간선언, 여자의 재능과 자아성취 욕구 꺾는 결혼생활에 반발, 이혼선언하고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쓴 작가 ○○○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남자를 떠나 왜 나는 혼자가 되었나』라고 한 후, 그 다음면부터 원고에 대한 서술을 명조체로, 위 장편소설의 「혜완」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서술을 고딕체로 하여 연이어 게재함으로써 위 잡지의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만을 보는 독자

들로 하여금 위 기사가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기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 잡지의 표지란, 목차란, 내용란의 첫면에 기사전체의 내용을 연결하여 보아도 원고와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글자체의 구별 외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 장편소설을 잘 정독하여 읽지 않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고딕체로 게재한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원고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은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이 기사화되는 것을 극히 꺼려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원고의 사생활 부분이 기사화되면 그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리라는 것을 적어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락 없이 위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위 「주부생활」 잡지의 1993. 3월호에 위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원사는 위 잡지의 발행자이자 피고 김 ○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 ○은 위 기사를 작성한 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피고들은 위 기사내용은 원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진실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원고의 위 장편소설이 원고의 직접 또는 간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므로 위 장편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알 권리가 있고, 피고들로서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기사화한 것일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기사의 내용이 위 장편소설에 투영된 작가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게재하였다고 이해되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그 내용란의 게재방법에 있어서도 원고와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원고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한 이상 이는 독자들의 알권리나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히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소설가로서

의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저명도, 이 사건 기사내용을 신게된 경위 및 원고의 명예 훼손의 정도,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내용이 실린 「주부생활」의 판매부수, 피고들이 위 기사게재 후 원고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및 피고 학원사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회복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재를 명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명예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당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로서 위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위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므로 위 손해배상과 함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적당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쓰인 활자의 크기와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재가 사죄광고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별지목록 기재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 법원으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안을 피고 학원사 발행의 위 「주부생활」에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양심에 반하여 원고에게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일인 1993. 3. 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4.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명예회복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2.

재판장 판사 현 순 도
판사 서 태 환
판사 이 완 식

게재내용 및 방식

1. 게재할 내용

가. 목차란 게재내용

「본지 93. 3.호 기사중 일부가 소설가 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제목

나. 내용란의 게재내용

「본 출판사가 본지 1993년 3월호에 『소설가 바람피지도 않는 남편,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나는 왜 혼자가 되었나』라는 제목하에 위 공 의 소설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공 의 의사에 반하여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을 공 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오해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그 내용란에 있어서도 공 과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위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공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본 출판사와 담당기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1994. 1. 12. 「공 과 위 소설속의 인물인 혜완을 서로 동일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공 의 사생활을 기사화 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공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

2. 게재 방식

가. 목차란 내용의 게재방식

목차란에 18포인트 크기의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

나. 내용란 내용의 게재방식

내용란에 9포인트 크기의 명조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

□

원고가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내용을 보도하여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음 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9. 14.자 판결(93가합14585)

서울고등법원 1995. 4. 12.자 판결(94나35185)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995년 4월 12일 당 임의원이 월간 「한국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잡지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로 국회의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피고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고의적인 비방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국의회」 1993년 11월 창간호에서 「제14대 총선의 당선자 분석」이라는 기획기사중 88면 『국회의원 임 서울 을 당 막상막하 스타일의 승리를 이루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14대 총선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선된 원고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출신이라고 보도되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야당의원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경력 기반으로 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민들의 정서에 군사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

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고측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하여 중재가 성립되지 않자(93서울중재218)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해 정정보도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3가합14585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

피 고 : 1. 윤

2. 윤

3. 김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기

변론종결 : 1994. 8. 31.

주 문 : 1. 피고 윤 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2. 27.부터 1994. 9. 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윤 , 김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윤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윤 ,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1/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피고 윤정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21,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종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을구의 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를 통해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고, 「월간 한국의회」는 1989. 6. 5.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월간지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제도 및 관계법령을 해설 소개하고 각급 의원의 의정활동상과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수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타블로이드판으로 100면 이상 200면 이내로 편집,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잡지인 바, 피고 윤 은 1993. 10. 15. 소외 으로부터 위 월간지의 발행 운영권을 인수하여 위 월간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1993. 11. 1.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나) 위 월간지 창간호에서 당시 이 월간지의 편집국장이던 소외 조 은 「제14대 총선의 당선자 분석」이라는 기획기사란 88쪽에 『국회의원 임 서울 을 당, 막상 막하 스틸의 승리를 이루다』라는 제목하에 「제14대 총선에서 김 의원과의 재검표를 통해 당선의 확정이 되는 순간, 그에게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그의 14대 국회 임기가 끝나야 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의 평가는 조심스럽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며, 위 창간호는 약 3,000권이 인쇄되어 29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각 1권씩 배포되고, 그 밖에 원고의 지역구인 구 시의원인 소외 윤 이 약 150권 정도를 구입하여 지구당에 배포를 하는 등 지구당 위원장 및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가 배포되고 나머지는 일반 서점에서 권당 가격 5,000원에 판매되었다.

(다) 위 조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1990. 11월 「말」지 별책부록 「보안사 민간사찰 개인별 기록카드」 99쪽에 실렸던 「원고가 1963. 3.부터 같은 해 10.까지 세기상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과거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였던 소외 조 , 오

으로부터 중앙정보부를 「세기문화사」라고 통칭하고, 중앙정보부 이문동 본부를 「세기상사」라고 통칭한다고 들은 말과, 1987.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에서 주

민들 사이에 떠돌던 풍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과거 중앙정보부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서 위와 같이 원고가 과거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였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편집인 겸 발행인인 피고 윤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창간호를 발행함에 있어서 기사 내용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실제 원고가 1965. 3.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근무하였던 「세기상사」는 영화배급업체로서 원고는 당시 위 회사 광주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1976.경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자유운동을 하는 등 재야운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러한 재야활동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야당의원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경력 기반으로 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민들의 정서에 군사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월간지가 인쇄, 일반인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나,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것이라는 인식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사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는 달리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신문, 잡지와 같이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막연한 풍문등을 근거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 배포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를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 월간지가 시중에 배포, 판매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윤은 원고의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위 월간지의 발생부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부분의 크기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회복경비

원고는 피고 윤 의 불법행위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해명편지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비용으로 금 50,000,000원이 소요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허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 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소요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윤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윤 , 김 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은 피고 윤 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위 월간지에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 편집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월간지 창간호가 「발행처는 주식회사 한국의회, 대표이사는 피고 윤 , 수석기자는 피고 김 」으로 표시되어 발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윤 김 이 피고 윤 및 위 조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편집,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2호증의 7, 8, 11, 12, 13, 17,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 는 피고 윤 란의 오빠로 피고 윤 과 함께 위 월간지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설립, 경영할 의도였으나, 위 월간지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윤 이 발행, 편집 등을 혼자 맡아하기로 하고, 위 월간지의 발행인 등록도 피고 윤 명의로만 하였으며, 단지 위 월간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다가 창간호에는 「주식회사 월간 한국의회의 대표이사」로 피고 윤 가 표시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윤 , 김 이 실제로 위 월간지를 편집,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윤 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12.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 9.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윤 , 김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4.

재판장 판사 양 동 관
판사 지 영 난
판사 최 인 규

2審 判 決 文

사 건 : 94나3518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고, 항소인 : 윤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기

변론종결 : 1995. 3. 15.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9. 14. 선고 93가합 14585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조
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12.

□

재판장 판사 신 정 치
판사 구 만 회
판사 조 동 섭

.....

속칭 「오렌지족」의 생활양태를 비판적으로
다른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사진을 승낙없이
게재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자 판결(94가합3675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20일 텔런트 전
서 김 씨가 월간 주니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지 보도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승낙없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록 피고측의 기사내용이
오렌지족을 비판하는 건전한 내용이며 게재된 사진에 이름등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 초상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전 씨등은 월간 주니어 1993년 1월호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 제하의 기
사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서 1993년을 전후하여 번성한 부유한 신세대 젊
은이들의 향락적인 과소비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평
상복차림의 원고등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

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가합3675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전

서울

2. 서

서울

3. 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신 호

피 고 : 이

서울 서초구

월간쥬니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충 진

변론종결 : 1994. 9. 15.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 2.부터 1994. 10. 20.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6년경부터 1994. 6.경까지 1976. 12. 16. 등록번호 라2024호로 창간된 월간

잡지 「주니어」의 발행인으로서 주 독자층을 청소년으로 삼는 상업지인 위 잡지를 발행, 배포하였는데, 1993. 1. 1.자로 발행한 「주니어」 1993년 1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327면 내지 331면에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서 1993년 전후하여 번성한 부유한 신세대 젊은이들의 향락적 과소비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취재 분석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남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 『삶은 즐기는 것이다』, 『넘쳐 흐르는 외국문화』, 『한풀이 소비문화의 단면』, 『카페에서 지금 막 부킹에 성공한 남학생에게 묻는다.』, 『문답으로 풀어 본 오렌지족』 등의 소제목을 달아 게재하면서, 그 329면의 상단에 별지와 같이 그 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세로 약 12.5cm, 가로 약 20.5cm)로 평상복 차림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3명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젊은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삽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진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자들 중 사진의 왼쪽이 원고 서○, 가운데가 원고 전○, 오른쪽이 원고 김○으로서, 원고 서○은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린 모습으로, 원고 전○은 얼굴을 앞으로 조금 숙인 모습으로, 원고 김○은 작은 크기의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앞으로 약간 숙인 모습으로 찍혀 있는데, 원고 전○, 같은 김○은 그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사진에 나타나 있고, 원고 김○도 선글라스를 껴지만 체격, 얼굴모양, 의상 등으로 보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같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사진에 나타나 있다. 또 이 사건 사진에는 원고들이 함께 거리를 걸어 가다가 젊은 남자가 접근하자 미소를 짓는 듯이 보이는 모습으로 찍혀 있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사진 이외에 압구정동 거리의 풍경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6장의 사진이 기사 중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사진들은 대부분 거리의 풍경이나 커피숍, 음식점 등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찍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진보다 작은 크기로 삽입되어 있고 그에 나타난 인물들의 얼굴들은 이 사건 사진의 원고들처럼 분명히 식별할 수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 1970년대에 태어난 부유층 자녀들 일부가 비싼 외국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모여 들어 화려한 시설과 값비싼 음식들이 갖추어진 나이트 클럽, 카페 등에서 아끼지 않고 돈을 쓰며, 소비적,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렌지」라는 은어로 통하는 이들은, 부모의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의 바탕 위에서 향락과 쾌락주의를 선민의식과 일류의식으로 오해

하여 무국적, 무절제, 외국풍 모방의 속칭 압구정동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들을 아무런 의식없이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이며, 전문가는 「오렌지족」의 등장배경은 정치, 사회적 개방과 소비를 마음껏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세대의 한풀이 소비 욕구에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풍조가 한데 어울려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기사 중에는 「그저 일본 유명 잡지의 모델을 복제한 듯한 젊은이들이 활보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삼류문화가 뒤섞여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문화」, 「철저하게 외부의 세계와 두꺼운 담을 쌓고 향락과 쾌락주의를 선민의식과 일류의식으로 오해하며 서서히 병들어 가고」, 「외모와 돈이 평가기준이 되는 이 곳에서는 무절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문제」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사 뒷쪽에는 『카페에서 지금 막 부킹에 성공한 남학생에게 묻는다』라는 소제목 아래 커피숍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붙여 대화상대로 삼는 데 성공했다는 22세 남자와의 문답과 『문답으로 풀어 본 오렌지족』라는 소제목으로 속칭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의 생활양태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라. 원고 전 는 1991. 1. 17. 제3회 롯데제과주식회사 전속모델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1974년생의 여자이고 이 사건 잡지가 발행된 1993. 1.경에는 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중의 대학생으로서 소외 서울방송의 2기 탤런트로 활동중이었으며, 원고 서 은 1972년생의 여자로서 그 무렵 대학의 졸업을 앞둔 상태의 대학생으로서 역시 서울방송의 2기 탤런트로 활동중이었고, 원고 김 은 1973년생의 여자로서 당시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때에 원고들은 압구정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진에 원고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거는 듯이 보이는 젊은 남자는 원고들에게 업소를 선전하는 명함을 건네주던 사람이었다.

마. 이 사건 사진은 피고가 고용하고 있던 소외 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원고들 모르게 촬영되었고, 「주니어」의 1993. 1.경 발행부수는 약 22,000부 정도이고 정기구독이나 가두판매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국의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살피건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과소비와 향락적 생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기사의 중간에 우연히 압구정동의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던 중에 젊은 남자가 업소 선전용 명함을 제시하는 것을 스쳐보며 웃는 원고들의 사진을 삽입하여 놓았는데, 이 사건 기사를 읽은 통상의 독자들이라면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이 위 기사에서 향락적, 소비적, 무절제적으로 묘사된 속칭 「오렌지족」이거나 그러한 「오렌지족」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오렌지족」의 유희상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여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얼굴과 전신이 잘 나타나고 마침 젊은 남자가 원고들에게 접근하는 듯한 모습으로 찍힌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기사 중에 삽입된 다른 사진들보다 훨씬 큰 크기로 기사에 넣은 이 사건 잡지의 편집 의도도 독자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전하려고 한 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신분, 이 사건 사진의 촬영경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얼굴윤곽의 분명한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배포부수와 배포지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는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는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일 다

음날인 1993. 1.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및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20.

□

재판장 판사 손 기 식
판사 이 현 철
판사 전 명 호

기계식 ABS의 성능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였고, 보도의
목적이 일반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1.자 판결(93가합2144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11일 자동차의 기계식 ABS(ANTI-LOCK BREAK SYSTEM의 약자, 미끄럼 및 잠김방지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유명실업 대표인 이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판매업자들의 광고로 인하여 기계식 ABS를 신뢰하고 이를 구입

장착하는 현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계식 ABS에 대한 과신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 방지란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실험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어 이 사건 보도가 허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BS-1TV 1993년 10월 25일 저녁 9시 뉴스「ABS 과신은 금물」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물을 뿌린 철판 위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 조치를 취했을 때 기계식 ABS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별로 없었으나, 만도기계의 전자식 ABS를 장착한 차량은 회전하지 않고 정지하였다고 보도하자, 원고는 비상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기계식 ABS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강조하였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3서울중재22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에는 원고의 회사명이 거명되지 않았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144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정 명 석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변론종결 : 1994. 10. 1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부
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2,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내지 10,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9호증, 을제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3. 25. 유영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포츠용품 및 자동차부품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93. 10. 5. 소외 주식회사 유진산기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가스식 및 유압식 에이 비 에스(ABS는 ANTI-LOCK BREAK SYSTEM의 약자로서 미끄럼 및 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이다)를 매수하여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위 소외 회사에게 금 8,000,000원을, 같은 달 25일 금 18,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에이 비 에스 400개(출고가격 가스식 1개에 금 80,000원, 유압식 1개에 금 43,000원)를 납품받았고, 같은 날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국대리점 및 딜러모집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ㄱ. 유영 에이 비 에스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작동시 약 10 내지 15회의 펌핑 압력파가 발생, 더블 브레이크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탁월한 제동력은 일반 브레이크에 비해 제동거리를 현저히 단축시키며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 눈이 많이 쌓인 빙판길, 그리고 각종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므로 마음놓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다.

ㄴ. 빙판길 및 빗길에서도 급제동시 차량선회 방지 및 조향을 유지한다.

ㄷ. 돌발사태시 급정거와 동시에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ㄹ. 시속 100Km 주행시 제동거리가 최대 30%까지 단축된다.

ㅁ. 고속코너링시 급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하며 전복위험이 감소된다.

ㅂ. 브레이크 잠김현상을 방지하여 핸들조작이 용이하며 타이어의 수명을 혁신적으로 연장한다.

ㅅ. 유압식 135,000원, 가스식 금 260,000원

나. 한편, 피고 공사에 소속된 기자인 소외 정 〃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일반 운전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한

과신 및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할 생각으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소외 주식회사 만도기계의 기술연구소에 실험요청을 하여 위 연구소가 제공하는 에이 비 에스 테스트 트랙에서 1993. 10. 22. 아무런 에이 비 에스도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위 유진산기가 생산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자동차, 위 만도기계에서 생산한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자동차의 3종류를 가지고, ㄱ. 눈이 내린 빙판길과 마찰계수가 거의 비슷한 조건인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시속 60킬로 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 했을 때 바퀴의 잠김상태등을 보는 것, ㄴ. 철판 노면과 아스팔트 노면의 이질 노면위를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급정거 했을 때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 ㄷ. 아스팔트길에서 급정거 했을 때 바퀴의 잠김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의 물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세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위 실험결과 위 첫번째의 실험에서는 에이 비 에스를 달지 않은 차와 마찬가지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차도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두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 종류의 차 모두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세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종류의 차 모두 앞의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그 물체와 충돌함으로써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미끄럼 방지효과가 별로 없었으나 만도기계의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차량은 물을 뿌린 철판 위에서 급제동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회전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였다.

다. 위 실험결과를 취재한 위 정 은 위 전자식 에이 비 에스 장착 차량의 실험부분을 빼고 그 취재내용의 일부를 편집한 다음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로부터 보도결정을 허락받고, 1993. 10. 25. 피고공사의 21 : 00 뉴스 시간에 「에이 비 에스 과신은 금물」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1993. 10. 25. KBS 9 뉴스 정 리포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내용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중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또는 바퀴잠김 방지장치를 가르켜 에이 비 에스 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완성된 자동차에 미리 장착되어 출고되는 전자식 에이 비 에스와 차량출고 후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이는 유압식과 가스식 및 전기식 에이 비 에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가 있는데, 전자식 에이 비 에스는 차량바퀴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속도센서가 감지한 각 바퀴의 회전속도에 따라 최적의 제동조건을 찾아 자기진단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 전자제어장치(ECU)와 위 전자제어장치의 신호에 따라 각 바퀴의 유압을 제어하는 하이드로릭 유닛(Hydraulic Unit), 그리고 전자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브레이크의 유압을 증압 또는 감압시키는 장치인 모듈레이터(Modulator) 및 전자제어장치가 분석한 작동신호에 맞춰

각종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릴레이박스(Relay Box)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유압식 에이 비 에스는 원통형의 금속용기 내에 합성고무, 코일스프링 등을 내장하고 이것의 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가스식 에이 비 에스는 위와 같은 금속용기 내에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엄밀한 의미의 에이 비 에스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고 디스크나 드럼의 변형으로 차량제동시 발생하는 브레이크 유압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는 압력 평형기(Pre-pressure Accumulator)의 일종인데, 현재 국내에는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에이 비 에스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위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브레이크의 성능이 우수한 에이 비 에스라고 광고하고 있다.

마. 한편, 전자식 에이 비 에스는 만도기계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산 전자식 에이 비 에스와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산 전자식 에이 비 에스가 국내에 다량 보급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에 의하여 그 성능에 관한 시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이를 판매하는 업체가 국내에 약 5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 가공형태로 아무런 기술적 지식의 축적없이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는 자동차의 출고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경정비업소에서도 대량으로 장착(브레이크 계통의 장착은 단순점검, 정비외에는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 소비자 가격이 전자식에 비해 약 1/5 정도로 저렴함에도 그 성능이 우수하다는 광고등에 힘입어서 현재 국내의 많은 자동차에 기계식 에이 비 에스가 장착 보급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 광고를 그대로 믿고 자동차 경정비업소등에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쉽게 구입, 장착한 후에 그 성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례등을 소비자보호원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등 최근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이 사회문제화되자 국내 언론매체가 이에 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내용을 이유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로서, 이 사건 보도가 있는 후에 원고가 판매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관하여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자들이 그 계약을 모두 해약하고 공급받은 에이 비 에스 제품을 반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 간접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에 상당한 위자료의 청구

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내용 : 피고소속 기자인 소외 정 ○○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에이 비 에스의 성능 실험을 함에 있어 에이 비 에스에 대한 소개자료, 테스트 장소 및 테스트 조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자체 실험이 아닌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주식회사 만도 기계라는 특정업체가 제공한 장소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기계식 에이 비 에스 제조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성능실험을 하였는데, 위 정 ○○은 위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의 신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장점을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가 일률적으로 그 성능이 없으며 대부분 판매업자나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기술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는 과장보도를 하였고, 또한 만도기계는 생산하는 전자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관한 실험결과에 대하여는 위 보도물에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위 실험장소가 철판 위에 물이 뿌려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단지 미끄러운 길이라고만 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비에 젖은 일반 도로에서 조차도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갖게 하였고,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실험조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한 것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을 악의적으로 감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그 부당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언론기관에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 주체의 보도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방송보도 주체에게 요구되는 보도자로서의 주의 의무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인의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자로서의 「균형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 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소외 정 ○○○ 기자와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

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적으로 그 성능에 대한 시비가 덜하고 에이 비 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장착되는 관계상 그 유통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도 덜한 전자식 에이 비 에스에 비하여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에이 비 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고 있고 자동차의 출고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그 유통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표출되고 있고 그 성능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된 점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실험결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논평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및 그 보도내용을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전자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과의 비교를 하지 않은 점이나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실험장소에서 실험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위 정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관한 최근의 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기로 한 점에서 그 보도의 동기에 어떤 편견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판매업자들의 광고로 인하여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신뢰하고 이를 구입 장착하는 현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과신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위 실험결과를 취재 편집한 이 사건 보도내용과 기계식 에이 비 에스 판매업자들의 광고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광고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이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원고 광고에서 밝힌 조건인 눈 쌓인 빙판길과 거의 같은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은 겨울철에 흔히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원고가 광고한 바와 같은 성능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밖의 실험에서도 원고가 광고한 것과 같은 성능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으며(편집하여 방영되지 않은 부분은 보도 내용의 객관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유통상의 문제점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정은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 신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장점 및 자료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듣고 교부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실험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어 결국 이 사건 보도가 허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이므로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중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과신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도 이 점만 가지고 위 보도내용이 보도의 객관성을 잃은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이 피고 공사 직원의 고의나 상당한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1.

□

재판장 판사 이 종 찬
 판사 박 성 수
 판사 박 범 계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 모두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7. 16.자 판결(92고단1325)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7.자 판결(92노5394)

대법원 1993. 6. 22.자 판결(92도3160)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93년 6월 22일 서울 구로구 홍기운수(주) 노조
위원장 정 씨에 대한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동기가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처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발견, 이를 대자보로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
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다며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서울형사지방법원 제4부)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고단1325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적 충남

검 사 : 이영만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9의 6 소재 흥기운수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바, 1991. 4. 1.경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권 의 재임 중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동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동인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 4. 20.경 위 회사내 배차실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채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 「수재의연금에 대하여 지부에서 우리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분회장 권진환 씨는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 「조합비 전별금 경조비에 대하여 전임자 권 은 업무를 집행한 1988. 7. 1.부터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전별금 및 경조비는 한푼도 낸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권진환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2. 7. 16.

판사 조 배 숙

2審 判決文

사 건 : 92노5394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적 충남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이동근

변 호 인 :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7. 16. 선고 92고단1325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92. 4. 경 흥기운수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전임 노동조합장인 권 이 재임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은 비위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권 이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합 운영세칙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의 강구와 함께 조합의 건설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것이고, 한편 위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모두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위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하

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1991. 4.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공개감사 결과, 위 권 이 전임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리한 업무 중 판시 대자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지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판시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먼저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아닌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사실이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면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권 이 처리한 업무 중 그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위 권 이 위와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는 취지로서 보여지는 바,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분회 운영세칙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회계감사결과를 분회장에게 통고하고 총회(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의 형식이나 취지는 위 세칙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결과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위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는 조합원들만이 드나들거나 사용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관리직 사원 및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배차실로서(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가 배차실이 아니라 기사대기실이라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정 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위 장소에 부착할 경우, 위 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위 대자보를 보게 됨으로써 위 권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소의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감사결과와 보고방법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자보 부착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의문이며(대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통보 등의 방법도 충분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다는 일면이 엇보인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17.

재판장 판사 강 완 구
판사 송 우 철
판사 김 인 겸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2도3160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적 충남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임두빈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7. 선고, 92노5394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흥기운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바, 1991. 4. 1.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권 의 재임 중의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피해자를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 4. 20.경 위 회사내 배차실 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체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이 뒤에는 「체육복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 「수재의 연금에 관하여,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분회장 권 씨는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이 뒤에는 「수재의연금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 「조합비 · 전별금 · 경조비에 관하여, 전임자 권 은 업무를 집행한 1988. 7. 1.부터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전별금 및 경조비는 한푼도 낸 사실이 없다」(이 뒤에는 「전별금등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써, 제1심은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다는 일면이 엿보인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 및 수단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1991. 3. 21. 선거에 의하여 임기 3년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흥기운수 주식회사분회(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분회장(이 뒤에는 조합장이라고 약칭한다)으로 당선되어 4. 1. 취임하였는데, 종전에는 조합의 운영이나 회계감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간에 오해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장의 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의 운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였던 사실, 조합의 임원들이 1991. 4. 8.부터 4. 12.까지 사이에 분회 운영세칙(공판기록 제57면 내지 제75면)에 따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공개적으로 한 결과,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 조합장인 피해자 권 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리한 업무 중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 회계감사를 한 조합의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주된 동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에 실시될 조합장의 선거에서 위 권 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검사가 작성한 권 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위 권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 점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은 위 권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대자보의 표현방법이 단순한 회계 감사결과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전임 조합장인 위 권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배차실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배차실이 주로 조합원인 운전자들의 대기실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운전자등 조합원들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배차실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 대자보를 부착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신, 원심 증인 정의 각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대자보의 사진들(제13면, 제14면), 김 및 이 작성의 각 진술서(제48면, 제50면), 간이세금계산서(제49면), 영수증(제51면), 수재의연금 지출관계서류(제52면 내지 제69면)의 각 기재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을 알게 된 근거로는, (1) 「체육부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조합원인 김이 조합이 이미 1벌에 금 18,000원씩 주고 구입한 체육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를 뿐 상표와 천이 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금 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와 비교하여 보니 품질이 같은 것이었고(피고인은 위 김이 구입한 체육복을 대자보 옆에 함께 부착하여 공개하였다), (2) 「수재의연금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인 이이 위 권으로부터 수재의연금이 나왔으니 통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통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재의연금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며(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모두 6명이었다), (3) 「전별금등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로부터는 조합비·전별금·경조비를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징수하였는데, 위권진환으로부터는 조합비만 불규칙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징수하였을 뿐 전별금과 경조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개적인 회계감사의 결과 드러난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공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위 권 이 조합장으로 재임할 당시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터에,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위 권 이 조합장으로 처리한 업무 중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중의 일부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는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의 여부와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검토했다. 다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2.

□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주 한
주심 대법관 김 용 준
대법관 천 경 송

대법원 1993. 6. 22.자 판결(93도1035)

국내언론관계 판례집 261

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인엽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교원보직인사에 관한 적시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학원정상화라는 선인학원 교직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에 의한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는 다시 상고를 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고단1106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서울

본적 경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검 사 : 이 한 승

변 호 인 : 변호사 안 수 일

주 문 :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설립자인 백 이 1981년경 불법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된 이후 법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학원 운영을 국가에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학내 분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산적 빈발하게 되어 학원 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심각함을 느끼고 있던 중, 1991. 7. 15. 위 학원 산하 16개 교육기관의 교수, 교사,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선인학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기 위하여 학원내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수십명의 추진위원들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선인학원 현 재단을 전면 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위 위원회 명의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학원내 교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게 된 것이다.

증 거: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강 의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유인물 사본의 기재.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위 유인물은 학내문제들에 관하여 100가지의 사례를 10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12장에 걸쳐 작성한 것인데 그 가운데 위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부분은 현 재단이 백 의 인사 교육운영 등에 관한 불법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맹종하는 문제, 8가지 사례중 3번째의 사례(교원 보직인사 전횡)에서 기재한 것으로 「교감 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 학원 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 에 대한 충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라고 위 유인물 중 극히 짧은 부분을 할애하여 적시한 부분이다.

그런데 위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위 학원내의 교장인 김 , 로, 고 을 일컫는 것이다.

즉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은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여져 있는데, 위 김 , 로, 고 등은 모두 교감 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이른바 추천검정(위 시행령 별표 3의 2)에 의

한 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는 교원 인사에 있어서 교직경험을 거쳐 주임, 교감 자격의 직책을 거친 후 교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와 같은 일반 관행을 거치지 않았고, 문교부에서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자격 신청을 되도록 억제하도록 한 적도 있었음에도 백인엽은 교감 자격이 없는 위 사람들을 추천검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교장으로 임용한 것이므로 인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라는 점을 밝힐 의사로 위와 같이 「무자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고, 위 고 은 1981. 3.경 위 적시와 같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것인데, 이로써 김 , 로, 고 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유인물의 작성 동기 그 경위, 사실공표를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한 점, 유인물 전체의 내용 및 그 중의 사실 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선인학원 산하 교직원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 :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기록에 편철된 교원 자격증 사본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2. 7. 15.

판사 추 미 애

공소사실

피고인 장 , 동 장 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인천대학교 교수들이고, 피고인 이 은 위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선화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각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위 법인측과 재단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여 오던 중 공동하여 1991. 7. 18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선인학원 현 재단을 전면 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목하에 「교감 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200여부를 작성, 그 무렵 선화여상 교사 황등 위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선화여상 교장 김, 선인고교 교장 로, 선화여중 교장 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審 判決文

사 건 : 92노892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서울

본적 경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항 소 인 : 검 사

검 사 : 이 경 응

변 호 인 : 변호사 안 수 일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2. 7. 15. 선고 92고단1106 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선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설립자인 백

의 영향력 배제 및 학원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유인물에서 구체적으로

등 교직원의 이름을 적시하여 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 백 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도만을 이유로 교감, 교장이 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써 개인적인 비난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오로지 학원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경위 및 배포의 대상, 이 사건 사실 적시 부분을 포함한 유인물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이를 수증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25.

재판장 판사 현 순 도
판사 신 태 길
판사 김 동 국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035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본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상 고 인: 검 사**변 호 인:** 변호사 안 수 일**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2. 25. 선고, 92노892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해자 김 및 고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장 및 장 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인천대학교의 교수들이고, 피고인 이 은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선화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바, 학교법인측과 재단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다투어 오던 중 공동하여, 1991. 7. 18.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의 명의로 『선인학원 현재단을 전면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목하에 「교감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 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200여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선화여상 교사 황 등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선화여상 교장 김 , 선인고교 교장 김 , 선화여중 교장 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백 이 1981년경 학원

운영의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학교법인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학원운영을 국가에 맡기기로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내에 이로 인한 분류사태가 빈발하게 되자, 학교법인 산하의 16개 교육기관의 교수·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1. 7. 15.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한 사실, 위 위원회는 선인학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기 위하여 학원내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수십명의 추진위원들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선인학원 현재단을 전면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위 위원회의 명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관계당국에 청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학원내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교직원 1,200여명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사실, 위 유인물은 학내의 문제점에 관한 100가지 사례를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12장의 분량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가운데 공소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인사교육운영에 관한 불법,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맹종하는 문제」에 관한 8가지 사례 중 3번째 사례(교원보직인사의 전횡)로서 위 유인물 중 극히 짧은 부분을 할애하여 적시한 것인 사실, 위 김 · 로 · 고 은 모두 교감자격이 없이 이른바 추천검정에 의하여 교장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또한 위 로에 대하여 「무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자격신청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에 있어서 일정한 교직경험 및 교감의 자격과 직책을 거친 후 교장으로 승진하는 일반적 관행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백 이 교감자격이 없는 위 김형로를 추천검정의 방식을 통하여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교장으로 임용하여 교원인사의 원칙을 무시하였다는 점을 밝힐 의사로 한 것이며, 위 고 은 1981. 3.경 위 유인물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인물 중 교원보직인사에 관한 적시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또 피고인들은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점, 위 유인물의 전체적 내용 및 그 중 위 사실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사실적시행위는 오로지 학원정상화라는 위 선인학원 교직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 2. 14. 선고 88도899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 배포대상,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포함한 위 유인물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중 피해자들과 관련된 교원보직인사의 전황에 관한 부분은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내의 문제점과 학원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로 교원의 인사에 원칙이 없음을 거론한 것으로서, 이는 선인학원의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임이 분명할 뿐더러, 피고인들이 선인학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공동의장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작성한 위 유인물에 동료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한정하여 이를 배포한 이상, 이와 같은 유인물이 배포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고 또 피고인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주된 목적은 선인학원의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자.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김 이 교감자격증을 수여받고 일정한 기간 이상 교육경력에 있어서 교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추천검정의 방법(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따라 교장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위 김 에 관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충성과」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위 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 로가 무자격임에도 선인고교 교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사실의 적시는, 위 김 에 대하여는 「교감자격증도 없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위 로에 대하여는 「무자격의」라고 표현하는 등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교육법상 교장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로가 교장으로 임명될 법적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로가 1976. 12. 29. 이른바 추천검정의 방법에 따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교장의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6면, 82면)만 있을 뿐, 위와 같은 교장자격의 인가가 그후에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로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음으로 위 고 에 관한 부분을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고 이 1981. 3. 경 정원초과입학문제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위 고 을 학원비리주모자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의 정도가 지나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고 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도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검사의 나머지 상고(피해자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를 기각하기로 관

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2.

□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주 한
주심 대법관 김 용 준
대법관 천 경 송

.....

작중인물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성폭행사실을 흥미 위주로 묘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27.자 판결(92고단3622)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김상근 판사는 1993년 8월 27일 피고인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했다.

피고인 이 씨는 주간연예스포츠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김 씨 사건」 취재과정에서 모은 자료와 傳聞을 기초하여 이를 성폭행 현장소설이라는 명목하에 「나는 사람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중인물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피해자 일가의 실제 생활사를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소설책을 발행, 성폭행 사실을 성적 흥미위주로 묘사하고, 피해자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미친 여자로 지칭되는 것처럼 기술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 92고단3622(분리)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현재 소재 불명

최후 주거 서울

본적 서울

검 사 : 오 광 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98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990. 12. 15.경부터 1991. 10. 30.경까지 주간 “연예스포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1.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8 소재 이 사건 공동피고인 탁 경영의 “도서출판 대성”이라는 상호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연예스포츠”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김 계 대한 살인 피고사건의 취재과정에서 모은 자료와 관련자들의 전문에 기초하여 성폭행 현장소설이라는 명목하에 위 김 이 9세때 공소외 송 에게 강간을 당한 충격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자 모든 것이 송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어오던중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파탄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형태로 각색해 보겠다고 위 탁 에게 제의하자, 위 탁 은 당시 위 사건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차에 이를 소설화하여 출판하면 상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원고를 가져오면 출판을 해주겠다고 하여 서로 공모한 다음, 1991. 9. 15.경 피고인이 작성한 원고에 따라 위 탁 이 위 출판사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작중인물에 피해자 김 , 및 김 , 김 등 그 가족들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김 일가의 실제 생활사를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의 소설책을 발행하면서, 제59면에서 제64면까지 “송씨는 온몸을 저리게 하는 전을 같은 것을 느꼈다. 아홉살짜리 어린 계집애 생각만 하여도 흥분이 그의 온 혈관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송씨의 거친 손이 기의 팬티속으로 들어가 채 성장하지도 않은 여자아이의 그곳을 만지기 시작했다.” “송씨는 거친 손으로 이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내렸다. 이의 성숙되지도 못한 여린 그곳은 송씨의 손놀림에 의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송씨는

이의 가냘픈 양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억지로 벌렸다. 송씨는 자신의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끌어 안았다. 그러나 송씨는 쉽게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다. 몇번을 되풀이 하던 송씨는 입으로 침을 고여 내어 이의 그곳에 칠하고 있었다. 그리곤 자신의 그 부분을 이 몸 안으로 넣었다.” “송씨는 이가 기절하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일어나

이의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훑어보기 시작했다. 송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부분을 이의 그곳으로 밀어 넣어 보았다”라고 김 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성적 흥미위주로 묘사하고,

제135면에 “ 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의 옷도 강제로 벗겼다. 부남이는 알몸이 된 을 보자 아홉살때 송씨와의 일이 어지러히 떠올랐다. ‘잘못했어요’ 이는 그저 무서워 아홉살때처럼 무조건 빌었다. 그렇지만 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를 강제로 짓밟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는 밤이 되는 걸 두려워 했다. 밤만 되면 되살아 나는 악몽때문에 미칠것만 같았다.” 제230면에 “ 이는 부산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웃사람들과의 다툼도 끊일 날이 없었다. 동네사람들이 둘만 모여 수근거리도 이는 욕을 하고 대들었다. ‘미친년이래, 미친년이래’ 동네아이들이 부남이가 지나가면 쫓아다니며 이를 놀렸다” 제280면에 “또 시작이야.

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20대 여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그냥놔둬, 어렸을때 당했던 일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제정신으로 사는데 이상하지’ 40대 여자가 두둔하고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미친년 미친짓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같이 저런 꼴을 보면서 살아요, 재수가 없을래니까 미친년이랑 한방을 쓰게 되는군’ 제282면에 “의사가 흥분한 이를 진정시키려고 몸에 손을 대자 이는 놀라서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 ‘가까이 오지마, 내몸에 손대면 가만 안놔둬’ 의사가 이를 구슬러 얘기를 하게 하려 했으나 이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구석으로 파고 들었다”라고 김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도 미친 여자로 지칭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제240면에 “ 이는 송씨가 아까부터 히죽히죽 웃는게 눈에 거슬렸다. 송씨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또 고개를 들었다” 제244면에서 제246면까지 “ 이는 벌떡 일어나 송씨에게로 다가갔다. 칼을 꼭 쥐채 송씨의 아내를 이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 부남이는 칼을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는 허리 왼쪽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송씨의 하복부를 향하여 힘껏 내리찔렀다. 는 울면서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다. 이는 옆으로 쓰러지면서도 칼을 움켜 잡고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깨끗이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버렸다. 이는 눈위에 주저앉아 울었다. 칼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라고 김 의 살의와 잔인성을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을 게재하여 발간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과 탁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소설 1권(증제1호)의 현존 및 기재내용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 이 작성한 미상전과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김 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993. 8. 27.

□

판사 김 상 근

비방할 목적으로 최 회장이 통일교와 관련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를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30.자 판결(93고단178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4.자 판결(93노6952)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4일 조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 원

심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피고측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은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일교와 최 일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함으로써 최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피고 조 씨는 1993년 2월 「최 의 일가가 통일교 의식인 피가름의 혼음의식을 했다」, 「최 이 63빌딩을 건축하고 전주대학을 인수하며 극동아세아방송국 이사장에 취임하고 종교잡지를 발행하며 기독교계에 거액의 현금을 하는 것은 모두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통일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책자로도 발간하자 최씨의 고소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서울형사지법 제5단독 한덕렬 판사는 「피해자 최 은 통일교를 믿거나 이에 관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 피고는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93고단178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조

주거 서울

본적 전남

검 사: 봉 옥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책자 1권(중재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피해자 최 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 최 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과거 통일교를 믿은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 통일교도가 아니고 피

해자 최 ○은 통일교를 믿거나 이에 관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통일교와 관련시킨 허위의 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와 같이 복역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무마비 형식으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2. 12. 초순경 서울 ○ 피고인의 집에서 ‘신동아그룹 및 4음녀와 통일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최 ○의 모, 누나, 처가 통일교 의식인 피가름의 혼음의식을 하여 통일교 교주 문 ○과 성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63빌딩을 건축하고 전주대학을 인수하며 극동아세아방송국 이사장에 취임하고 종교잡지를 발행하며 기독교계에 거액의 현금을 하는 것은 모두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통일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581 선교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김 ○에게 이를 보여 주면서 통일교의 진상을 고발하고 그 동조자인 피해자도 기독교계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허위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같은달 중순경 같은 교회의 목사인 구 ○에게, 같은달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독교신문사 발행인인 이 ○에게 위 유인물을 보여 주면서 허위 내용을 설명하는 등 기독교계 인사 수십명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고, 계속하여 1993. 2. 일자불상경 ‘세계한국기독교 종교개혁 추진을 위한 문선명 통일SEX집단 개신교대책추진준비협의회’라는 단체의 명칭으로 ‘NEW COMMUNISM OF THE SEX SATYRIASIS NYMPHOMANIA 문 ○ 통일교 집단 THE WIFE CHANGE SHOW SEX CLUB 문 ○-박 ○ (최 ○ 계모), 최 ○-이 ○ (최 ○ 생모), 사음녀-이 ○ (최 ○ 생모), 최 ○ (최 ○ 첫째 누나), 최 ○ (최 ○ 둘째 누나), 이 ○ (최 ○ 처)’라는 표제를 붙인 책자(증제1호)를 발간하여, 위와같은 허위 내용을 다시 게재하면서, ‘최 ○의 첫째 누나인 최 ○이 자기 생모 이 ○을 모 여관으로 안내해 혼음(피가름)영체교환을 했다고 해서 최 ○을 음행매개혐의로 구속했다고 검찰은 신문에 발표했다’ ‘문 ○이 간음을 얼마나 범했나 일차적으로 신동아그룹 최 ○ 일가, 사음녀, 즉 생모 이 ○, 큰딸 ○, 둘째딸 ○, 며느리 ○ 등’ ‘최 ○이 그의 모친 이 ○을 모 여관에 문 ○과 혈통복귀 혼음행사를 할때 여관방밖에서도 두 무릎을 꿇고 2내지 3시간 기도를 드렸다’ ‘피가름의 씨앗 최 ○, 피가름의 원조 문 ○의 통일교 집단에 전 가족이 몸 담고 있을 때 최 ○ 생부 최 ○는 그의 처 이 ○을 피가름의 대부분 문 ○에게 인계하고 특별히 남자를 잘 홀기는 박 ○은 문 ○의 여인인데 신동아그룹을 먹기 위하여 전략상 최 ○에게 바꿔치기한 것이 1968. 1. 22. 피가름의 행사인 희망

의 날에 행하여졌다고 전한다' '최 의 첫째누나 최 이 피가름의 원조 문 과 희망의 날 행사 혼음을 하고, 생모 이 을 통일교에 끌어 들이고 이화여대에 다니던 둘째 최 를 통일교에 끌어 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의 생모 이 과 피가름을 했으니 의붓아버지격이요, 첫째누나 과 둘째누나 가 피가름을 했으니 문 의 매부격이며, 문 과 이 가 피가름을 했으니 한집 동서지간이 된 꼴이라 했으니 폭소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분노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 일가는 피가름원조 문 통일교집단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마누라마저 문 에게 빼앗기고 대기업마저 통일교에 넘겨주는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63빌딩을 세우기 위해 국세청과 서울시 등 모든 공무원에게 돈을 틀어막는 상태였다고 들립니다' '통일교자금이 최 를 통하여 이 에게 건너와 63빌딩이 건립된 것이다' '최 과 이 의 3억 거액이 통일교 돈이라는 말을 누가 한 철하목사에게 말하였다' '전주대학교까지 통일교계통의 교육계책임자인 윤 을 시켜 인수하려 하였던 것은 신동아그룹이 통일교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가 햇불선교회 선교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기본수법 피가름현장으로 인도되어 목회 일선에선 통일교의 금력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일생을 파멸로 끝나는 비극을 연출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거역하면 섹스의 사진이나 세미나 후 기념사진으로 협박하여 그들의 종으로 이용한다' '1984. 여름 여의도에서 빌리그래함 목사 부흥집회때 이 는 1억을 현금하였는데 그돈이 통일교의 검은 돈일진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는 통일교 섹스집단 검은 돈 잘 받아먹는 양의 가족을 쓴 이리떼 목사들 끄는 지 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수는 없지만' '신동아그룹은 양분되어 통일교로 넘어갔고 63빌딩 및 대한생명까지 문서적으로 주식의 60%이상 통일교로 넘어간 상태이다'라는 등 허위 내용을 게재하여 같은해 3. 5. 경 한국기독교사회문제대책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김 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 위와같은 방법으로 이를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최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책자 1권(증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선택)

1. 형법 제57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993. 8. 30.

판사 한 덕 렬

2 審 判 決 文

사 건 : 93노695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조

주거 서울

본적 전남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봉 옥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30. 선고, 93고단 1788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출판한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통일교와 최 일가의 관계에 관한 진실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를 출판한 의도도 목사로서의 종교적 사명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 것일 뿐 위 최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거나 정당방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은 이와 똑같은 행위로 이미 1986년도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일교와 위 최 의 일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함으로써 위 최 의 명예

를 훼손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법리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 최 ○ ○ 에 대한 명예훼손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을 복역한 이후 다시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4.

□

재판장 판사 박 송 하

판사 김 용 상

판사 오 석 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1991. 2. 26.자 판결(90고단108)

춘천지방법원 1993. 11. 4.자 판결(93노225)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4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만원을 선고, 1심 판결보다 다소

가벼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나 최씨가 우유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했고 학교법인을 설립,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8, 9월동안 각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와 목장부지를 확장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991년 2월 26일 춘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1審 判決文

사 건 : 90고단108 가. 환경보전법 위반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초지법 위반

라. 건축법 위반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바.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강원

본적 서울

검 사 : 이 중 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8. 7월 초순경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조업중인 위 파스퇴르유업(주) 내에 환경청장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세척시설, 윤활유 교환도크, 이화학 실험실 등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2. 1989. 5월 중순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1의 11 답 1,667평방미터 중 662평방미터와 같은 리 1331의 23 답 1,232평방미터 중 571평방미터 등 합계 1,233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주차장 용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고,
3. 같은 날 위 같은 리 1331의 11, 같은 리 1331의 23 지상 위에 횡성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함석, 합판 등을 사용하여 건평 65.61평방미터의 공사용 가설건물 1동을 축조하고,
4. 같은 해 9. 16. 위 같은 리 1295 전 1,098평방미터 중 687평방미터, 같은 리 1296 전 1,289평방미터, 같은 리 1297 전 3,068평방미터 중 2815평방미터 등 합계 4,791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하는 등 이를 전용하고,
5. 같은 날 위 같은 리 산 198의 10 목장용지 5,965평방미터 중 1,396평방미터의 초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이를 전용하고,
6. 같은 해 9. 18.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위 같은 리 1295, 같은 리 1296, 같은 리 1297 지상 위에 횡성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평 365.49평방미터와 건평 234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건축하고,
7. 같은 해 9. 30. 위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조업을 하며 배출시설인 세척설비에서 배출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 약 2톤을 하수구에 유출시켜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상운영 하지 아니하고,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죄 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판시 제3죄의 벌금형을 병과)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판시 제8사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판시 8, 9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것이 학술잡지라든가 전문잡지에 실리는 경우와 일반대중이 보는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는 경우는 위 조문상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건과 같이 어떤 사람의 발표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그 발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과장, 그 내용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는 것 등의 내용이, 전문지에 실린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전체 글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허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내용이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면서 이러한 자의에 의한 삽입, 과장, 추측 등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 부분만을 큰 글로 실어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특성(일반인은 강조된 부분만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얻거나, 강조된 부분에 비추어 다른 부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는 광고주가 그러한 광고로부터 얻으려는 이익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광고주는 사실상 그 강조부분으로 광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서도 책임은 강조부분만이 아닌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만 지려고 한다면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을 고려하여 일반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 및 이 강조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 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그 허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설령 전체적으로 보아 광고의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삽입, 과장, 추측 등으로 강조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구체적,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발표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임의의 과장, 추측, 삽

입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광고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는 모두 거짓 또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광고문안의 내용인,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피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부분 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이라는 부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1. 2. 26.

판사 지 대 운

〈별지〉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류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의를 통하여,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소비자보호원이 허구적인 분석으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피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자	신문명	내용
1	89. 8. 28.	동아일보 1면	소비자보호원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동원의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국민이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다는 내용
2	89. 8. 29.	세계일보 3면	
3	89. 8. 30.	조선일보 3면	
4	89. 9. 7.	한국일보 1면	
5	89. 8. 30.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부정확하고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건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이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내용
6	89. 9. 1.	한국일보 3면	
7	89. 9. 5.	동아일보 3면	
8	89. 9. 8.	국민일보 3면	
9	89. 9. 1.	한국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과학술어 조차도 자기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여 국민보건에 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내용
10	89. 9. 5.	동아일보 2면	
11	89. 9. 8.	국민일보 2면	
12	89. 9. 6.	동아일보 1면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 관계직원은 분석을 통하여 좋은 우유에 비타민 씨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씨가 많다. 비타민 씨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 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씨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 했을 때 비타민 씨가 많다고 하였다는 내용
13	89. 9. 11.	경향신문 3면	
14	89. 9. 12.	조선일보 1면	
15	89. 9. 11.	경향신문 2면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내용
16	89. 9. 13.	조선일보 3면	
17	89. 9. 13.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우유성분에 관하여 장난같은 무기분식데이터를 내놓고 마치 이것을 우유의 생명인 칼슘, 단백질 등 영양과 관계되는 양 발표하였다는 내용
18	89. 9. 15.	동아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이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이름을 빌려 악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의 전화 및 충고가 있을 정도로 사회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225 환경보전법 위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강원

본적 서울

항 소 인 :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이 현 득

변 호 인 : 변호사 윤 승 영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91. 2. 26. 선고, 90고단108 판결

한송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유지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첫째, 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중 5 내지 17의 광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인 권 또는 김 개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 광고들의 내용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명예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광고들으로써 위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광고는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상무 윤 과 직원 정 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윤 이나 정 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도 위 광고문안을 직접 보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의 주체가 아니다.

셋째, 어떠한 행위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유의 영양가와 같은 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명되어야 만 비로소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생산하는 파스퇴르우유는 생유를 섭씨 72도 이하의 저온에서 살균하는 것으로 우유 속에 유산균이 살아 있고 카제인기와 결합된 칼슘 및 알부민 단백질이 있으며 비타민 씨(C)가 파괴되지 아니하나, 그밖에 시판중인 대부분의 우유는 섭씨 120~135도의 고온에서 멸균하므로 유산균이 없고 카제인기와 결합된 칼슘중 가열로 카제인기가 떨어져 나가고 인산기와 결합하여 인산칼슘이 되므로 그 10퍼센트 정도만 이 인체에 흡수되고 알부민 단백질 및 비타민 씨(C)는 가열로 파괴되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살균방법에 의한 우유의 영양가의 차이는 무기실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모든 첨단과학실험을 하여야만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무기실험에 의한 실험결과만을 가지고 우유의 질은 모두 같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진실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반박한 이 사건 광고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에서 낸 허위의 광고가 아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진짜 유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온갖 모험을 무릅쓰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기업의 경영인으로서가 아니라 유제품을 만드는 기술자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익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업무에 대하여 광고등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더욱이 이에 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출판물의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및 전체적인 광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 10개 제품을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

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러한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반발하여 게재한 것으로서, 원심 범죄일람표 5 내지 17의 광고 문헌 자체가 「소비자보호원」 권 씨 또는 「소비자보호원」 김 실험실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위 권 나 김 의 사적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의 지위에서 그 업무로서 한 위 우유의 품질 검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어서 이들 광고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범죄일람표 9 내지 11의 광고는 그 문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윤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9. 8. 23. 같은 회사 상무인 윤 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게재 사실을 보고받았고, 같은 달 27.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였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광고는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중인 윤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의 책임을 묻은 것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가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환송전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생산하는 파스퇴르우유는 저온살균법에 의하여 제조되어 영양가의 손실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 있어 초고온살균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른 회사의 우유제품에 비하여 성분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영양가면에서는 훨씬 우수한데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잘못된 분석 항목과 분석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발표하여 일반 국민들이 좋은 우유를 선택하는 것에 혼란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상토론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 의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권 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조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원심의 국립보건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및 아이.디.에프(IDF) 보고서 제132호 등의 참고자료들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출연기금을 재원으로 1987. 7. 1. 설립된 특수공익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제17조에 의거,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1987년경부터 우유의 저온살균방법 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 제품간에 영양가 차이 분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우유의 영양성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공표하라는 여론이 일고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자 소비자보호원에서 1989. 3.경부터 7.경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저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파스퇴르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3·4우유, 두산우유, 롯데우유 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 소비자보호원은 위 시험대상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저온살균 및 초고온살균 제품별로 시장점유율이 크고 서울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였고, 식품학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식품학계 교수 3인, 영양학계 교수 1인, 식품연구기관 1인, 총 5인)의 심의를 거쳐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선정한 후 식품공학을 전공한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동단백질분석기 등 18종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게 한 다음 시험결과에 대하여 다시 위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사실, 소비자보호원이 시험한 항목은 단백질, 칼슘 및 인, 무지고형분, 비타민 씨(C), 성상, 비중, 산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수, 포스파타아제, 유산균수, 용량,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비투(B₂), 비타민 에이(A) 항생물질, 단백질환원가, 카제인, 단백질 등 총 21개 항목인데, 파스퇴르우유의 경우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인, 무지고형분은 최고치, 비타민 비투(B₂), 칼슘, 단백질은 2~3번째로 나타나 초고온살균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고, 비타민 에이(A) 항생물질, 단백질환원가는 5번째, 비타민 씨(C), 카제인은 최저치를 나타내고, 세균수는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3,800마리가 나오고, 유산균도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550마리가 나왔으며, 단백질환원가는 최저치를 나타낸 사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시험항목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러한 항목별 수치를 종합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종합적 평가를 발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유의 단백질이나 칼슘 등 영양가치의 분석은 무기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여서는 안되고 유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함에도 소비자보호원이 단백질 및 칼슘을 무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파스퇴르우유 속의 단백질이나 칼슘이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화학분석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시험검사한 결과이고,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이 열에 의하여 변성된 것으로 이는 단백질의 파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파스퇴르우유가 단백질환원가가 낮은 것은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단백질의 맛에 관련될 뿐이라고 한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무지의 소치이며, 파스퇴르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이 다른 우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온 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유산균도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1밀리리터당 2억 내지 10억 마리 이상이 필요하나, 우유의 유산균은 천연유산균이므로 힘이 강하여 1밀리리터당 550마리만 들어 있어도 우유의 부패를 억제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는 것임에도 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의 수가 너무 적어 있느냐마나하다고 한 것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광고를 일간신문등에 게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임원들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위 시험검사결과 발표에 관해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기분석에 의한 데이터나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와 다른 분석결과물을 제시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보호원의 분석결과를 반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광고를 게재한 사실, 그러나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은 섭씨 62~65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저온장시간살균법,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하는 고온살균법, 섭씨 135~150도에서 2, 3초간 가열하는 초고온살균법이 있는바, 저온장시간살균처리법과 초고온살균처리법 사이에는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온 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순간처리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영양분의 차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것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비타민 씨(C)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타민 씨(C)는 열에 약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많이 파괴된다는 것이 정설이나 비타민 씨(C)는 열 이외에도 태양광선이나 용존산소의 양, 원유에서의 함량 차이 및 열처리시설 등에 함유된 금속이온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이 수거한 각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잘못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소비자보호원은 수거한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른 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우유에 비타민 씨(C)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한 것일 뿐,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C)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나) 식품의 성분 분석방법을 유기분석, 무기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해가 아니고 우유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 하여 그 분석이 연습삼아 재미삼아 한 것이라거나 그

분석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유청단백질의 변성이나 칼슘의 용존 상태의 변화를 영양가의 파괴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라) 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보다 힘이 강하여 적은 수로도 장에 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거나 우유의 부패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주장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하여 처리한 우유의 경우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변성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고온살균처리 우유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어 영양가 면에서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한 우유가 나옴이 사실이나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의 환송전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감정인 이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국립과학기술원의 분석결과보고, 성균관대학교 낙농학과 강 교수의 실험결과에 관한 신문, 잡지 등의 참고자료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 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고 국민 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파스퇴르우유를 개발하여 우유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도 자사제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위 광고 내용에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며, 그밖에 무허가건축, 농지 및 초지전용부분 등을 대부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육

영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기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판시 제1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 2 제1항(판시 제7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판시 제2, 4의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1항(판시 제5의 허가 없이 초지를 전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47조 제2항(판시 제3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판시 제6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판시 제8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판시 제9의 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징역

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3호, 제50조(판시 제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죄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이 법원의 판단에서 본 사유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4.

□

재판장 판사 박 현 수
판사 강 동 필
판사 홍 대 식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상대 후보진영에서 제공한
선심관광을 다녀오는 버스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게재케 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해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1. 15.자 판결(92고합364)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15일 국회의원

박 의원은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8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 문화방송을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로 고소하면서 「위 교통사고 버스는 당 양천갑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버스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언론사에 이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양천뉴스에 의뢰 제작·배포한 것은 명예훼손과 동시에 사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박 의원은, 당 양천갑지구당 당원이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문화방송이 위 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을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도하자, 문화방송을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버스가 당 양천갑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버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지역 신문에 보도를 의뢰, 배포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判 決 文

사 건 : 92고합364 가.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박

당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주거 서울

본적 제천시

검 사 : 전상훈, 송관호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이하 강이라고 한다) 양천갑지구당 위원장으로 14대

국회의원선거에 당 양천갑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1991. 11. 8. 22 : 00경 위 지구당 당원인 공소외 이 공소외 정 운전의 경남 관광주식회사 소속 서울 5바 1121호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1. 11. 10. 오전 6시와 7시 문화방송 라디오 뉴스시간에 위 정 기 위 지구당에서 제공한 선심 관광을 다녀 오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자 1991. 11. 10. 문화방송사장 최 과 위 방송 제2사회부 기자 이 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위 제14대 선거시 피고인의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던 당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하는 내용인 「이 사건을 조사한 양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지구당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날 당 양천갑지구당(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 주기 위해 수안보온천에 보낸 5대의 관광버스중 1대가 사고차량인 것으로 추정되어 저희 지구당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수안보온천에 함께 다녀온 주민제보에 의하면 이날 수안보에 다녀온 버스는 신정2동에 2대 나머지 지역에 3대 등 모두 5대로 그 중 4대는 경남관광 소속이고 나머지 1대는 범아관광 소속으로 그중 1대에는 당 양 의원의 부인도 동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1. 11. 10. 및 같은달 11. 한국방송공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 위 고소장사본을 배포하여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위 양 를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같은달 11. 22 : 00경 당 양천갑지구당 사무국장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의 39에 있는 영일인쇄소에 피고인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허위방송에 대하여 엄중항의하였다는 기사와 피고인의 사진 및 ‘주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사고가 난 지난 8일 수안보에 다녀 온 관광버스들은 당 양천갑지구당(위원장)이 제공한 것들로 신정 2동에 2대 나머지 지역에 3대 등 모두 5대이며 그중 4대는 경남관광소속이고 나머지 1대는 범아관광 소속으로 범아관광버스에는 당 양 의원의 부인이 동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양천 뉴스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2만부를 납품받아 같은달 12. 당 양천갑지구당 당원등으로 하여금 위 양천뉴스 2만부를 서울 양천갑 선거구 관내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같은달 12. 16 : 00경 위 사무국장을 통해 위 인쇄소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양천뉴스 1만 5천부를 납품받아 그때쯤 위와같은 방법으로 양천갑 선거구 관내 일대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위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3. 같은달 말경 위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 인쇄소에 피고인이 당 양천갑지구당 간부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과 문화방송 오보사건은 양천의 명예를 떨어뜨린 수치스런 일로 언론을 이용 당을 음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비열한 음모라는 피고인의 언급 내용이 인용된 기사가 포함된 양천뉴스(특보)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5만부를 납품받은 후 같은해 12월 초순경 그중 5천부는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세 사는 공소의 심 등 5천명에게 우편으로 우송하고 나머지 4만 5천부는 당원등으로 하여금 위 선거구 관내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 복두규가 작성한,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

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복 가 작성한, 검사 작성의 김 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압수된 양천신문(증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991. 12. 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9조(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에는 피해자 양

성우에 대한 죄의 소정형에, 판시 제2항 가의 각 죄 상호간 및 나의 각 죄 상호간에는 각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소정형으로 각 처벌)

3.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소정형에 가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5.



재판장 판사 김 영 기

판사 박 성 수

판사 이 성 구

「총학생회장의 의문사에 안기부 요원이 관련됐다」는
피고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은 데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자 판결(91고단4995)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자 판결(93노8080)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9일 중앙대 안성캠퍼

스 총학생회장 이 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도 씨의 명예를 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안기부 여직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과정에서 검사가 죄명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추가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한겨레신문 사회부기자로서 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6일자 11면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 씨의 의문사와 관련하여 『이 씨 사망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하에 이씨가 사망할 당시 안기부 요원인 도씨가 동행했다고 보도하면서 도씨가 이씨의 죽음에 관련된 듯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 도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심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1고단499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서울

검 사: 진 성 진

변 호 인: 변호사 조 용 환, 이 석 태, 김 형 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약칭한다)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 종업원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무개(23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22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 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연주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이내창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기되고 있던 의혹들을 취재하여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에게도 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한 행위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쟁점

피고인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허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4. 판단

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었다」는 부분과 「 이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씨가 이내창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위 와 이 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조서내용과 위 이 및 도 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내용, 그리고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에 중앙대학교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사고현장에 다녀온 위 대학교 교수 장 과 위 대학교 학생 김 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장 이 이 를 만나고 난 직후에 이 와의 대화내용을 메모하여 두었다는 「사공 이 씨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서면기재에 의하여 모두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이 는 이 사건기사가 보도된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이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가 백아무개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장 이 작성한 서면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 보도내용 가운데 그 진실성 여부가 문제로 되는 부분은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에 귀착된다.

이 점에 관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이 사체로 발견되기 4시간 쯤 전인 1989. 8. 15. 15 : 30경에 이 및 그와 동행인 듯한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워 거문리에서 유림해수욕장까지 건네 주었다는 덕성호 선장 이 는 그 다음날 경찰에서 그 동행한 남녀의 인상착의와 승선 전후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데 이어 도 와 백 가 그 동행한 남녀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인 같은 달 19.에도 다시 위 처음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충하는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현장에 내려온 중앙대학교 진상조사단에게는 그 동행한 남녀가 같은 달 17. 거문리 선착장에서 여수행 배를 타려고 한 사람들(즉 도 와 백)이었다고까지 말하였는데, 한겨레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경찰에서 그 취재원인 이 에게 진위를 확인하러 하자 그는 같은 해 10. 8. 이 과 남녀 각 1명이 동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녀가 도 와 백 라고 꼬집어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보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달 18. 도 와 백 를 대질시키자 그들이 이 과 동행한 남녀가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며 그 후 도 가 한겨레신문사측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 및 당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

틀어 위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목격자로서 이름을 최 ○○라고 밝힌 삼호다방 종업원(위 ○○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그냥 최 ○○라고 호칭한다)은 같은 해 8. 19. 경찰관이 이 ○○의 사진을 보여 주자 그와 그의 일행인 듯한 남녀를 같은 달 15. 15 : 00경 위 다방에서 목격한 사실과 그들의 인상착의 및 행적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같은 달 20. 경찰관이 다시 이 ○○의 사진과 함께 도 ○○가 그 일행인 백 ○○, 박 ○○, 서 ○○, 이 ○○, 박 ○○과 같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도 ○○는 그때 본 여자가 분명한데 함께 온 남자는 이 ○○가 아니라서 ○○인 것 같고 사망한 이 ○○과 닮은 서 ○○를 이 ○○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는 계속 도 ○○ 일행이 이 ○○과 함께 다방에 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위 기사의 당사자인 도 ○○와 백 ○○는 1989. 8. 7. 경 백 ○○가 목포해양전문대학에 함께 재학중인 친구 서 ○○로부터 같은 달 중순 경에 역시 같은 학교 친구인 박 ○○의 집이 있는 거문도로 놀러 가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자 친구인 도 ○○와 같이 그곳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11. 경 역시 같은 학교 친구인 박 ○○의 부산집에 전화를 하였더니 마침 위 서 ○○가 그곳에 와 있어 그들에게 같은 달 14. 거문도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14. 10 : 10경 도 ○○와 백 ○○가 함께 부천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 : 30경 여수에 도착한 뒤 박 ○○에게 전화 걸어 다음날 거문도에 들어가겠다고 알려 주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있는 여관에서 일박하고, 같은 달 15. 08 : 00경 박 ○○의 집에 가지고 갈 선물용으로 썬썬오렌지 1상자를 사들고 신영고속훼리호편으로 여수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 : 00경 거문항에 도착하였으나 마중나온 사람이 없어 13 : 10경 박 ○○에게 전화하여 마중나오도록 요청하고는 기다리는 동안 매점에서 컵라면으로 시장기를 때우고 있었는데 14 : 30경 이미 박 ○○의 집에 와 머물고 있던 박 ○○와 서 ○○가 마중나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박 ○○이 사는 동도행 배편이 있는 17 : 00경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넷이서 근처에 있는 영국군 묘소를 구경하고 부근의 산과 해변을 둘러 보면서 사진도 찍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17 : 00경 ○○이 운행하는 거문호편으로 동도에 있는 죽촌이라는 마을의 박 ○○집에 도착하여 이틀동안 위 박 ○○, 서 ○○ 및 그들과 함께 온 이난희와 위 박 ○○ 및 그의 동네 남녀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지내다가, 같은 달 17. 18 : 00경 신영고속훼리호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거문리 선착장에 나와 매표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가 동행했다는 남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영문도 모른 채 여수경찰서에까지 와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일 뿐

위 이내창과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 역시 위 도 , 백 와 거문도에서 합류하게 된 경위 및 거문도 도착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도 , 백 의 위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비록 위 이 와 최 가 처음에는 사망한 이 과 동행한 남녀가 마치 도 및 백 인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게 된 경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자신들의 진술이 가져 온 의외의 파문에 놀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피하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이 가 이 과 동행했던 남녀가 백 와 도 라는 것을 경찰관 앞에서 꼬집어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최 는 사진상으로 본 서 라 이 을 같은 사람인 것으로 혼동하였으며, 위 두사람이 말하는 남녀의 인상착의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이 많을 뿐더러 도 , 백 의 실제 모습과도 차이가 많고, 위 두 사람 모두 실제 의 도 , 백 와 대질한 자리에서는 그들이 그때의 남녀가 아니라고 하는 등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1989. 8. 15. 오후는 일기가 비록 쾌청하기는 하였으나 바람이 평상시보다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거문도 3개 섬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들이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결항하였다는 것이어서 만약 도 등이 서도의 유림해수욕장까지 이 과 동행하여 간 뒤 이 의 죽음 직후에 곧바로 거문도로 돌아온 것이라면 그들이 이용했을 만한 배편은 한정되어 있어 그들을 태워 준 배와 목격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격자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도 와 백 의 진술은 적어도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8. 15. 오후부터 거문도 및 동도의 죽촌부락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분명한 서 , 박 , 박 , 이 등의 각 진술 및 영국군 묘소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찍었다는 도 의 사진 사본(당원의 서증조사 결과로 변호인이 제출한 이 의 변사기록 제1466장, 피고인측의 증제2호증의 20)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위 서 등이 이 의 변사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다가 그들이 도 와 백 를 위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하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위 도 의 사진 역시 조작되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도 와 백 는 같은 해 8. 7. 경부터 위 서 등과 거문도에서 합류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거문도에 들어 오기 직전까지 몇차례에 걸쳐 들어가는 배편 및 시간 등에 관하여 빅 과 전화통화까지 하는 한편 신영채리호 탑승시에는 이 에 뒤

이어 기재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이 을 사망(그것도 타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의 사망직후에 그들이 별반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아니한 채 위 서의 일행과 함께 어울려 논 사정 역시 이 의 사망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이 사망하기 직전의 알리바이에 관한 도 와 백 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도 , 백 와 동행하였다는 위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은 결국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안기부 인천분실의 타자수에 불과한 도 를 수사나 정보와 관련하여 고도로 훈련된 안기부 직원인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안기부 요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안기부가 이 의 사망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허위의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도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 아래 감히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음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한겨레신문 관계자인 권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변사 전후의 이 의 행적과 그의 밝혀진 사망원인, 도 와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 최 의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 및 그 진술의 번복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다가, 한겨레신문이 비록 그 당시 공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영향력 있고 책임있는 유력 일간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이를 위 신문에 보도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임의로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었던 이 의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도 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09조 제2항이나 그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과연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그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행위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것이라면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행위자를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 31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바, 아래에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의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 또는 목격자로서 조사받은 도 , 백 , 박 , 서 , 이 , 박 , 김 , 이 , 최 , 강 , 박 등의 각 진술과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 현장에 내려가 탐문하고 사체의 부검에도 참여한 중앙대학교 의 과대학 교수 장 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서면의 기재내용, 위 장 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 탐문활동을 한 중앙대학교 학생 김 의 진술, 이내창의 사체부검결과와 이 의 변사사건 기록에 편철된 증거능력 있는 각종 조서 및 보고서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무렵은 공소의 임 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이라

약칭한다) 대표로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이은은 전대협소속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총학생회장으로서 1989. 8. 14. 오후에는 총장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8. 15. 기념행사를 주도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아무런 연락이나 편지도 남기지 아니한 채 8. 14. 오후에 돌연 안성에 있는 자취집을 나와 그 다음날 오후 아무 연고도 없는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위 이을을 변사직전에 거문도에서 유림해수욕장까지 자신의 배로 태워다 주었다는 덕성호 선장이 그 당시 이이남 1명씩과 동행하면서 선착장에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제보해 오며 따라 경찰에서 이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남녀를 찾아나서게 되었는데 마침 이이여수에서 거문도까지 타고 온 신영훼리호의 승선자 명부에 이내창에 뒤이어 학생신분으로 기재된 도와 백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도와 백가 그 일행인 박과 함께 8. 17. 오전 거문도 선착장에서 여수행 신영훼리호를 타려 하자 경찰은 이들을 여수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가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사실, 한편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내려간 중앙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이 위 이의 말을 토대로 이의 사진과 위 도, 백의 사진을 함께 들고 목격자를 찾던 중에 거문도 선착장 부근의 삼호다방 종업원인 최가 위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나섬에 따라 경찰에서 위 최와 이의 진술을 듣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과 동행한 남자가 도, 백인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그 진술변복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사실, 더욱이 백와 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영훼리호의 탑승자 집계표를 이내창에 뒤이어 제출하였을 뿐더러 원래 8. 15. 07:00에 출발하는 쾌속정인 타코마호를 예약하고서도 이이이용한 신영훼리호로 배편을 바꾼 사실이 밝혀졌고, 위 이의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결과는 익사로 결론이 나왔지만 그 부검에 참여했던 위 장은 그 사체에 커다란 두피하출혈과 두피박탈, 안면부피하출혈, 우측경부, 흉부, 복부, 배부 및 둔부에 표피박탈, 상하지 곳곳에 표피박탈 또는 피하출혈 등이 있는 점을 들어 타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 모두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이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와 안기부 요원인 도였다」라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 거문도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망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 직원인 도 가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오는 배에 위 이 과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 의 일행이 거문도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6.

판사 김 희 태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808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서울

항 소 인 : 김 사

검 사 : 김 호 철

변 호 인 : 변호사 조용환, 김형태, 이석태, 백승헌, 김기중, 정연순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 선고 91고단4995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약칭한다)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 무개(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 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 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허위인 경우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차례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첫째,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었다」,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했다」,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사실로 인정되나,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원심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피고인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취재원인 최 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이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도내용중 주요부분인 「이 이 사망직전에 동행한 사람은 백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도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할 잘못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제2의 가. 항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 에 대한 각 진술조서(1989. 8. 19.자, 1989. 8. 20.자), 이 에 대한 각 진술조서(1989. 8. 16.자, 1989. 8. 19.자)의 각 진술기재, 증인 장, 김 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장 작성의 서면(‘사공’ 이 씨의 증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최, 이의 각 진술의 내용이 착오 등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동인물에 대한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이상 이를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위 제2의 나. 항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보도내용중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변사전후의 이 의 행적과 밝혀진 사망원인, 도 각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최의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 및 그 진술의 반복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작성할 당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및 이 사건 보도내용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중 한사람이었던 이 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309조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과 형법 제310조의 요건인 「공공의 이익」을 혼동하였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 판결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제2의 다. 항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심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 판단부분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으나 다음의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죄명에 예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 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인 바,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 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무개(ㄱ)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ㄱ)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시경 전국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에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된 듯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내용중「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었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실의 착오로 보아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거문도의 외판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제3의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신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원심 판결문 제11면 12행~제14면 제5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적시된 사실중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일부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기사내용만 허위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위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며, 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위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9.

□

재판장 판사 이 신 섭

판사 김 용 섭

판사 강 영 수

.....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4. 2. 22.자 판결(94고단1)

광주지방법원 1994. 7. 8.자 판결(94노276)

대법원 1994. 10. 28.자 판결(94도2186)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94년 10월 2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부에 환송했다.

피고 이 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벽지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의 관리인이던 김 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구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유 의 압력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1993년 8월 24일자 경향신문과 26일자 서울신문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김 , 유 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호소문에서 김 를 「유 의 자금책의 하수인」으로 지칭하면서 김 가 방화범인데 유 의 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피고인이 KBS광주방송국에 근무하는 김 과 법무부 차관실을 방문하여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차관과 지청장과의 통화내용이 「보성지구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내용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호소문 게재가 오로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4고단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전남

본적 전남

검 사 : 김 석 우

변 호 인 : 변호사 신 현 일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8. 19:30경 피고인이 경영하던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709, 같은면 냉천리 173 소재 따사롬벽지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동 대지 및 건물의 관리인이던 피해자 김 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같은해 5. 21. 구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이에 위 김 가 방화범임에도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유 의 압력에 의해 동 사건이 왜곡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해자 김 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3. 8. 24.자 경향신문, 1993. 8. 26.자 서울신문의 각 2면 하단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위 김 을 방화범으로 고발한 이유 17가지를 적시하고 위 김 을 「위 유 의 자금책의 하수인」으로 지칭하면서 동인이 방화범인데 국회의원인 위 유 의 압력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처럼 적시하면서 그 단적인 예로 사실은 자신은 공소의 김 이 1992. 11. 13. 14:00경 법무부 차관실에 방문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 부속실에 대기하고 있어 위 김 과 차관과의 대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차관과 순천지청장과의 사이에 전화통화가 없었음에도 법무부 고위층이 직접 순천지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구례화재 사건을 알고 있는가, 왜 수사를 안하는가」라고 하니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너무 심하여 못합니다」 「압력이라니, 누구 압력인가」 「보성지구 국회의원이다」 「불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인데」 「불낸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금책이며, 이질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김 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박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7조,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누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994. 2. 22.

판사 박 보 영

2審 判決文

사 건 : 94노27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전남

본적 전남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이 중 건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4. 2. 22. 선고, 94고단1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였던 벽지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김 가 위 공장에 방화를 하였다는 확신이 들어 그를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가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다가 무혐의처리하므로 공소외 김 과 함께 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있어 이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으로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위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은 오로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신문에 게재한 내용의 요지는 위 김 가 위 공장을 방화하였는데 그가 국회의원인 공소외 유 의 자금책의 하수인이어서 위 유 의 압력에 의하여 위 방화사건이 왜곡되어 동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였을 때의 대화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이 오로지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8.

재판장 판사 최 훈 장
판사 좌 진 수
판사 손 창 환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도218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4노276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3. 8. 24.자 경향신문과 같은 달 26.자 서울신문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호소문」을 게재하였는 바, 그 내용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각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 오로지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김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김 ○○를 이 사건 방화범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김 ○○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KBS 광주방송국에 근무하는 공소외 김 ○○을 만나 위 화재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자 위 김 ○○이 자신이 법무부 차관을 잘 아니 같이 가자고 하여 1992. 11. 13. 그와 함께 법무부 차관 부속실에 갔었는데 혼자 차관을 만나고 나온 위 김 ○○이 피고인에게 김 ○○의 사위인 공소외 문 ○○이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유 ○○과 이질간이고 문제의 방화사건이 유 ○○의원의 압력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방화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달라는 취지로 호소문을 낸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김 ○○에 대한 진술조서와 박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김 ○○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검찰 주사보 임 ○○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2정)에 의하면 김 ○○도 위 임 ○○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가 피고인과 함께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은 부속실에서 기다리고 김 ○○은 차관실에 들어가 그 방화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김 ○○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유 ○○이 그 방화사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김 ○○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증인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고 그 내세운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28.

□

재판장 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6.자 판결(94고단2396)

서울지방법원 1995. 4. 4.자 판결(94노6312)

대법원 1995. 6. 30.자 판결(95도1010)

事實概要

대법원 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995년 6월 30일, 간행물에 기재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피고 현 씨의 상고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 현 씨는 1993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인 박 가 1994년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추대되자, 피고측 조합에서 발행하는 「원풍재건축뉴스」 94년 3월호에 「박 는 크고 작은 이권마다 개입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다 파면당한 인물」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조합원 1,20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담당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고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점은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만 피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1審 判決文

사 건 : 94고단239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현

주거 서울

본직 서귀포시

검 사 : 이 영 주

변 호 인 : 변호사 김 시 현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31.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피해자 박 가 1994. 2. 6. 같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추대되자, 이른바 구조합측의 대표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4. 3. 2. 피고인측이 주도하는 이른바 신조합측에서 발행하는 「 재건축뉴스」라는 간행물(1994년 3월호)에 「박 는 어떤 인물인가? 박 는 1990년도에 아파트 자영회장으로 1개월간 있을 때 크고 작은 이권마다 개입

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다 파면당했다. 심지어 사과장사에게까지 검은 손을 댔습니다.]라고 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 1,21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박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6정에 편철된 「원풍재건축뉴스」 간행물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4. 11. 16.

판사 최 영 룡

2審 判決文

사 건 : 94노63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천

주거 서울

본적 서귀포시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위 성 운

변 호 인 : 변호사 김 시 현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6. 선고 94고단2396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건축 뉴스」라는 간행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박 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비방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전상이 현저한 점등 정상참작, 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4.

재판장 판사 최 형 기
판사 이 창 형
판사 윤 강 열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5도101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현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4. 4. 선고, 94노6312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30.



재판장 대법관 신 성 택
대법관 천 경 송
주 심 대법관 안 용 득
대법관 지 창 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되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구성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1994. 12. 23.자 판결(94고단1165)

事實概要

대구지방법원 은상길 판사는 1994년 12월 23일 중앙일보 대구 주재기자인 김 씨, 홍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혐의를 인정,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피고들은 1993년 3월 23일자 중앙일보에 당시 대구 서부경찰서장에 재직중이던 피해자 김 씨에 대해 「김 총경이 임야 및 농지 5,000평을 불법훼손, 호텔 부지를 조성했으며 부동산투기를 벌여온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 부분에 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고단116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피 고 : 1. 김

주거 대구

본적 경북

2. 홍

주거 대구

본적 부산

검 사: 김 경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석 구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앙일보 대구 주재기자들인 바, 공모공동하여 1993. 3. 23. 중앙일보 지상에 당시 현직 경찰총경으로서 대구 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중에 있던 피해자 김 의 신상에 대한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 보도함에 있어 당시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신 검사 가 위 김 를 부동산 투기혐의로 소환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동인이 그 아들인 김 의 명의로 1980년대 초반에 수차에 걸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451 소재 전 1,329평방미터를 비롯한 위 기성리 일대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481평방미터(약13.757평)는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팔공산 도립공원과는 산림보전지역인 산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팔공산도립 공원지역 개발문제와 무관하며, 위 김 가 소유하고 있는 위 32필지 중 임야는 2필지 면 적 합계 9,468평방미터(약 2,864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 답 또는 대지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인 소유의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위 동명면 기성리 답 656의 1, 656의 8등 2필지 면적 합계 1,866평방미터(약 564평)는 동인의 소유가 아닌 공소 외 김 의 소유 토지로서 동인이 그 스스로 1992. 10.경 칠곡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농가주택,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김 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형사2부 신 검사는 23일 대구 서부 경찰서장 김 총경이 임야 및 농지 5,000평을 불법훼손, 호텔 부지를 조성했으며, 무단 형질변경, 불법건축행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벌여온 혐의를 잡고 김 서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81년 7월 팔공산 자연공원개발지구인 경북 칠곡군 기성리 일대 2만여평을 매입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 장비등을 동원하여 임야 5천여평을 파헤쳐 호텔 부지 및 목장을 조성한 혐의다. 김 서장은 또 지난해 10월 이 지역 내 농경지 6백여평에 농가주택과 창고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

아낸 뒤 60평 규모의 식당용 건물과 2백평 넓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김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김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정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신문기사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각 자격정지형 선택)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 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여 중앙일보에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김 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94. 12. 23.

□

판사 은 상 길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定期刊行物の登録 등에 관한 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言論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定期刊行物”이라 함은 동일한 題號로 年 2回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을 말한다.
2. “一般日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 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3. “特殊日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事項의 報道·論評 및 輿論 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4. “外國語日刊新聞”이라 함은 外國語로 발행하는 一般日刊新聞 또는 特殊日刊新聞을 말한다.
5. “一般週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特殊週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通信”이라 함은 電波法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아 外國의 通信社와 通信契約를 체결하고 國內外의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함을 目的으로 행하는 送受信 또는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8. “雜誌”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産業·科學·宗教·教育·體育 등 全分野 또는 特定分野에 관한 報道·論評·輿論 및 情報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동일한 題號로 月 1回 이하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製冊된 刊行物을 말한다.
9. “其他刊行物”이라 함은 第2號 내지 第8號외의 刊行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10. “發行人”이라 함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代表者를 말한다.
11. “編輯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로서 定期刊行物の 編輯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2. “印刷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 또는 發行人과 印刷契約를 체결한 者로서 그 定期刊行物の 印刷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3. “支社” 또는 “支局”이라 함은 記事取材등을 目的으로 定期刊行物の 發行所 所在地 외

의 지역에 설치된 事務所를 말한다.

第3條(兼營禁止 등) ① 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通信은 相互兼營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兼營할 수 없다.

② 日刊新聞·通信·無線放送 또는 綜合有線放送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所有하는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企業 또는 系列企業은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의 理事(合名會社の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の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나 妻의 三寸이내의 血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直系卑屬의 配偶者가 그 總數의 3分の 1을 넘지 못한다.

⑤ 公報處 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刊新聞 및 通信의 發行人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4條(外國資金의 流入禁止) 누구든지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위하여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로부터 寄附金·贊助金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財産上의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外國의 教育·體育·宗教·慈善 기타 國際的 親善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로부터의 出捐으로서 公報處 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研修) ① 發行人은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制度를 設置·운영한다.

② 發行人은 共同으로 從事者의 研修를 위한 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6條(機能의 보장) ① 發行人은 勞使協調의 精神에 따라 從事者의 勤務環境·處遇 기타 福利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發行人은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一般日刊新聞은 타블로이드 2倍版 4面 基準의 新聞紙를 時間當 2萬部 이상 印刷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輪轉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2. 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은 輪轉機 1臺 이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3. 通信의 발행에 있어서는 電波法에 의한 無線通信施設

④ 第3項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와 印刷契約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印刷施設(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의 施設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印刷施設만으로써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章 登 録

第7條(登録) ① 定期刊行物を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報處 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登録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거나 法人 기타 團體나 機關이 그 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學習資料 또는 商業廣告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題號
 2. 種別 및 刊別
 3. 發行人・編輯人 및 印刷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住所・姓名・生年月日)
 4. 發行所의 所在地
 5. 版型
 6. 使用語
 7. 發行目的과 발행내용
 8. 普及方法과 주된 普及對象 및 地域
 9.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는 第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施設
- ② 發行人이 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할 수 없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른 理事나 임원을 發行人으로 할 수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하고자 하는 者는 登録事項중 刊別을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日刊(隔日 또는 週 3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週刊(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月刊
 4. 隔月刊
 5. 季刊
 6. 年 2回刊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때에는 公報處 長官은 지체없이 登録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는 당해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날로부터 6月(年 2回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登録된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여야 한다.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行實績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 이미 登録된 定期刊行物의 題號와 동일하거나 混同하기 쉬운 유사한 題號의 定期刊行物은 登録할 수 없다.
- ⑧ 公報處 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定期刊行物의 登録에 관한 업무를 서울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特殊週刊新聞과 月 1回 이하 發行 刊行物중 無料로 普及하는 定期刊行物

2. 特定地域을 대상으로하여 週 2回 이하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3. 第2條 第9號의 其他刊行物중 週 2回 이하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第8條(필요적 게재사항) 定期刊行物에는 그 登錄의 番號와 年月日・題號・刊別・發行人・編輯人・印刷人・發行所 및 發行年月日을 게재하여야 하며, 數人의 編輯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姓名을 게재하여야 한다.

第9條(缺格事由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3. 禁固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第92條 내지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 第2項・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固 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에는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4.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安處分の 執行중에 있는 者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이 法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未成年者,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8.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月 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法人이 아닌 者는 定期刊行物 중 日刊新聞이나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할 수 없다.

④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나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거나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는 法人 또는 團體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普及할 것을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納本)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定期刊行物 2部를 즉시 公報處 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納本한 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家는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11條(休・廢刊의 申告)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그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休刊 또는 廢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公報處 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한 休刊은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12條(登錄取消의 審判請求등) ①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刊行物の登録을 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の 경우는 3回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된 사항을 變更登録하지 아니하고 任意로 變更하여 그 定期刊行物を 발행한 때

2. 發行人(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編輯人이 第9條의 缺格事由등에 해당된 때

3. 第6條 第3項 또는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第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의 出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の 경우는 6回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정지를 命하거나 法院에 定期刊行物の 登録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録한 사실이 있는 때

2. 定期刊行物の 내용이 登録된 發行目的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發行人의 普通裁判籍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合議部の 관할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접수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録取消審判事件의 請求・審理・裁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 登録取消審判事件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⑤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登録이 取消된 때에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取消된 定期刊行物の 題號로서 定期刊行物を 발행할 수 없다.

第12條의 2(職權登録取消) ①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定期刊行物の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登録후 1年(年 2回刊의 경우는 2年)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月 1回 이하 발행의 경우는 2年 이상)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을 중단한 때

② 第1項의 取消決定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審議를 위하여 公報處 長官 所屬하에 審議委員會를 두며, 그 구성과 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聽聞) 公報處 長官이 第12條 第1項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第12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登録取消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定期刊行物の 發行人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の 發行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支社등의 設置)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の 登録을 한 者が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公報處 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支社 또는 支局은 定期刊行物を 編輯・발행할 수 없다. 다만, 海外의 支社 또는 支局으

로서 公報處 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가 발행하는 定期刊行物에 대하여는 本社가 발행하는 定期刊行物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外國定期刊行物の 支社등의 設置) ① 外國定期刊行物の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報處 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公報處 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3. 당해 外國定期刊行物이 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國家의 威信을 損傷하게 하는 記事를 게재한 때

第3章 침해에 대한 救濟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 (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

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 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는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는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成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제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4章 罰 則

第2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의 出損을 받은 者
3.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4. 第12條 第1項, 同條 第2項 또는 第12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5.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刊行物의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者

第2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2. 第9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編輯人으로 選任한 發行人

第24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登錄된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지 아니한 者
 3. 第7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發行實績을 유지하지 못한 者
 4.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者
 5.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刊 또는 廢刊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社 또는 支局設置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報處 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公報處 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報處 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의 登錄對象에서 제외된 定期刊行物은 이 法 施行후 定期刊行物 登錄番號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 이내에 定期刊行物登錄證 原本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 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2項 내지 第6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 第6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放送局이”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중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放送”으로 하고,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② 綜合有線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2項 내지 第7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 第6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綜合有線放送局이”로 하며, 同條 第9項을 第10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 第10項(중전의 第9項) 중 “綜合有線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綜合有線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를 청구할 수 있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の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①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① 공보처 장관이 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관계 유무
- ② 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보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경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유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 록

제6조(등록) 법 제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 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 ② 공보처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발행실적) ① 법 제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실적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횟수의 4분의 3이상 발행한 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4회이상 발행한 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3회이상 발행한 실적
 4. 연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1회이상 발행한 실적
- ② 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거나 합병호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공보처 장관은 법 제7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에 대한 법 제7조 제1항·제4항, 법 제10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24조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앞에 당해 시·도의 등록임을 알 수 있도록 당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별에 따른 다음의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주 간 : 다
2. 월 간 : 라
3. 격 월 간 : 마
4. 계 간 : 바
5. 연 2회간 : 사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간별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보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고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납본)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휴간신고)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휴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기간행물휴간신고서를 공보처 장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12조·제14조·제16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
2.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방학·휴교 등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
3.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의 당해 기간

제12조(폐간신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때에는 폐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 장관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보처 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법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보처 장관”은 “행정 또는 정부부시장·부지사”로,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공보처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의 절차) ①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지정일 7일전에 처분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처분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그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등의 설치신고)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사(지국) 설치신고서에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사(지국) 설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 발행) 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승인신청서를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허가증) 공보처 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공보처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재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①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4조(과태료 부과) ①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의 납부)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 : 5천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 : 2천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중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36조(서식) ①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공보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보처 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제1중재부 서울특별시 제2중재부 서울특별시 제3중재부 서울특별시 제4중재부 서울특별시 제5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부산광역시 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원
대구광역시 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광역시 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경기도 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강원도 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일원
충청북도 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일원
전라북도 중재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일원
경상남도 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일원
제주도 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일원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 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

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청구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 무 처 및 서 울 중 재 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5 725-0050 FAX.730-9420 · 5487
부 산 중 재 부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2-3(대광오피스텔 408호)	(051)247-3486
대 구 중 재 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9(3 · 1빌딩 301호)	(053)755-0108
광 주 중 재 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20-31(금오빌딩 4층)	(062)222-7033
경 기 중 재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 원 중 재 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대양빌딩 6층)	(0361) 55-2878
충 북 중 재 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37-5(성화빌딩 302호)	(0431) 52-1250
충 남 중 재 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3동 151-13(선화현대빌딩 203호)	(042)257-0039
전 북 중 재 부	전북 전주시 중앙동4가 50-2(대한생명보험빌딩 4층)	(0652) 88-0010
경 남 중 재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 63-1787
제 주 중 재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 22-3328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3輯

(言論仲裁 통권59호 부록)

1996년 6월 20일 인쇄

1996년 6월 30일 발행

編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査研究室

發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빌딩

전 화 : 732-6031~5,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출판되었습니다)

